

31~2001
통147

가계동향조사 항목분류집

2009



B72061



통 계 청

차 례

I. 분류 개요

1. 소득 및 지출	3
2. 인식대상 및 범위	3
3. 인식 시점	5
4. 기본 원칙	6

II. 항목분류 체계 및 처리

1. 항목분류 체계	8
2. 항목분류의 처리	9

III. 항목분류 해설

1. 수입에 관한 사항	19
2. 지출에 관한 사항	29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9
(2) 주류 및 담배	51
(3) 의류 및 신발	53
(4) 주거 및 수도광열	59
(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64
(6) 보건	77
(7) 교통	82
(8) 통신	87
(9) 오락·문화	89
(10) 교육	103
(11) 음식·숙박	109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111
(13) 비소비지출	120
(14) 기타지출	126
(15) 자산이전	128

【 부 록 】

1. 산업분류표	133
2. 직업분류표	136
3. 요약항목분류표	150

I. 분류 개요

1. 소득 및 지출

○ 소득

- 가구에 전입되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파악이 가능하도록 구성
- 정상적인 소득과 비정상적인 소득, 이전, 자산거래 등을 명확하게 구분
- 중고제품과 신제품의 소비를 구분하여 가계소비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 국제적인 소득개념적용이 가능하도록 정상소득과 비정상 소득을 구분하여 구성

○ 지출

- 가계지출에서 국제적 권고안인 목적별 소비지출분류(COICOP :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채택·적용 하였음
⇒ 여기에서 '목적'의 의미는 조사대상 개인 및 가구의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목적을 말함
- 지출은 지출함으로써 바로 소비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소비지출과 주택에 대한 지출과 같이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로 구분됨
- 소비지출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시점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소비 지출의 주체가 됨
⇒ 가구간 현물이전은 비용부담이나 지출한 가구에서 포착
⇒ 정부가 구입하여 가구로 이전하는 경우 정부의 지출로 포착
- 비소비 지출은 정상적인 지출과 비정상적인 지출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

2. 인식대상 및 범위

○ 소득

- 정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정상 소득 및 사회적 현물이전으로 구분

- 소득의 인식대상은 현금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으로 인한 현물소득도 인식 대상에 포함
단, 가구간 이전은 현물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이는 구입시점에 이미 소비 지출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 사업장으로부터 인출한 상품 및 서비스의 처리
 - 소득 : 사업소득
 - 지출 : 사업장에서 인출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여 지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
- 사업주가 피용자에게 현금급여를 대신하거나 또는 현금급여에 추가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소득 : 근로소득
 - 지출 : 상품 및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입하여 지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

[제 외]

수혜대상이 명백하게 지정되지 않은 서비스

(예) 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운동시설, 목욕시설 등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 지 출

- 가구에서 소비지출을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시점에 인식
- 인식시점에 타가구에 이전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 지출가구에서 '선물' 처리

○ 현 물

- 정부,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현물을 받는 가구에서 소득으로 인식하고 해당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지출로 인식

※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급여를 대신하여 현물로 받는 경우는 정부와 가구 관계가 아닌 고용주체와 피고용자의 관계로 사회적 현물이전에 해당되지 않음

○ 기 타

- 정부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현금을 제공받는 경우
 - 소득 : 사회수혜금

- 사회적 현물이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 국민을 위하여 부담하는 부분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건강검진비, 의료비 공단부담금 등)

[제외 대상]

◇ 상품권 관련 처리

- 상품권의 구입은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시점에 인식
단, 대상항목이 명확하게 확정된 경우에는 향후 반복해서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구입시점에 모두 소비한 것으로 처리
(ex) 전화카드 ⇒ 구입시점에 바로 '일반전화요금'으로 인식
지하철 정액권 ⇒ 구입시점에 바로 교통부문의 '지하철'로 인식

◇ 사업운영비와 소비지출

- 사업에 투입되는 "중간소비"는 생산활동의 산출물(상품 및 서비스)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것으로 가게의 소비지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됨
- 사업운영관련 전기요금, 세금, 기타 재료비 등은 가게의 소비지출에 포함해서는 안 됨

3. 인식 시점

- 소득 및 지출이 확실하고 결정적인 경우로, 자산, 부채, 소득, 지출의 증감변화를 명확하게 일으킨 경우 인식

< 예 외 >

- 아파트관리비 안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미래), 시설분담금(과거) 등 설비공사 전 또는 설비공사 후 청구되는 금액
- 소비지출로 인식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향후 사용목적이 확실한 경우
(예) 외국여행계비 ⇒ 국외여행비로 처리
-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계 부은 돈의 경우 ⇒ "저축 및 적금"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경우 ⇒ 각각 부동산 구입(9550) 처리
- 외상 및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 구입시점에 인식

따라서, 카드금액 청구 시에는 각각을 소비지출로 인식하지 않고 총액을 “월부 및 외상상환”에 분류

※ 주의 : 교통카드와 같이 매번 인식하기 번거로워 한꺼번에 인식하는 경우 구분하여 월말에 인식(기간 불일치 가능성 있음)

○ 선물여부는 지출시점에 결정

⇒ 구입시 가구에서 지출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였다가 추후에 타 가구에 이전하는 경우 : 인식하지 않음

4. 기본 원칙

○ 반복되는 경상소득과 비반복적인 비경상소득의 구분
(예) 급여와 경조소득

○ 경상적인 이전소득과 자산의 이전수입의 구분
(예) 생활비, 양육비 등의 이전과 상속재산 이전

○ 소비지출항목과 비소비지출 항목을 엄격히 구분하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인 소비지출과 용돈, 세배돈, 세금 등과 같이 타 가구, 정부 등의 원천이 되는 비소비지출을 구분

○ 비소비지출과 자산거래의 구분
(예) 경조비와 증여금

○ 모든 지출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에 이미 인식한 소비지출(중고 품)에 대한 소비지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구성

○ 소비지출시점에 대상항목을 분류하고 금액을 파악하도록 구성

※ 소비지출시점

- 생산자 및 판매자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또는 상품 및 서비스의 현물을 받는 시점

○ 가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비

- 가계의 소비지출이 아닌 사회적 현물이전의 규모를 알 수 있도록 구성

○ 상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경우 서비스로 인식

(예) 음식물과 음식제공서비스(식사 공간, 음악 및 테이블 제공 등)
자동차부품구입 및 교체서비스

○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인식

(예) 에어컨 구입(에어컨 및 선풍기 3330)과 에어컨 설치(기타가사서비스 3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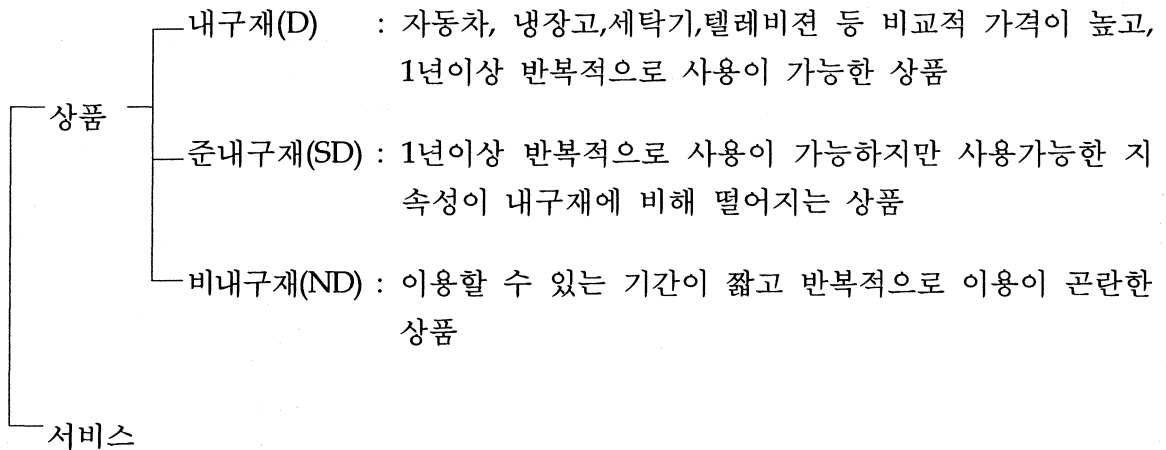
- 숙박비, 교통비, 입장료, 간식거리구입 등을 행사주최 측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대상가구는 상세항목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체여행비로 분류 ⇒
국내단체여행비(5480), 국외여행비(5490)

- 일괄 구입한 준비물 ⇒ 기타문구류(5455)

○ 단순 서비스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에 포함

(예) 장롱구입에 따른 배달 서비스

○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형태별 분류



II. 항목분류 체계 및 처리

1. 항목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 부 항 목
소득 (26)	경상소득(22)	근로소득(6)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사업소득(5)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 주택 등 임대소득, 의제자가주거소득
		재산소득(4)	이자소득, 배당소득, 의제이자소득, 기타재산소득
		이전소득(7)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가구간 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비경상소득(3)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비경상소득
	사회적 현물이전(1)		사회적 현물이전
기타수입 (10)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7)		저축 및 보험탄 금액,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계탄 금액, 보증금 회수, 유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 기타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2)		부동산관련 빌린 돈, 기타빌린 돈
	자산이전(1)		자산이전수입
가계지출 (418)	소비지출(394)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29)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물, 염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주류 및 담배(8)	주류, 담배
		의류 및 신발(29)	직물 및 외의, 내의,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주거 및 수도광열(22)	실제주거비, 의제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기타주거서비스, 연료비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53)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 섬유제품,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주방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보건(13)	의약품, 기타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보건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교통(23)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 서비스
		통신(7)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오락·문화(44)	영상음향기기, 정보처리장치, 오락문화 내구재, 장난감 및 취미용품, 화훼관련용품,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서적, 기타인쇄물, 문구, 단체여행비
		교육(24)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음식·숙박(8)	식사비, 숙박비
		기타 상품 및 서비스(32)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기기, 위생 및 이미용용품, 시계 및 장신구, 기타개인용품, 사회복지, 보험, 기타금융, 기타서비스
	비소비지출(24)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 이자 및 부담금,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로 이전
기타지출 (10)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자산이전

2. 항목분류의 처리

(1) 소득

-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은 원칙적으로 정기성,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생빈도에 따라 분류
즉, 월, 분기, 연별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은 주로 경상소득, 비정기적이고 반복적이지 않는 소득은 비경상 소득으로 분류
개인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 ⇒ 경상소득(사업소득)
 -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등 ⇒ 비경상 소득
 - ※ '정기성'은 반드시 월 단위의 정기성을 의미하지 않음
 - (예) 매년 유사한 시기에 반복되는 연간소득 ⇒ 정기성이 있음

(2) 지출

- 소비지출
가구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에 직접 지출하는 금액
- 비소비지출
 - 공적 비소비지출 :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부담금
 - 사적 비소비지출 : 이자,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 기타지출
실지출 이외의 지출로 적금, 재산구입대금(유가증권, 토진, 건물 등) 등과 같이 현금이 지출되었으나 재산의 형태가 변화한 것 또는 빌린 돈 갚음과 같이 부채의 감소를 수반하는 지출

(3) 소비지출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구입한 가구에서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조리과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에 대한 지출

- 제외되는 상품 및 서비스
 - 식사서비스 : 직접 섭취될 수 있는 음식물로 호텔, 레스토랑, 카페, 바, 술집,

노상음식점 등 음식점에서 만들어 서비스되는 음식

- 테이크 아웃 및 배달음식
- 동물용 먹이 ⇒ 애완동물관련품(5270)
- 식재료 가공에 포함되는 비용 ⇒ 식품관련 서비스(3910)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는 가공여부, 가공정도 및 다른 품목과 결합여부에 따라 달리 분류
(예) 벼와 정미한 멥쌀은 '멥쌀'품목에 분류하고, 단순 가공된 쌀가루는 기타 곡물가공품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품목과 혼합되어 비교적 복잡한 과정을 거쳐 조리된 김밥은 기타미분류식품(1695)으로 분류
- 가공정도 및 혼합정도에 따른 분류
 - 곡물가공품, 채소가공품, 육류가공품, 과일가공품, 수산동물가공품, 알가공품, 해소가공품 등
⇒ 찜, 구움, 삶음, 가루냄, 절임, 말림, 볶음 등의 단순과정을 거쳐 원래의 상태가 다소 변형된 제품
⇒ 다른 원료를 섞지 않거나, 소량만 포함하여 상품의 대부분 성분이 가공전 상품으로 구성된 제품
 - 여러 상품이 혼합되어 복합적으로 가공되고 주성분이 혼동되는 제품
⇒ 즉석·동결식품(1690), 기타미분류식품(1695) 등의 기타식품으로 분류
- 조리과정이 유사하여 동일한 명칭이더라도 쓰임새가 전혀 다른 경우 별도로 구분
 - 반찬으로 사용되는 젓갈 : 반찬류(1685)
 - 조미와 반찬의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젓갈 : 젓갈(1192)
- 주스 및 기타음료의 구분
 - 과일 및 야채주스 : 과일 및 야채를 일부 함유한 비주류 음료
 - 생수 : 암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샘물. 판매수도물 포함
 - 기능성 음료 : 약국 및 슈퍼 등에서 특정한 치료 등의 효능이 없이 단순히 피로회복, 숙취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하여 판매하는 제품
 - 기타음료 : 캔음료, 병음료, 나무수액, 분말주스, 음료베이스, 혼합음료 등도 포함

○ 의류 및 신발

- 의류 및 신발을 구입 또는 제작하기 위한 재료인 상품구입에 대한 지출과 이 상품을 제작, 유지, 수선 등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
- 남, 여, 아동 및 의복, 신발관련 소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
- 또한, 각각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가 구분되도록 품목 구성
- 아동은 상품의 구분을 위한 편의상 분류로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아동이 성인용 신발이나 의복을 구입한 경우 성인의 상품소비에 분류
- 스키화(인라인, 롤러 등), 스케이트, 골프화, 등산화 등 정이나 바퀴 등이 부착되어 용도가 제한된 특수신발 ⇒ 운동용품(5240)
그러나, 의복은 운동복(2055)에 모든 운동복을 포함시킴

○ 주거 및 수도광열

- 주거부분과 세놓는 주택에 대한 수선을 구분
- 가구의 지출에서 현재 거주하는 부분을 수리하는 것과 세놓는 주택에 대한 수선을 구분하여 사업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
- 설비·수리서비스와 부동산 구입의 구분
- 설비·수리서비스 : 주택, 정원, 담장, 상하수도, 난방 등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한 교체, 신규, 수리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
- 부동산 구입 : 주거면적을 확장하거나, 벽, 보, 기둥 등을 변경하는 등 주거형태를 현저하게 바꾸는 공사를 하는 경우(대수선)

○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 목적의 특수성에 따른 분류
- 범용으로 이용하는 상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용도가 특정된 상품은 주된 품목에 포함

범용 건전지 ⇒ 건전지(3730)

이동전화기용 건전지 구입 ⇒ 이동전화기기 등(4930)

-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목적에 따라 다르게 분류

난방용 경우 ⇒ 경유연료(2950 주거 및 수도광열)

자동차 연료 ⇒ 경유(4720 교통)

- 일반가구 및 가사(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재봉 등)에 필요한 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
- 이때, 새로운 상품에 대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항목에 분류하되, 중고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중고가구'에 집합적으로 분류

○ 보건

- 모발용, 구강용, 피부용 양약과 화장품
 - 탈모방지샴푸, 약용크림 ⇒ 판매양약(4020)
 - 염색약, 파마약 ⇒ 기타이미용용품(8090)
- 질병예방 및 단순위생용 소모품과 기타이미용용품
 - 기저귀(생리대 포함, 영아용품 등 주로 질병예방용 ⇒ 보건의료 소모품(4060)
 - 면봉, 구강세정제 등 단순위생용 ⇒ 기타이미용용품(8090)
- 교정용 안경과 장식용 썬글라스 등 기타장신구
 - 시력교정용, 보호용 안경 ⇒ 안경 및 콘택트(4070)
 - 썬글라스 ⇒ 기타 개인용품(8190)
 - 운동용 특수안경, 고글, 수영안경 ⇒ 운동용품(5240)
 - 귀금속으로 장식되어 안경테의 가치가 높은 안경 ⇒ 귀금속 구입(9560)

○ 교통

- 자동차 구입
 - '신차구입(4510)'과 '중고차 구입(4520)'을 구분
- PMP, DMB 및 네비게이터가 결합된 네비게이터 상품의 경우 주된 기능인 '부품 및 관련용품(4705)'에 분류
- 버스를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로 구분
 - 버스, 광역버스 및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교통카드로 이용한 경우 ⇒ '교통카드 이용(4870)'으로 분류
- 교통카드 이용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선지불하거나, 이용 후 일시에 청구되어 각 교통편으로 분리되지 않은 금액

○ 통신

- 인터넷 이용료

인터넷(케이블, 전용선, 광, 무선 등)서비스 등 망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 청구서에 포함되는 소액결제는 구입품목에 따라 분류
- 패키지로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도 각각 구분
- PC방에서 사용한 컴퓨터이용요금 ⇒ PC방 이용(5315)
- 이동전화 인터넷서비스 이용 ⇒ 이동전화요금(4930)
-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각각의 서비스에 분류
- 정보이용료, 전화번호안내 ⇒ 기타 서비스(8720)

- 핸드폰에 MP3플레이어 및 디지털카메라 기능이 결합된 경우 주된 기능인 '이동전화기기 등'으로 분류(4930)

○ 오락·문화

<오락·문화와 교육의 구분>

○오락·문화

- 여가시간활용, 취미 등을 위한 교양강좌
- 연습장, 수영장 등에서 독립강사에 대한 강습비 ⇒ 문화강습

○교육

- 오락문화의 문화강습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학원중심의 교육
⇒ 가르치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 문화강습과 교육으로 구분
- 독립강사에 의한 강습
레크레이션, 인라인 등 독립강사에 의한 강의 ⇒ 문화강습(오락문화)

- 학원 등의 교재비

중고생의 학원, 방송교육 등의 교재비 ⇒ 학원비에 포함되는 경우 등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고생 참고서에 분류

- 기타문구류의 구분

실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준비물 ⇒ 각각 해당 항목에 분류

일괄 구입하여 구분하기 곤란한 학습준비물 ⇒ 기타문구류(5455)에 분류

○ 교육

- 교육부문에서 '학생'은 유치원, 초·중·고의 재학생 및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재수생을 포함한 개념
 - 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명확하게 구분
 -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보육료와 구분
- 수행기관을 기준으로 어린이 집(보육)과 유치원(교육)을 구분
- 단, 어린이 집에서 수행하더라도 음악, 외국어 등 별도로 구분된 교육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출 ⇒ 학교보충교육비(6710)
- 학생이 아닌 자가 학원수강을 한 경우 성인 학원교육으로 분류
(예) 학생이 학원에서 수강한 경우는 학원 및 보습교육(6100-6500)에 분류
학생이 학교에서 받은 방과 후 교육은 학교보충교육비(6710)에 분류
- ※ 자동차 운전교습비는 지출주체와 무관하게 교통부문의 "운전교습비"로 분류

○ 음식·숙박

- 여타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서비스 받는 데에 대해 지불하는 식사비용과 숙박시설제공 등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 숙박을 전문숙박시설인 '호텔,여관,콘도(7710)'과 기타숙박시설(7720) 이용으로 구분
- 숙박과 식사가 모두 제공되어 분리되지 않는 경우 ⇒ 주된 비용인 숙박비에 분류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 보험료
저축성 보험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 구분은 조사당시에는 구분하지 않음
⇒ 조사당시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가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을 각각의 항목에 분류
-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의 '귀금속 구입'과 소비지출의 '장신구'

- 귀금속 구입(9560) : 세월이 지나도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
- 장신구(8130) : 금속이나 보석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세공, 기계장비 그 자체의 가치가 큰 상품
- 상품인 혼례 및 장례용품(8160)과 서비스인 혼례 및 장례레비(8710)를 분리하여 별도항목으로 분리
- 하나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조사될 수 있는 항목을 해당항목에 구분
 - 드레스 및 상복 등 임차 ⇒ 기타의복관련서비스(2240)
 - 돌,회갑 등을 위한 각종 실내장식비용 ⇒ 기타실내장식품(3120)
 - 결혼(피로연),장례,폐백,젓상,돌상 등 관련 준비시킨 음식비 ⇒ 배달음식(7520)
 - 관, 비석, 망주, 납골단지 등 구입 ⇒ 혼례 및 장례용품(8160)
 - 묘지관리비용,이장비용,벌초비용,족보제작,납골당비용 등을 위해 종중 등에 공동부담금 납부 ⇒ 회비 및 기타기부금(9420)
 - 묘지구입 ⇒ 부동산 구입(9550)
 - 예단비 ⇒ 자산 이전(9990)

(4) 비소비지출

- 소비지출과 달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고 이전하는 지출로써 의무 지출인지 또는 자발적인 지출인지 구분하지 않음
-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비소비지출,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등과 같이 이전 대상을 구분
- 비소비 지출과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의 구분
 - 비소비 지출 :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 비소비지출 및 가구간 이전, 비영리 단체로의 이전 등의 사적비소비지출
 -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 다른 제도단위 등으로의 이전이 아닌 가구의 자산증가나 부채를 감소시키는 지출로써 현금의 지출을 수반한 거래를 인식. 저축 및 적금 등의 불입

Ⅲ. 항목분류 해설

1. 수입에 관한 사항

2. 지출에 관한 사항

Ⅲ. 항목분류 해설

1. 수입에 관한 사항

입력코드	항 목 명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0110-0600	소득		
0110-0470	경상소득	◆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 경상소득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이 노동제공, 사업활동 또는 재산 등을 제공한 대가로써 받는 현금,현물(상품 및 서비스)과 타가구에서 경상적으로 이전되는 이전소득을 포함하며, 비경상소득은 일시적이고 규칙적이지 않는 소득으로 구성됨 ◆ 가계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으로써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으로 구성	
0110-0160	근로소득	◆ 사업장에 고용되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유가증권(상품권 등),상품 및 서비스 ㉠ 각종 직접세 및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총액)을 ※ 급여:근로제공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일당, 주급, 월급과 정상근로시간이외의 근무 수당인 시간외 수당, 월계지수당, 위험수당, 해외근무수당을 포함 ※ 상여금 : 특별급여로서 설, 추석 및 하계휴가, 성과급제 도하의 특별보너스 및 포상금 등 포함 ※ 주업 이외에 부업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도 포 ※ 스톡옵션의 경우 급여대신 또는 보너스로 받는 시가총액만 인식하고 받은 주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음. 평가시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시가로 평가 급여 오지급(吳支級)으로 추가로 받은 금액 등 ○ 급여 : 근로활동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대가 - 공통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가계지원비 등 - 특수수당: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등 - 시간외근무,야간 및 휴일근무 및 잔업수당 등 - 복리후생비:체력단련비,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직급보조비,사택 및 승용차제공 등 - 기타수당:대우수당,모범수당,주택수당(현물 포함) ○ 기타 비정규적 급여(상여금) - 보너스,팁,특별상여금,성과상여금,연가보상비,선택적복지비,(명절)휴가비 등	

입력코드	항 목 명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 명시적 상여금 ※ 단, 연봉제 등으로 매월급여와 함께 균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하여 조사 - 카풀서비스 수혜자로부터 대가 수수(현금 및 현물) -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등 - 매월(년)정산하는 퇴직금 등 × 저리용자의 학비대출 ⇒ 기타빌린 돈(0890) × 육아휴직중 지급액 ⇒ 사회수혜금(0430)	
0110-0120	가구주소득	◆ 가구주의 근로소득	
0110	가구주급여소득	◆ 가구주의 급여소득 받드시 매월 계속해서 지급받는 금액만이 아니라 일정 시기가 도래할 때 수령이 정해진 급여	
0120	가구주상여금	◆ 가구주가 수령한 금액 중 평소에 없던 보너스성격의 보 개인의 실적,성과 및 기업의 성과 또는 일정한 시기의 도래 등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여금	
0130-0140	배우자소득	◆ 배우자의 근로소득	
0130	배우자급여소득	◆ 배우자의 급여소득	
0140	배우자상여금	◆ 배우자가 수령한 금액 중 평소에 없던 보너스성격의 보	
0150-0160	기타가구원소득	◆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	
0150	기타가구원급여 소득	◆ 기타가구원의 급여소득	
0160	기타가구원상여금	◆ 기타가구원이 수령한 금액중 평소에 없던 보너스성격의 보수	
0210-0250	사업소득	◆ 목적이 특정된 사업장 유보분을 제외하고 사업자 사업 장으로부터 인출하여 전입되는 총금액 ○ 학원,가게,공장 등의 개인사업운영 수입 중에서 사업장 확장,기계장비수리 및 대체 등을 위해 유보한 금액 이외 의 소득,기계장비임대소득 포함 ○ 사업장의 주산물 및 부산물 중 가구로 전입되는 현물 ○ 주택 및 건물임대로부터의 소득 ○ 부업으로 애완견분양,텃밭채소,산들에서 나물채취 등의 농축산물의 판매 및 현물의 형태로 가구로 들어온 소득 ○ 작가의 인세,저작권,발명가의 발명안(案) 판매소득	

입력코드	항 목 명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ex) 상점으로부터 상품유입 음식점으로부터 음식 및 음식재료의 유입 ※ 사업자 등록여부는 무관함 사업소득은 제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만 기입 × 음식점의 재료구입은 고려대상이 아님	
0210	가구주사업소득	◆ 가구주의 사업소득 × 주택 등 임대소득 제외 ⇒ 주택 등 임대소득(0240)	
0220	배우자사업소득	◆ 배우자의 사업소득 × 주택 등 임대소득 제외 ⇒ 주택 등 임대소득(0240)	
0230	기타가구원사업 소득	◆ 기타가구원의 사업소득 × 주택 등 임대소득 제외 ⇒ 주택 등 임대소득(0240)	
0240	주택 등 임대소득	◆ 토지 이외의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 및 기계장비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 ○ 월세수입, 주택임대소득 ○ 상업용 건물 임대소득 ○ 영화촬영, 도박 등을 위한 임대소득 ○ 기계장비임대소득 등 × 공장용지 등 토지임대소득 ⇒ 기타재산소득(0390)	
0250	의제자가주거소득	◆ 자가 및 무상주택 거주에 따른 소득액(평가액) ○ 자가월세평가액에서 (-)소요비용을 차감한 금액 = 자가월세평가액 - (벽지, 바닥재, 기타주택유지 및 수 선재, 설비·수리서비스 등) - 경상재산세 - 주택담보 이자 - 감가상각비	
0310-0390	재산소득	◆ 재산의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이자소 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재산소 득』으로 구성	
0310	이자소득	◆ 채권(국공채), 저금(예금, 적금), 사채 등의 이자소득 ○ 채권(국공채)이자소득 ○ 저금(예금, 적금)이자소득	

입력코드	항 목 명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0320	배당소득	○ 사채이자소득 ○ 기타이자소득 ◆ 보험,신탁,주식 등의 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주식배당소득 ○ 신탁배당소득 ○ 보험배당소득 ○ 신주인수권 등 기타배당소득 × 주식배당이 아닌 매도하여 얻은 수입 ⇒ 유가증권매각 (0750) × 유배당 보험이 아닌 정기적 일정금액 지급 ⇒ 저축 및 보험탄 금액(0710)	
0330	의제이자소득	◆ 전세 및 보증금의 평가액 ○ 전세금 평가액 ○ 보증금 평가액 × 상점 등의 임차에 따른 보증금 등은 대상이 아님	
0390	기타재산소득	◆ 위의 재산소득 이외에 재산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장용지,주차용지 등 각종 토지 임대소득 ○ 광업권 임대소득 ○ 저작권,인세 및 특허권 소득(상속 등 인도자산) ○ 자격증 대여소득 등 × 발명가의 특허권,작가의 인세 및 저작권소득 등 ⇒ 사업 소득(0210~0230) × 특허권,저작권 등을 매각하여 얻은 소득 ⇒ 기타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0790) × 토지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받음 ⇒ 부동산관련 빌린 돈 (0810)	
0410-0470	이전소득	◆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반대급부가 아닌 이전에 의한 것으로써 공적연금,정부,비영리단체 및 타 가구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이 포함됨	
0410	공적연금	◆ 국민연금 또는 이를 대신하는 특정직업군에 속했던 사람이 매월 일정액을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입력코드	항 목 명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퇴직금일시금 및 연금일시금 ⇒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0520) ×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 ⇒ 저축 및 보험탄 금액	
0420	기초노령연금	◆ 기여금 적립없이 연령,소득,부 등의 상태를 평가하여 일정조건을 만족한 경우 받는 수혜금 ○ 노인가구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0430	사회수혜금	◆ 기초노령연금 이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모자가구,차상위계층,노인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으로부터 현금수혜 ○ 모성보호,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액급여 ○ 근로장려세제(EITC) ○ 3자녀 이상 출산가구에 대한 출산장려금 등 지원 ○ 입양자녀 보조수당,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장애수당) ○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 ○ 체육인연금, 보훈연금,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보상액 ○ 산업재해자에 대한 휴업급여,장해급여,상병보상연금 ○ 실업급여 수령액,직업훈련수당 수령액 ○ 노인장기요양보험수령액 ○ 유가환급금 등 기타 현금형태의 수령액 × 3자녀이상 출산가구에 대한 우선분양권 ⇒ 대상아님 × 정부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현물수혜 ⇒ 사회적 현물이전 (0600)	
0440	세금환급금	◆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자의 환급세액 ○ 원천징수 세금환수금 × 기타세금에 대한 오징수세액의 환수 ⇒ 기타비경상소득 (0790) × 기업활동으로인한 부가가치세 환수금 등 ⇒ 대상아님	
0450	가구간이전	◆ 타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교육비 등 ㉠주거를 달리하는 가족으로부터 경상적 이전 포함 ○ 양육비,이혼(별거)수당보조 등 가계보조 성격의 정기적인 이전 ○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실버타운비 등을 위한 친족 모금	

입력코드	항 목 명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0460	할인혜택	○ 생활비,교육비,양육비 등의 이전 × 경조사에 대한 상호부조 ⇒ 경조소득(0510) × 자동차,주택의 구입 후 증여 및 구입을 위한 일회성 이 전 ⇒ 자산이전 수입(0990) ◆ 카드 및 무료쿠폰 이용 등은 이용시에 대상이 되는 상품 과 서비스를 시가로 처리 ○ 누적카드포인트 사용 ○ 선포인트 이용 ○ 항공마일리지 이용 ○ 쿠폰 및 회원카드로 할인받는 경우 ○ 특정조건만족시 제공받는 상품권 등 ※ 단순제시 등으로 할인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0470	기타이전소득	◆ 비영리단체(각종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등) 및 고용과 상관없는 기업으로부터 경상적으로 보조받는 생활비,교 육비 등 이전 ○ 강제퇴직자 및 유족에 대한 연금 및 생활비 지급 ○ 공상에 따른 급여 보전금 ○ 학교 및 비영리단체로부터의 장학금 등 ○ 질병휴직 중에 지급되는 급여 및 건강보험부담 지급 × 일시적인 경우 ⇒ 기타비경상소득(0530)	
0510-0530	비경상소득	◆ 일시적이며 경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입으로 경상소 득과는 구분	
0510	경조소득	◆ 타가구로 부터 축의,조의 표시로 애경사에 제공받은 현 금 및 현금등가물 ○ 축의금(결혼식,회갑연,칠순잔치,약혼 등) ○ 조의금(장례식) ○ 돌,생일 등 축하금	
0520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 퇴직금일시금 및 연금일시금 등 ○ 퇴직금 일시금 ○ 연금일시금(공적연금) ○ 조기퇴직으로 인한 추가로 제공되는 금액 ○ 연금반환일시금(공적연금) × 매월 경상적으로 정산하는 퇴직금기타 ⇒ 급여 (0110~0160)	

입력코드	항 목 명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0530	기타비경상소득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비경상적인 수입 ○ 복권,경품권,경마,경륜 등의 당첨액 ○ 이주대책비,재해보상비 ○ 만기 이전에 사고로 보험탄 금액 등 ○ 입학,졸업 등의 축하금,입원 등으로 인한 위문금,세배돈,용돈 등 교제비 ○ 자동차구입,의료비,교육비 등 일회성 구입을 위한 보조 ○ 유리파손 등 사소한 보상 받은 금액 ○ 급여정산으로 인한 소득, 출장여비 정산 후 남은 금액 ○ 퇴직시 동호회,직원협의체 등으로부터 기념품중 환금성 있는 상품 ○ 빈병,폐지,의류,가구 등 중고상품 및 폐품 매각 등 ○ 오징수세액 환수금 ○ 도박에서 딴 돈,주은 돈 ○ 세배돈,용돈 등 금액이 적어 소비지출과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금액 ○ 기타 동호회 등으로부터 축하금 등 × 토지수용에 의한 토지보상금 ⇒ 부동산 매각(0760) × 그림,도자기 등의 매각 ⇒ 기타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0790) × 보증금(유선전화보증금 등) 환급 ⇒ 보증금 회수 ×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받는 학비보조 ⇒ 사회적 현물이전(0600)	
0600-0600	사회적 현물이전	◆ 정부 및 비영리단체가 가계지출에서 목적이 특정된 지출을 보전하거나, 직접 현물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상품	
0600	사회적현물이전	◆ 정부 및 비영리단체 등이 특정지출 목적을 지정하거나, 직접 현물을 구입하는 등 현물형태로 제공하는 상품과 ○ 의료수급권자(생활보호대상자,의사상자,독립유공자,무형문화재,탈북주민 등)의 의료혜택 ○ 저소득 노인,아동,여성 등에 대한 의료,교육,출산관련 난방비,장제비,보육료,급식비 ○ 바우처(voucher) 수혜 ○ 산업재해자에 대한 요양급여,간병급여,장의비 등 실비 ○ 영구임대거주자 등의 주거부분 ○ 무료예방접종 ○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원의 교육비 지급 ○ 자격증취득자에 대한 검정수수료 지급 ○ 장애인의 통신비,유류비 지원 등 ○ 기타 각종 정부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사회적현물이전 × 건강보험공단의 일반환자에 대한 혜택 ⇒ 인식 대상아 × 의료비에서 6세미만 무료,65세이상 정액제 및 할인 ⇒ 인식 대상아님(실지금액만 조사)	

입력코드	항 목 명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0710-0990	기타수입		
		◆ 실질적인 자산의 증감없이 자산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현금수입 ㉠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매매 시세차손익은 제외 ㉠ 보험, 적금해약 등 중도해약으로 받은 금액도 포함 ㉠ 할부 및 외상 금액도 포함	
0710-0790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 예금인출, 보험금수취, 부동산매각 등 자산의 감소로 발생	
0710	저금 찾을	◆ 예금된 저금을 현금 및 수표로 찾을 - ATM 등을 이용하여 현금찾을 때 금융수수료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조사결과에서는 제외됨)	
0720	저축 및 보험탄 금액	◆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에 불입한 적금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수령 ㉠ 매월 축적해오던 저축, 보험 등의 해지 및 사건발생에 따라 입금되는 금액 ○ 적금 찾을 금액 ○ 보험탄 금액, 교육보험 등의 수령액 ○ 중간정산형태의 정기적 수령보험금 ○ 보험해지일시금 ○ 계탄 금액, 펀드 × 만기도래전 사고로 인해 보험탄 금액 ⇒ 기타비경상소득(0530)	
0740	개인연금 및 퇴직 연금	◆ 금융기관에서 가구 및 사용자 등의 일정불입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과 같은 형식으로 정기적 지급받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 개인연금저축(신탁형) ○ 개인연금일시금 ○ 퇴직연금 수령액 -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을 모두 포함	
0750	유가증권 매각	◆ 유가증권(채권, 신탁, 주식, 상품권 등)의 매각대금 ㉠ 액면가가 아닌 실제 수입금액을 조사 ○ 유가증권(채권, 신탁, 주식 등)의 매각	
0760	보증금 회수	◆ 임차보증금(전세, 월세 등), 예치금 등의 회수 ○ 주택임차인의 보증금(타지 거주자녀를 위한 것 포함) ○ 계약금 회수	

입력코드	항 목 명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0770	부동산 매각	○ 관리비 예치금 ○ 휴대폰 보증금 ○ 마트의 봉투,커피전문점의 컵 등 환수금 ○ 전화설치보증금,교통카드예치금 등 각종예치금의 회수 ○ 미용시로 인한 응시료 환수금 ○ 의료비 사후환수금 및 본인부담금 환수금 ○ 마트의 봉투,커피전문점의 컵 등 환수금 ◆ 부동산(토지,주택 등)의 매각대금 ㉡ 토지수용에 의한 강제적인 매각도 포함 ㉡ 투자용 부동산(토지,주택 등) 매각대금은 조사제외 ○ 부동산(토지,주택 등)의 매각대금 ○ 토지수용에 의한 부동산(토지,주택 등)의 매각대금 ○ 철거민 등에 대한 보상 포함 ○ 영업권(권리금) 등	
0790	기타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특허권,저작권 등이나 골동품,귀금속 등의 매각대금 ㉡ 장기간 보유하여도 가치하락이 크지 않는 귀금속 ○ 금,은,다이아몬드,루비,에메랄드,진주 등 매각 ○ 영업장 처분,영업권 등의 매각 수입 ○ 기타재산(특허권,저작권 등)의 매각대금 ○ 고가의 미술품 등 매각대금 ○ 빌려준 돈 받음 ○ 기타자산변동에 따른 수입 × 정산에 따른 급여의 환불 ⇒ 급여(0110~0160) × 임대인의 전세,월세 보증금 받음 ⇒ 기타빌린 돈 × 자동차매각,폐품매각 ⇒ 기타비경상소득(0530)	
0810-0890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 부동산매입을 위한 차입금,할부 및 외상 등 부채의 증가	
0810	부동산관련 빌린 돈	◆ 가구가 거주하는 부동산(토지,주택 등)의 매입 및 주거를 존속하기 위하여 빌린 돈 ○ 부동산(토지,주택 등)의 매입을 위한 차입금 ○ 주택의 신축,중축,개축을 위한 차입금 ○ 이주민 주거대책비 중 주거용자(다시 갚아야할 경우) ○ 모기지론 × 부동산 임대보증금 받음 ⇒ 기타빌린 돈(0890)	
0890	기타빌린 돈	◆ 기타 항목 이외에 가게를 위해 빌린 돈 ○ 가게를 위해 빌린 돈(부동산 매입제외) ○ 마이너스(-)통장 이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입력코드	항 목 명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 가불금, 전당포 담보대출 ○ 학자금 대출 ○ 부동산(토지,주택 등)을 임대해 주고 받은 보증금 ○ 기타 신용대출 × 부동산(주택)매입을 위한 차입금 ⇒ 부동산관계빌린 돈 (0810)	
0990-0990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			
0990	자산이전수입	◆ 자산을 타가구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경우 ◆ 자산을 타가구 등으로 부터 기부받은 경우 ○ 재산상속 및 증여(주택,토지 등) ○ 예단금,지참금 등 ○ 합의금,위약금,위자료 등 ○ 계약해지 및 위약으로 인한 수입금 ○ 전세자금 및 부동산구입비 받음	

2. 지출에 관한 사항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010-8730	소비지출		◆ 가구에서 직접 소비하거나 타가구가 소비하도록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에 지출하는 비용 ※ 여기에서 상품은 시간의 흐름에도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골동품, 미술작품, 수석,보석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010-1735	01.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010-1030	곡물		◆ 가구에서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또는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지출 - 제외 : 직접 섭취될 수 있는 음식물로 가구 외의 장소, 즉,호텔,레스토랑,카페,바,선술집,노상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음식,테이크 아웃(주문자가 찾아가든,생산자가 배달하는지 여부를 불문 - 음식·숙박);동물용 먹이(오락·문화) ◆ 가공하지 않은 미곡,맥류,잡곡 및 두류와 자체소비대상인 정미전 곡물구입 포함 일반적으로 굽거나 찌는 등 가공을 거쳐야 섭취가 가능한 곡류로 양념이 가미되는 등의 가공곡류는 곡물 가공품으로 분류 ※ 벼종류 - 미곡:멥쌀·찰쌀 등 - 맥류:보리·밀·호밀·귀리 등 - 잡곡:조·옥수수·기장·피·메밀·율무 등 콩종류 - 두류:콩,팥,완두콩 등	
1010	멥쌀	ND	◆ 현미를 포함한 일체의 쌀 ㄹ쌀을 단순 가공처리한 영양쌀도 포함 ○ 일반 멥쌀,정부미,일반 현미,일반 흑미 등 ○ 인삼쌀,상황버섯쌀,쑥쌀 등 영양 멥쌀	
1015	찰쌀	ND	◆ 찰밥이나 찰떡의 재료가 되는 쌀 ○ 백미찰쌀, 현미찰쌀, 흑미찰쌀 등	
1020	맥류	ND	◆ 쌀보리,겉보리 등 보리 및 밀 등 맥류 일체 ○ 보리쌀,겉보리,쌀보리 등 ○ 납작보리(압맥),찐보리,할맥 등 가공보리 ○ 밀(호밀,밀쌀),호밀,귀리 등 기타맥류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1025	두류	ND	◆ 콩,팥,땅콩 등을 포함한 일체의 두류(豆類) ○ 콩,쥐눈이콩,돌콩,작두콩,서리태,땅콩 등 ○ 팥(적두(赤豆)),검정팥(흑두(黑豆)) 등 ○ 가공하지 않은 땅콩,부럼용 땅콩,볶은 땅콩 등 모두 ○ 녹두,동부(강두(康豆)),강낭콩(채두(菜豆)),완두(豌豆),나물콩 등 기타두류 × 곡물잼(땅콩잼 등) ⇒ 잼,꿀,조청(1560)	
1030	기타곡물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곡물 ○ 옥수수,조(좁쌀),수수,기장,피,율무,메밀 등 ○ 도토리 등 ○ 기타 여러가지 곡물을 혼합한 상품의 구입 등 × 혼합곡류를 갈아놓은 것(선식류) ⇒ 기타곡물가공품(1080)	
1055-1080	곡물가공품		◆ 곡물을 가루화한 것,익힌 것 또는 곡물을 주원료로 하여 공업적으로 가공한 식품 ◆ 빵은 보리·호밀·옥수수·메밀·쌀 등의 가루 등을 이용하여 굽거나 찐 식품을 구입한 것 ◆ 일반적으로 구입만이 아닌 장소까지 제공되는 패스트푸드 및 양식당에서 구입하여 섭취하는 것은 음식 서비스로 분류	
1055	밀가루	ND	◆ 밀의 배유 부분을 가루로 만든 것 ○ 일반밀가루 ○ 강력분,중력분,박력분 등 가공밀가루 × 빵가루,튀김가루,부침가루 ⇒ 기타곡물가공품	
1060	국수류	ND	◆ 튀기지 않는 면(麵)을 국물과 함께 먹는 것 ㉠생 것,삶은 것,냉동한 것,육수·소스 등이 첨가된 것도 포함 ○ 칼국수,가락국수,메밀국수 등 ○ 우동,소바,소면,기스면 ○ 냉면국수,쫄면,칼국수 ○ 마카로니,스파게티 ○ 생면 등	
1065	라면류	ND	◆ 일반적으로 국수를 증숙시킨 후 기름에 튀기거나 삶은 면을 압착 보존한 면류에 수프를 별첨한 식품 ○ 봉지라면,용기라면,짜장라면 등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070	당면	ND	○ 편의점에서 구매한 라면 ○ 자동판매기에서 구매한 라면 × 생식전용 라면 ⇒ 기타과자(1590) ◆ 감자,녹두,고구마 등의 녹말을 원료로 하여 만든 당면 국수 ○ 당면	
1075	두부	ND	◆ 콩을 물에 담갔다가 갈아 그 액을 가열하여 비지를 짜내고 응고제를 첨가하여 굳힌 식품 ○ 두부 ○ 비지,순두부,연두부 등 × 묵 ⇒ 기타곡물가공품(1080)	
1080	기타곡물가공품	ND	◆ 주원료 대부분이 곡물인 가공품으로 위에서 분류되지 않는 것 ○ 쌀가루,콩가루,옥수수가루,도토리가루,미숫가루,질금가루(엿기름) 등 곡물가루 ○ 메밀가루,혼합곡물가루 - 가루류:튀김가루,부침가루,도너츠가루,핫케이크 - 믹스류:쿠키믹스,식빵믹스,머핀믹스 등 ○ 콩국물 등 곡물을 갈아만든 국물,볶은 곡물 ○ 옥수수 통조림,콩 통조림,팔빙수용 팔 등 곡물통조림 ○ 메밀,도토리묵,유부 ○ 주로 곡류에 야채류 등을 혼합한 영양식 ○ 메주,청국장 분말,청국장환 등 ○ 밥을 렌지에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조리된 즉석 ○ 각종 후레이크 등 시리얼제품 ○ 누룽지 등 기타곡물가공품 × 곡물에 다른 식품을 혼합하거나 첨가물을 넣어 가공한 식품 ⇒ 기타과자(1590) × 팝콘,팝콘옥수수 ⇒ 기타과자(1590) × 조리가 완료된 조미반찬(콩자반 등) ⇒ 반찬류 × 군옥수수,찐옥수수 등을 이동식 음식점에서 구입 ⇒ 이동식 음식점(7530) × 두부,순두부,연두부,마파두부 등 ⇒ 두부(1075)	
1085-1097	빵 및 떡류		◆ 제과점 및 떡집 등에서 구입한 케익,빵류 및 떡류	
1085	케이크	ND	◆ 밀가루(또는 녹말)에 버터(또는 마가린·식물성 유지), 우유,생크림 등의 재료를 적절히 혼합하여 구운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1090	식빵	ND	○ 생크림케익,롤케익 ○ 조각케익 등 × 아이스크림케익 ⇒ 아이스크림(1585) × 떡 케익 ⇒ 떡(1097) ◆ 곡분,효모,식염,설탕,기름 등을 가공하여 만든 주식용 빵으로 곡물이외에 다른 재료의 혼합이 낮은 제품 ○ 보리식빵,옥수수 식빵,현미식빵 등 각종 식빵 ○ 모닝빵,바게뜨,크라상 등	
1095	기타빵류	ND	◆ 식빵류를 제외한 제과점 등에서 구입한 굽거나 때로는 굽지않고 잼을 바르거나,야채,토마토,치즈 등을 첨가해서 먹는 빵 ○ 슈크림빵,버터빵,크림빵,카스테라 제과점빵 등 ○ 찐빵,호빵,도너츠 ○ 핫도그,붕어빵,호떡,호두과자,팬케익,만쥬 등 빵류 ○ 햄버거,샌드위치,토스트 등 ×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구입한 샌드위치 및 햄버거 ⇒ 일반식당(7510),패스트푸드(7550) × 핫도그,붕어빵,호떡,호두과자,팬케익,토스트 등을 노점 및 음식점에서 구입한 경우 ⇒ 이동식 음식점	
1097	떡	ND	◆ 쌀을 주원료로 하고,그 밖의 곡류를 섞어 만든 전통 ㉠빙수용 떡, 떡케익도 포함 ○ 가래떡,인절미,모찌떡,시루떡,찹쌀떡 등 ○ 경단,약식(약밥) 등 한국전통식품 ○ 빙수용 떡,떡케익 등 떡의 변형도 포함 ○ 기타 떡 × 가구에서 쌀,팥 등의 주재료를 제공하고 공임만 받는 경우 ⇒ 식품관련서비스(3910)	
1110-1125	육류		◆ 어류 이외에 신선,냉동,냉장된 식용동물고기의 날고기 및 뼈,내장 등의 부산물(식용으로 구입한 살아있는 동물 포함) ㉠ 불순물을 제거한 후 포장하여 절단,냉동된 것도 포 ㉠ 부산물(꼬리,내장,머리,사골,선지,뼈 등)도 포함	
1110	쇠고기	ND	◆ 소의 정육 및 부산물(꼬리,내장,머리,사골,선지,뼈 ○ 쇠고기 및 쇠고기정육 ○ 꼬리,내장,머리,사골,선지,뼈 등 쇠고기부산물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115	돼지고기	ND	◆ 돼지의 정육 및 부산물(꼬리,내장,머리,사골,선지,뼈) ○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정육 ○ 꼬리,내장,머리,사골,선지,뼈 등 돼지고기부산물 × 삶은 족발,꼬리,간 등 ⇒ 기타육류가공품(1145)	
1120	닭고기	ND	◆ 닭의 생육(생계) 및 부산물(닭발 등) ○ 닭고기 및 닭고기 정육	
1125	기타생육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생육 및 생육부산물 ○ 개고기,말고기,염소고기 등 ○ 고래고기,오리고기,타조고기,자라 등 기타동물고기	
1130-1145	육류가공품		◆ 육류를 소금에 절인 것,간장에 절인 것,말린 것 등 (햄,소시지 및 베이컨 등) 및 육류를 이용한 부산물 ㉠내용의 주성분이 육류인 육류가공품	
1130	소시지	ND	◆ 소,양,돼지 따위의 창자에 다진 양념한 고기를 넣어 혼연시켜 만든 것 ○ 비엔나소시지, 프랑크소시지 ○ 야채 등을 넣은 혼합소시지	
1135	햄 및 베이컨	ND	◆ 육류를 소금에 절인 후 훈연(燻煙) 처리한 식품 ○ 햄 ○ 베이컨 ○ 햄소시지 ○ 햄통조림	
1145	기타육류가공품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주원료가 육류인 가공품 ㉠레토르트식품,동결건조식품,즉석조리식품은 제외 ○ 떡갈비,양념갈비 등 ○ 개소주,흑염소즙 등 ○ 한약재 등을 다소 첨가한 경우도 포함 ○ 삶은 족발,삶은 돼지머리 등 삶은 육류 ○ 육포,바베큐,훈제육류,냉동 돈까스등 ○ 양념된 불고기,양념된 돈까스,닭꼬치,치킨 등 ○ 설렁탕 육수 등 육류를 원료로 우려낸 국물 ○ 기타육류를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1152-1172	신선수산물		× 즉석삼계탕은 육류와 곡물이 혼합된 즉시 섭취가능한 식품 ⇒ 즉석·동결식품(1690) × 냉동피자 ⇒ 즉석·동결식품(1690) × 배달시킨 피자,치킨 ⇒ 배달음식(7520) × 여러가지를 혼합하여 만든 육수 ⇒ 기타미분류식품(1695) ◆ 포획된 후 삶거나,찌거나,굽거나,절이는 등의 가공하지 않은 수산물류 ㉠ 냉동,세척,절단 및 불순물 제거 등 최소한의 가공된 것도 포함	
1152	갈치	ND	◆ 신선,냉장,냉동 등 갈치 ○ 갈치 × 손질된 반건조 갈치 ⇒ 기타염건수산물(1184)	
1154	명태	ND	◆ 신선,냉장,냉동의 명태 ○ 명태,생태,동태 등 ○ 명태살,명태알, 내장 등 부산물 × 북어,황태,코다리,노가리 ⇒ 북어(1174)	
1156	조기	ND	◆ 참조기,황조기 등 조기 ○ 참조기,흑조기 등 조기류	
1158	고등어	ND	◆ 농어목 고등어과 ○ 고등어, 망치고등어 × 고등어통조림 ⇒ 수산물통조림(1190) × 염장 고등어 ⇒ 간고등어(1182)	
1160	꽁치	ND	◆ 동갈치목 꽁치과 ○ 꽁치 × 꽁치통조림 ⇒ 수산물통조림(1190)	
1162	오징어	ND	◆ 두족류 십완목(十腕目)에 속하는 연체동물 ○ 갑오징어,무늬오징어,반디오징어, ○ 쇠오징어,화살오징어,창오징어,흰오징어 등 × 삶은 것 및 데친 것 ⇒ 기타수산물가공품(1195)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164	가자미	ND	◆ 가자미목 가자미과 ○ 참가자미,돌가자미 등 × 건조 및 반건조 가자미 ⇒ 기타수산물가공품	
1166	게	ND	◆ 민물 및 바다의 양식 및 자연 게 및 가재 ○ 참게,꽃게,대게,털게 등 ○ 민물 및 바다가재 ○ 대게 등을 구입한 후 즉석에서 삶아주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 포함 × 삶은 것 및 데친 것 ⇒ 기타수산물가공품(1195)	
1168	굴	ND	◆ 사새목 굴과 ○ 갯굴, 안갯 굴	
1170	조개류	ND	◆ 굴을 제외한 패류 ○ 민물조개,대합,피조개,홍합,가리비,꼬막,바지락,키조개 등 ○ 소라,전복,달팽이,고동,골뱅이 등 일매패류 ○ 깎 것(조개살) 포함	
1172	기타 수산물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신선·냉장·냉동 수산물 및 그 부산물 ○ 참치,장어,연어,대구,광어,민어,복어,생멸치 등 바다 ○ 민물장어,미꾸라지,잉어,가물치,붕어 등 민물어류 ○ 낙지,문어,새우(살),꼴뚜기,쭈꾸미 등 연체동물류 ○ 날치알 등 기타 어류알 ○ 넙치,돔,연어,참치 등의 활어를 구입한 신선·냉장·냉동 수산동물의 회 ○ 신선어류가 2종 이상 혼합되어 손질된 상품 구입 ○ 병어,임연수어,삼치,도미,해삼,멍게,미더덕,상어 등 기타 신선수산물 × 선어개가공의 재료세트(해물탕재료세트 등) ⇒ 기타 미분류식품(1695)	
1174-1184	염건수산물		◆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 또는 반건조한 수산물 × 조미포 ⇒ 기타수산물가공품(1195)	
1174	복어	ND	◆ 완전 건조 및 반건조 상태의 명태 ○ 복어,노가리,복어채 ○ 명태코다리 ○ 황태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176	굴비	ND	◆ 소금에 절여 말린 상태의 조기 ○ 굴비	
1178	마른멸치	ND	◆ 멸치를 말린 것 ○ 마른멸치 × 멸치가루 ⇒ 기타수산물가공품(1195)	
1180	마른오징어	ND	◆ 물오징어를 말린 것 ○ 마른 오징어 ○ 반건조 오징어 ○ 오징어채 × 잘라서 양념한 오징어포 ⇒ 기타염건수산물	
1182	간고등어	ND	◆ 고등어를 장기간 저장하기 위해 소금에 절인 것 ○ 간고등어	
1184	기타염건수산물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않은 반건조를 포함한 염건수산물 ○ 쥐치포, 병어포, 대구포 등 포류 ○ 기타 어채류 ○ 마른새우, 과메기, 건해삼, 건해파리, 건홍합, 반건갈치 ○ 간갈치, 간대구, 간뽕치, 간조기 등 × 순수 새우가루, 멸치가루 ⇒ 기타수산물가공품	
1186-1195	기타수산물가공		◆ 염건수산물 이외의 가공한 수산물류	
1186	어묵	ND	◆ 생선의 살을 으깨어 소금 등의 조미료를 넣고 반죽하여 찌거나 튀겨 응고시킨 식품 ○ 어묵 ○ 어육소시지 등	
1188	맛살	ND	◆ 명태 등의 생선살에 게향 등을 첨가하여 가공한 식품 ○ 게맛살, 새우맛살 등	
1190	수산물통조림	ND	◆ 각종 수산물류의 통조림 ○ 참치 · 꽁치 · 고등어 · 정어리통조림 등 어류통조림 ○ 골뱅이 통조림 등 기타 수산물류통조림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192	젓갈	ND	◆ 김치 등 반찬의 풍미를 살리기 위해 첨가하는 양념 젓갈류 ○ 새우젓, 멸치젓 등 ○ 까나리젓 ○ 기타 조미용 액젓(멸치액젓 등) × 반찬으로 가공되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젓갈 ⇒ 반찬류(1685)	
1195	기타수산물 가공품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수산물가공품 ㉠조리가 완료된 조미반찬 및 재료세트는 제외 ㉠레토르트식품, 동결건조식품, 즉석조리식품은 제외 ○ 조미오징어, 조미쥐포 등 조미식품 ○ 생선가스, 해물완자(수산동물을 주원료로 한 냉동식품 등) ○ 훈제연어 등 훈연한 수산물류 ○ 멸치가루, 새우가루 등 가루화한 수산물류 × 조리가 완료된 조미반찬(멸치조림, 계장 등) ⇒ 반찬류(1685) × 조리가 완료된 재료세트(해물탕재료세트 등) ⇒ 기타미분류식품(1695)	
1210-1250	유제품 및 알		◆ 동물의 젓, 알 또는 이것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 ㉠조류의 알도 포함	
1210	우유	ND	◆ 소의 젓(우유) 및 소 이외 포유동물의 젓 ㉠착향성분(과당, 커피, 색소, 비타민 등)을 넣은 것도 ㉠병, 깡통에 든 것도 포함 ○ 원유(原乳), 생유 등 우유 ○ 저지방 우유, 유당분해 우유, 농축 우유, 가향 우유 등 가공 우유 ○ 산양유 등 기타동물의 젓 ○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 우유, 검은 콩 우유, 커피 우유 등 맛을 가미한 우유 × 유산균발효유 ⇒ 요구르트(1225)	
1215	분유	ND	◆ 우유를 가루로 가공한 것 ○ 일반분유 ○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등 조제분유 ○ 특수한 기능을 추가한 분유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220	치즈	ND	◆ 우유 속의 단백질을 응고·발효시켜 만든 것 ○ 슬라이스치즈 등 자연치즈 ○ 경성가공치즈, 연성가공치즈 등 가공치즈	
1225	요구르트	ND	◆ 우유에 유산균 및 효모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것 ○ 액상요구르트 등 ○ 호상(결착한 상태) 요구르트 등 × 유산균 탄산음료 ⇒ 기타음료(1735)	
1230	두유	ND	◆ 콩을 갈아서 만든 콜로이드 상태의 음료 ○ 두유	
1245	기타우유가공품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우유가공품 ○ 연유 ○ 우유에서 지방분만을 원심분리하여 만든 것 ○ 버터를 가공하고 남은 것으로 만든 것 ○ 치즈를 제조하고 남은 것으로 만든 것 ○ 유청에서 탄수화물 성분만 분리하여 만든 것	
1250	알 및 알가공품	ND	◆ 달걀, 조류의 알 및 알을 가공한 제품 ㉠ 통조림, 병조림 또는 으깬 것도 포함 ○ 달걀, 메추리알, 오리알, 타조알 등 ○ 삶은 달걀, 달걀가루 등 달걀 가공품	
1255-1290	유지류		◆ 식물 또는 동물에서 채취한 식용기름	
1255	참기름	ND	◆ 참깨를 압착하여 얻는 기름 ○ 참기름	
1260	들기름	ND	◆ 들깨를 압착하여 얻는 기름 ○ 들기름	
1265	기타식물성 식용유	ND	◆ 참기름, 들기름을 제외한 콩기름, 옥수수기름 등의 식물성 액상 식용유제품 ○ 대두유(콩기름), 옥수수기름(옥배유) 등 ○ 포도씨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등 ○ 고추기름, 미강유, 채종유, 야자유 등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270	버터	ND	◆ 우유속의 지방을 분리하여 응고시켜 만든 것 ○ 버터	
1290	기타유지류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유지 ○ 마가린 ○ 식물성 고형 유지 ○ 라드 등 동물성 식용유 ○ 기타 유(乳)제품으로부터 유지	
1305-1365	과일 및 과일 가공품		◆ 나무 등 식물을 가꾸어 얻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 대개 수분이 많고 단맛 또는 신맛이 남 ◆ 즙을 내어 즉시섭취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 ⇒ 과일 및 야채쥬스(1720)	
1305	사과	ND	◆ 사과 ○ 부사, 홍옥 등 × 사과잼 ⇒ 잼, 꿀, 조청(1560)	
1310	배	ND	◆ 배 ○ 신고배, 장십랑, 만삼길 등 × 배과즙 음료 ⇒ 과일 및 야채쥬스(1720)	
1315	복숭아	ND	◆ 복숭아 ○ 황도, 백도, 천도 등 × 복숭아 통조림 ⇒ 과일가공품(1365)	
1320	포도	ND	◆ 포도 ○ 거봉, 캠벨, 씨없는 포도, 청포도 등	
1325	밤	ND	◆ 밤 ○ 밤 × 군밤, 찐밤 ⇒ 과일가공품(1365)	
1330	감	ND	◆ 감 ○ 단감, 연시, 홍시, 아이스홍시 등 × 껏감 ⇒ 과일가공품(1365)	
1335	감귤류	ND	◆ 유자, 탕자 등을 제외한 감귤류 ○ 귤(온주밀감), 금감(깡깡) 등 ○ 오렌지, 레몬, 자몽 ○ 한라봉 등 개량귤 포함 × 유자, 탕자 ⇒ 기타과일(136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340	참외	ND	◆ 참외 및 멜론 ○ 참외, 멜론 등	
1345	수박	ND	◆ 수박 ○ 수박, 복수박 등	
1350	딸기	ND	◆ 딸기 및 산딸기 ○ 딸기, 산딸기(복분자) 등 × 딸기잼 ⇒ 꿀,잼,조청(1560)	
1355	바나나	ND	◆ 바나나 ○ 일반바나나, 미니바나나 등	
1360	기타과일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과일류 ○ 인과류(仁果類):꽃턱이 과육(비파 등) ○ 준인과류(準仁果類):씨방이 과육(유자, 탕자 등) ○ 핵과류(核果類):중과피가 과육(매실, 살구, 자두, 대추) ○ 견과류(堅果類):떡잎이 과육(호두, 잣, 아몬드, 은행) ○ 장과류(漿果類):즙이 많은 과일(키위, 다래, 파인애플) ○ 기타과일류:모과, 무화과, 머루, 아보카도, 해바라기씨 ○ 망고, 체리, 앵두	
1365	과일가공품	ND	◆ 과일을 주원료로 말리거나, 굵거나 통조림화 한 것으로 음료류는 과일 및 야채주스에 분류 ㉠ 통조림, 병조림 포함 ○ 복숭아통조림, 매실통조림 등 과일통조림 ○ 건대추, 건바나나, 건포도, 꽃감, 열대건조과일 등 말린 ○ 군밤, 찢밤, 익힌 밤 등 ○ 포도, 복분자, 매실 등의 농축액 × 배즙, 포도즙, 사과즙 등 ⇒ 과일 및 야채주스(1720) × 딸기잼, 감귤잼, 사과잼 등 ⇒ 꿀, 잼, 조청(1560) × 군밤 등을 노상에서 구워 판매 ⇒ 이동식 음식점 × 배, 복분자 등을 발효시키거나 알콜과 혼합하여 만든 과일주 ⇒ 과실주(1810)	
1404-1495	채소 및 채소가공품		◆ 과일채소를 제외한 밭에 가꾸어 먹는 것(서류 포함) - 단순히 까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다듬은 것은 해당 항목으로 분류 ※ 말린 것, 물에 담근 것, 가루화한 것, 쓴맛을 우려내기 위하여 데친 것 등은 모두 채소가공품으로 분류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404	배추	ND	◆ 배추(양배추 제외) ○ 김장배추, 봄배추, 얼갈이배추, 고냉지배추 ○ 배추뿌리 등 × 소금에 절인 배추 ⇒ 채소가공품(1495)	
1408	상추	ND	◆ 적상추, 청상추 및 양상추 등 ○ 상추, 양상추 등	
1412	시금치	ND	◆ 시금치 ○ 시금치 × 삶은 시금치 ⇒ 채소가공품(1495)	
1416	양배추	ND	◆ 양배추 ○ 양배추 ○ 보라색 양배추 등	
1420	미나리	ND	◆ 미나리 ○ 미나리 ○ 불미나리 등	
1424	깻잎	ND	◆ 들깨의 잎으로 날로 먹거나, 어린 잎은 데쳐서 먹는 ○ 깻잎	
1428	부추	ND	◆ 부추 ○ 부추	
1432	무	ND	◆ 무 ○ 김장무, 봄무, 알타리무 ○ 열무, 시래기 등 × 말리거나 삶은 시래기, 무말랭이, 짬아지, 단무지 등 ⇒ 채소가공품(1495)	
1436	당근	ND	◆ 당근(홍당무) ○ 당근	
1440	감자	ND	◆ 감자 ○ 감자 × 녹말가루 ⇒ 채소가공품(1495)	
1444	고구마	ND	◆ 고구마 ○ 고구마, 고구마순 등 × 군고구마, 데친 고구마줄기 ⇒ 채소가공품(1495)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448	도라지	ND	◆ 도라지 ○ 도라지(깎 것 포함) × 말린 도라지 ⇒ 채소가공품(1495)	
1452	콩나물	ND	◆ 콩을 발아시켜 빛을 가린채로 물을 주어 길른 것 ○ 콩나물	
1456	버섯	ND	◆ 식용버섯 ○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등 × 말린 버섯 및 버섯가루 ⇒ 채소가공품(1495) × 영지버섯, 상황버섯 등 약용버섯 ⇒ 한약 및 한약재(4030)	
1460	오이	ND	◆ 오이 ○ 오이, 늙은 오이 등 × 오이 짬아지 ⇒ 채소가공품(1495)	
1464	풋고추	ND	◆ 말리지 않은 싱싱한 상태의 고추, 주로 날로 섭취하거나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양념으로 넣는 것 ℥ 고춧잎 포함 ○ 청풋고추 및 홍풋고추(건조용으로 구입한 풋고추 포) ○ 오이맛 고추, 파리고추 등 개량고추 ○ 고춧잎 등 × 피망 ⇒ 기타채소(1492)	
1468	호박	ND	◆ 애호박, 단호박, 늙은 호박 등 ℥ 호박잎 등 부산물도 포함 ○ 단호박, 애호박, 늙은호박 등 ○ 호박씨, 호박잎 등의 부산물 × 삶은 호박잎 ⇒ 채소가공품(1495)	
1472	가지	ND	◆ 가지 ○ 가지	
1476	토마토	ND	◆ 토마토 ○ 일반토마토, 방울토마토 등	
1480	파	ND	◆ 파종류 ○ 대파, 쪽파 등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484	양파	ND	◆ 양파 ○ 양파 × 양파즙 ⇒ 과일 및 야채쥬스(1720)	
1488	마늘	ND	◆ 마늘 및 마늘 부산물 ₩ 생것, 껍질을 벗긴 것 포함 ○ 간마늘 및 안간 마늘 ○ 마늘쫑, 마늘 줄기(뿔마늘) ○ 마늘 구입 후 찢어주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포함 × 간마늘, 건마늘, 가루마늘, 흑마늘 ⇒ 채소가공품	
1492	기타채소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신선채소 ○ 더덕, 비름나물, 돌나물, 고사리 등(채취 포함) ○ 달래, 냉이, 쑥, 마 등 ○ 고사리, 숙주나물, 취나물 등 ○ 죽순, 솔잎, 두릅, 오가피, 취 등 과일아닌 임산물 ○ 피망, 우엉, 연근, 쑥갓, 아욱, 토란, 신선초, 알로에 등 기타채소 × 말린 고사리, 고구마줄기, 토란대 등 ⇒ 채소가공품(1495)	
1495	채소가공품	ND	◆ 채소를 주원료로 절이거나, 말리거나, 익히거나, 분말 형태로 만든 것 ₩ 통조림, 병조림, 팩, 항아리에 넣은것 등도 포함 ○ 고추, 피망, 무, 오이, 마늘 및 깻잎, 단무지 등을 장이나 된장에 절인 것 ○ 김장김치 재료로 구입하는 절인 배추 ○ 군고구마, 익힌 감자 등 익힌 채소류 ○ 깻잎 통조림, 마늘 통조림 등 채소통조림 ○ 녹말가루 등 채소가루류 ○ 마가루, 마죽 등 ○ 무말랭이, 말린 고사리, 말린 고구마줄기, 말린 토란줄기, 말린 취나물 등 각종 건조된 나물거리 × 야채샐러드용 혼합채소 ⇒ 기타채소(1492) × 절임 깻잎, 절임 무 등에 양념을 추가적으로 하여 반찬으로 버물린 것 ⇒ 반찬류(1685) × 여러 종류의 채소 및 과일을 갈아만든 녹즙 ⇒ 과일 및 야채쥬스(1720) × 붉은 고추를 말린 것 ⇒ 말린 고추(1605)	
1520-1540	해조 및 해조가공품		◆ 식용으로 이용되는 가공하지않은 바다, 강 등에서 자라는 조류 및 이를 말리거나, 굵거나, 가루내는 등 가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1520	김	ND	◆ 말린 김, 구은 김 등 모든 종류의 김 ○ 일반김, 돌김 등 ○ 말린 김, 양념구이 김 등 × 김 양념부침 ⇒ 반찬류(1685)	
1530	미역	ND	◆ 미역 ○ 물미역, 마른미역, 염장미역 등 × 해조를 가공한 동결건조식품(즉석미역국 등) ⇒ 즉석·동결식품(1690)	
1540	기타해조류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해조 및 해조가공품 ○ 다시마, 우뚝가사리, 청각, 톳, 파래, 매생이, 도박류, 꼬시래기 등 ○ 다시마 가루 ○ 기타해조류 및 해조가공품 × 미역튀각 등 기타 ⇒ 반찬류(1685) × 클로렐라 영양제 ⇒ 영양보조제(4050)	
1555-1590	당류 및 과자류		◆ 단맛이 나는 당류 및 과자류	
1555	설탕	ND	◆ 설탕 및 사카린 등 고체 및 분말 당분 ○ 정백당, 각설탕, 얼음설탕, 흑설탕 등 ○ 사카린 등	
1560	잼, 꿀, 조청	ND	◆ 과일, 고구마 등을 졸여서 만드는 잼 등 저장식품, 액체당 및 벌꿀 등 ○ 벌꿀 ○ 조청 ○ 과일잼(사과잼, 포도잼, 딸기잼 등) ○ 곡물잼(땅콩잼 등) 등 ○ 물엿, 시럽, 액상과당 등	
1565	초콜릿	ND	◆ 카카오나무에서 얻은 코코아원료에 밀크, 버터, 설탕, 향료 등을 첨가하여 굳힌 과자 ○ 초콜릿 ○ 초콜릿 원료 ○ 초코바 등 × 초코빵, 초코볼, 초코스틱 등 ⇒ 기타과자(1590)	
1570	사탕 및 젤리	ND	◆ 카라멜, 드롭스, 젤리 및 땅콩 등을 당류로 썬 것, 카라멜류 및 젤리제품 포함 ㉠소프트캔디, 목캔디도 포함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 드롭스,카라멜,츄잉 캔디 ○ 목캔디류 ○ 과즙구미류 ○ 젤리류 × 젤라틴에 가공한 과일을 우유나 요구르트와 혼합하여 떠먹을 수 있게 만든 제품 ⇒ 기타미분류식품	
1575	한식과자	ND	◆ 한국의 전통과자,양과(洋菓)와 구별 ○ 강정(蔞餅)류:강정,산자 등 ○ 유밀과(油蜜果)류:유밀과,약과,타래과 등 ○ 숙실과(熟實果)류:밤초,울란(栗卵) 등 ○ 다식(茶食)류:밤가루,송화가루,콩가루 등을 꿀에 반죽하여 무늬가 새겨진 다식판에 박아 만든 과자 ○ 정과(正果)류:각종 과일이나 연근,당근 등을 꿀이나 설탕에 쟁이거나 졸여서 만든 과자 ○ 곡물에 엿기름을 섞어 당화시켜 졸인 엿 등 × 인삼정과 ⇒ 인삼(4040)	
1580	껌	ND	◆ 향과 미를 즐기면서 구강세척효과를 위해 씹는 것 ○ 껌,풍선껌 등	
1585	아이스크림	ND	◆ 우유 또는 유지방에 설탕,달걀,안정제(젤라틴 등),향료,색소 등을 넣고 휘저어서 얼린 빙과 ○ 아이스바, 아이스크림콘, 아이스 컵 ○ 아이스크림 케익 ○ 소프트 아이스크림 ○ 아이스크림과자, 식용얼음 등 ○ 빙수아이스크림, 샤베트 등 기타 아이스크림	
1590	기타과자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당류 및 과자류 ㉮비스킷,스낵과자에 초콜릿이 결합된 초코빵 등의 초콜릿가공 과자 포함 ○ 비스킷류 ○ 크래커,샌드,웨하스 등 ○ 파이,스낵,칩,볼과자,빵과자류(초코렛을 두른 빵) 포 ○ 곡물과자,빵튀기,팝콘 ○ 종합과자세트 등 ○ 생과자류 ○ 솜사탕,양갱류 등 기타과자 ○ 과자재료 등 × 시리얼식품(콘플레이크 등) ⇒ 기타곡물가공품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605-1665	조미식품		◆ 음식조리에 보조적으로 이용되는 조미를 목적으로	
1605	말린 고추	ND	◆ 익은 고추를 말린 것으로 매운 느낌이 나는 식물 ㉡ 말린 것, 자른 것, 가루화한 것도 포함 ○ 양념고추, 고춧가루, 마른고추, 싹고추 등 ○ 고추씨 등 부산물 포함 × 고추(풋고추), 고춧잎 ⇒ 풋고추(1464)	
1610	참깨 및 들깨	ND	◆ 참깨, 들깨 등(볶음깨 포함) ○ 참깨, 들깨 ○ 소량의 소금을 넣고 거칠게 빵은 것(깨소금)	
1615	생강	ND	◆ 생강 ○ 생강 ○ 생강가루 등	
1620	소금	ND	◆ 짠맛이 나는 천연소금 및 가공소금 ○ 정제염, 죽염 등 ○ 암염, 천일염 등 ○ 맛소금 등 가미된 소금 포함	
1625	간장	ND	◆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쓰는 짠맛이 있는 액체 조미 ○ 조선간장, 양조간장 ○ 생선회용 간장 등	
1630	된장	ND	◆ 콩을 발효 후 소금, 붉은 고추, 숯 등을 넣어 숙성 후 장과 분리한 건더기 ○ 된장, 청국장 ○ 봄철에 담그는 담북장·막장, 여름철에 담그는 집장 가을철에 담그는 청태장·팔장 등 ○ 찜장 등 기타된장	
1635	고추장	ND	◆ 쌀·보리 등을 질게 지은 밥, 떡가루의 된죽에, 메줏가 루·고춧가루·소금을 넣어 섞어서 만든 붉은 빛깔 의 매운 장 ㉡소량의 식초 등을 혼합한 것도 포함 ○ 고추장 ○ 초고추장 × 볶음고추장 ⇒ 반찬류(1685)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640	카레가루	ND	◆ 카레가루(고체카레 포함) ○ 카레가루(고체카레 포함)의 구입 × 카레가루와 채소 등을 혼합하여 즉시 섭취가능한 상태의 카레 ⇒ 즉석·동결식품(1690)	
1645	식초	ND	◆ 곡물 또는 과일을 발효시켜 신맛이 나는 것 ○ 감식초,사과식초 등 ○ 양조식초 등 × 즉시 섭취가능한 식초음료 및 음료베이스 ⇒ 기타음료(1735)	
1650	케첩	ND	◆ 토마토를 갈아서 거른 후 설탕·소금·식초·향신료를 넣어 졸인 소스 ○ 토마토케첩	
1655	드레싱	ND	◆ 샐러드·냉요리·전채 등에 사용되는 소스 ○ 마요네즈 ○ 프렌치 드레싱 ○ 각종 드레싱 재료	
1660	혼합조미료	ND	◆ 각종 조미료를 혼합하여 분말,과립 또는 고형으로 건조 가공한 것 ○ 화학적으로 맛을 내기 위한 조미료 등 ○ 육류 및 어류·해조류와 혼합한 혼합조미료	
1665	기타조미식품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조미료 ○ 불고기양념,닭볶음양념,굴양념 등 액체조미료 ○ 춘장(짜장) 등 ○ 햄버거소스,스테이크소스,피자소스,하이라이스소스,칠리소스 등 소스류 ○ 후추,계피,겨자,고추냉이(와사비),허브류 등의 향신 ○ 식용색소,이스트,베이킹파우더,조미 전용술 등 기타 조미료 × 채소가루 ⇒ 채소가공품(1495) × 종합조미료세트 ⇒ 혼합조미료(1660) × 멸치가루,새우가루 ⇒ 기타수산물가공품(1195)	
1670-1695	기타식품		◆ 위의 다른 항목에 분류되지 않는 식품 ㉪ 다양한 원료가 혼합되어 항목분류가 곤란한 제품 ㉪ 식품제조공정을 통해 완성품으로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의 제품 포함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670	죽 및 스프	ND	◆ 곡물등의 주재료에 육류,야채 등을 재료를 배합하여 분말 및 완성된 제품 ㉠죽전문점 등 음식점으로부터 구입한 죽은 제외 ㉠이유식 포함 ○ 쇠고기죽,양송이죽,야채죽,갯죽,깨죽 등의 분말 ○ 쇠고기스프,양송이스프,야채스프 등 ○ 죽 및 스프 등을 캔으로 제품화 한 것 × 죽전문점 등 음식점으로부터 구입한 죽 ⇒ 일반식당(7510),배달음식(7520)	
1675	이유식	ND	◆ 곡물등의 주재료에 육류,야채 등을 재료를 배합하여 분말 및 완성된 제품 ○ 가루이유식 등 ○ 호상(겉죽한 상태) 이유식 등	
1680	김치	ND	◆ 무,배추,갯과 같은 채소의 잎,줄기,뿌리 등을 소금에 절였다가 고추,파,마늘,젓갈 등의 양념을 버무려 담근 ㉠기타 채소가 포함된 것도 포함 ○ 배추김치,깍두기 ○ 동치미,갯김치 등	
1685	반찬류	ND	◆ 김치 이외의 양념 등 2종류 이상이 혼합되어 조리가 완료된 조미반찬 및 반찬재료세트 ㉠판매장소나 배달 구분없음 ㉠단순 절임이나 말린 것(짭아지,단무지 등) 등은 포함하지 않음 ○ 깻잎,고추절임 등 절임반찬 ○ 콩자반(반찬),땅콩볶음 등 ○ 시금치 무침,미역 무침,된장고추,튀각,김자반 등 ○ 멸치조림,새우조림,양념게장,오징어채 등 ○ 장조림,알조림(마늘,메추리알 등과 혼합된 경우) ○ 명란젓,창란젓,황석어젓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반찬용 젓갈 ○ 조리된 잡채(반찬) 등 × 김치 등의 양념으로 사용되는 젓갈 ⇒ 젓갈(1192) × 단순 절임이나 말린 것(짭아지,단무지 등) ⇒ 채소가공품(1495) × 순수 알조림 및 장조림 등 ⇒ 알 및 알가공품(1250)	
1690	즉석 · 동결식품	ND	◆ 식품제조업체가 이미 조리하여 즉석에서 데우는 등의 처리를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육류 · 수산 동물 · 야채 · 곡물 등이 혼합되어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냉동 또는 진공처리(무균포장)된 ※ 레토르트식품:내용물 추가없이 바로 데워 먹을 수 있는 것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1695	기타미분류식품	ND	동결건조식품:식품을 진공, 건조상태로 보존한 것 즉석조리식품:조리가 완료된 즉석식품(즉석삼계탕 냉동 및 냉장식품중 혼합재료: 삼계탕,해물탕 등 ○ 짜장,카레 등 레토르트식품 ○ 즉석북어국,즉석해장국,옛날사골곰탕 등 동결식품 ○ 냉동피자,냉동만두,즉석삼계탕 등 즉석조리식품 ○ 삼계탕,해물탕 등과 같은 냉동 및 냉장식품중 혼합재 ×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처리로 섭취가 가능한 밥(순수 곡물) ⇒ 기타곡물가공품(1080) × 순수 빼고은 국물 ⇒ 기타육류가공품(1145) ◆ 위에서 여러 종류가 혼합되어 별도로 분류되지않는 식품 및 기타식료품에 대한 지출 ₩ 할인점,편의점 등에서 구입하는 진열된 식사대용 ₩ 식당에서 구입한 것은 음식숙박으로 분류 ₩ 기타혼합식품,기타음식재료도 포함 ○ 공정을 거친 삼각김밥,어묵,김밥,순대 등이 할인점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 누룩,효모 등 발효를 위한 원료 ○ 매운탕꺼리 등 혼합 식재료 구입(조리과정 필요) ○ 메뚜기,번데기,벌의유충 등 식용곤충류 ○ 술안주 세트,팔빙수 재료세트 등 기타혼합식품 ○ 장담그는 숯 등 기타음식재료 ○ 과일가공이 혼합된 유제품 ○ 기타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식품 × 카레 ⇒ 카레가루(1640) × 식당에서 구입한 김밥 등 식사대용음식 ⇒ 일반식당 (7510) × 밥만 진공포장된 것 ⇒ 기타곡물가공품(1080) ×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닭꼬치 등 성분이 명확한 제품 ⇒ 기타육류가공품(1145) 등 각각 주요 항목으로 분	
1710-1715	커피 및 차		◆ 커피 및 차 ₩ 기타 재료를 소량 넣은 것도 포함 ₩ 커피숍,레스토랑 등의 차 및 음료 ⇒ 주점·커피숍 (7560)	
1710	커피	ND	◆ 커피나무 열매의 씨를 볶아 만든 원두나 가루를 주원 료로 한 것 ₩ 알맹이,과립,분말,고체,액체(음료)인 것도 포함 ₩ 설탕 및 커피크림이 혼합된 믹스 포함 ₩ 캔커피음료 포함 ○ 커피원두 ○ 커피(모카커피,카페오레,카푸치노 등)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1715	차	ND	○ 커피믹스,프림 ○ 커피음료,자판기 커피 포함 ○ 캔 및 피트병에 담겨 판매되는 커피음료 등 × 다방에서의 커피,차 및 음주대 ⇒ 주점·커피숍 ◆ 차나무의 잎제품 및 과실의 열매 볶거나 가공을 통하여 음료형태로 만든 것으로 차음료 포함 ℥ 난알,과립,분말,고체,액체,혼합 등 형태 구분없음 ℥ 캔 및 피트병에 넣어 음료로써 판매되는 차 포함 ○ 코코아,마 등을 이용한 차 ○ 보리차용 보리(티백도 포함) ○ 녹차,홍차(발효차),우롱차(반발효차,오롱차의 중국 발음) 등 ○ 옥수수차,유자차,계피차,땅콩차,울무차,둥글레차 등 ○ 인삼차,생강차,쌍화차,취차,모과차,대추차,홍차,허브차 등 ○ 자판기차 포함 ○ 차음료 - 보리,콩,옥수수 등과 그 부산물을 이용한 곡물차 음료 - 녹차,허브,옥수수 등을 피트병 및 캔에 넣어 음료로 판매하는 것 × 다방에서의 커피,차 및 음주대 ⇒ 주점·커피숍 × 매실농축액(다양한 용도로 이용가능한 것) ⇒ 과일가공품(1365)	
1720-1735	쥬스 및 기타 음료		◆ 과일쥬스,야채쥬스,생수,기능성 음료 및 기타음료	
1720	과일 및 야채 쥬스	ND	◆ 과일 및 야채를 일부 함유한 음료 ℥ 과일 및 채소의 농축액은 제외 ○ 오렌지,망고,감귤,토마토,알로에 등을 이용한 쥬스 ○ 과즙액과 특정 성분을 혼합한 과즙음료 ○ 과일과 채소의 혼합재료 음료 ○ 배즙,포도즙,오렌지즙,취즙 등 ○ 녹즙,호박즙,양파즙 등 × 홍초(흑초) 등 희석해서 섭취하는 것(베이스 포함) ⇒ 기타음료(1735) × 매실농축액,복분자농축액 ⇒ 과일가공품(1365)	
1725	생수	ND	◆ 암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물리적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샘물. 판매수도물 포함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730	기능성 음료	ND	○ 먹는샘물, 생수 ○ 심층수, 광천수 등 ○ 판매수도물 포함 × 광천수를 원료로 만든 사이다 ⇒ 기타음료(1735) ◆ 약국 및 슈퍼 등에서 특정한 치료 등의 효능이 없이 단순히 피로회복, 숙취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하여 판매하는 제품 ○ 비타민, 미네랄, 타우린 등을 함유한 자양강장 제품 ○ 숙취방지 및 해소 등을 위해 구입한 제품 ○ 드링크류 × 치료목적이 명확한 액체소화제, 멀미약 등 ⇒ 판매양약(4020)	
1735	기타음료	ND	◆ 제조목적이 음료이면서 위에 분류되지 않은 생산물 ㉠분말주스, 음료베이스, 혼합음료 등도 포함 ㉠캔음료, 병음료, 팩도 포함 ○ 콜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 착향탄산음료 ○ 탄산음료에 과즙, 우유를 혼합하거나 보리 등을 혼합한 음료, 이온탄산음료 등 기타탄산음료 ○ 이온음료, 식이음료, 쌀음료, 전통음료, 음료베이스 ○ 셰이크류, 슬러쉬, 분말주스 등 ○ 고로쇠액 등 나무 수액 ○ 기타 위에 분류되지 않는 음료 ×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 우유음료 ⇒ 우유(1210) × 우유에 유산균이 포함된 것 ⇒ 요구르트(1225) × 치료목적이 명확한 액체소화제, 멀미약 등 ⇒ 판매양약(4020) × 배즙, 포도즙, 오렌지즙, 칙즙 등 원액 ⇒ 과일 및 야채주스(1720)	
1800-1990 02. 주류 및 담배				
1800-1850	주류		◆ 기호품으로 주류와 담배를 함께 분류; 주점에서 장소, 분위기 등의 제공과 더불어 판매되는 술은 포함하지 ◆ 알코올 성분을 1%이상 함유한 음료 × 주점(호프집 등)에서 마신 술 ⇒ 주점 · 커피숍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800	소주	ND	◆ 주정을 희석하고 조미료를 첨가한 한국식 증류주 ○ 소주(전통소주 포함)	
1810	과일주	ND	◆ 포도,복분자,매실 등을 발효시킨 주류 ○ 포도주,삼페인 ○ 매실주 ○ 복분자 등 × 과일을 원료로한 증류주 ⇒ 증류주(1840)	
1820	맥주	ND	◆ 맥아,홥,물을 주원료로 하여 효모로 발효시킨 술 ○ 맥주 ○ 생맥주 ○ 흑맥주 등 기타맥주	
1830	탁주	ND	◆ 찹쌀,엿쌀,보리,밀가루 등을 찌서 누룩과 물을 섞어 발효시킨 한국 고유의 술로 막걸리라고도 함 ○ 탁주(막걸리) ○ 동동주 × 청주 등 유사탁주 ⇒ 기타주류(1850)	
1840	증류주	ND	◆ 소주이외의 증류주 등 ○ 위스키, 브랜디 ○ 리큐르, 고량주(배갈) ○ 보드카,럼,진,칵테일 등	
1850	기타주류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소주이외의 증류주 등 주 ○ 청주,약주 ○ 민속주 ○ 인삼주,뱀술,취술 등 위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주류	
1900-1990	담배		◆ 사용을 중단하면 금단증세를 일으키는 담배	
1900	담배	ND	◆ 담배식물을 건조하여 다양한 형태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 ㉠ 국산,외산 구분없음 ○ 갑담배,시거,파이프 담배,코 담배,씹는 담배 등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1990	마약	ND	× 금연용품(금연담배,금연초 등) ⇒ 보건의료 소모품 (4060) ◆ 습관성과 탐닉성(耽溺性)이 생기게 하는 물질 ○ 마리화나, 아편, 코카인과 그 추출물 ○ 콜라 넷, 베텔 잎, 베텔 넷과 같은 기타식물성 마약류 ○ 화학적 및 인공마약을 포함한 기타 마약	
2006-2265 03. 의류 및 신발				
2006-2065	직물 및 외의		◆ 의류 및 신발을 구입 또는 제작하기 위한 재료인 상품에 대한 지출과 이 상품을 제작,유지,수선 등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 여기에서 아동은 중학교 입학전 아동까지를 말함 ◆ 의복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직물에 대한 지출	
2005	직물	SD	◆ 의복을 짓기 위한 재료가 되는 천 ○ 한복,양복,양장 등의 의복을 짓기 위한 옷감 ○ 혼례에 따라 옷을 짓기 위해 예로 보내는 비단 × 현물을 주지않고 금전으로 지급한 예단 ⇒ 자산 이전 (9990) × 자수용 천,수예용 천,십자수 천 ⇒ 게임 및 취미용품 (5220) × 의복제작에 따른 수공비 ⇒ 기타의복관련서비스	
2010	남성용 외의	SD	◆ 내의, 학생복 및 메리야스 이외의 남자용 의복 ○ 정장,재킷,예복 등 ○ 남자용 점퍼,코트류,남성용 한복 ○ 남자용 바지:청바지, 반바지 등 × 학생용 교복,체육복 등 단체복 ⇒ 남학생교복 (2020),여학생 교복(2025)	
2015	여성용 외의	SD	◆ 겹에 입는 여성용 의복 ○ 정장,재킷,예복,원피스,투피스,쓰리피스 등 기성양장 ○ 마춤양장,코트류,여성용 한복 ○ 여자용 점퍼 ○ 여성용 청바지, 반바지 등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2020	남학생 교복	SD	○ 치마 × 학생용 교복,체육복 등 단체복 ⇒ 남학생 교복(2020),여학생 교복(2025) ◆ 소속학교에서 단체로 착용을 지정한 남학생용 교복에 대한 지출 ㉮일괄구매한 경우 코트,학생복 이외에 타이 등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포함 조사 ○ 교복(하복 및 동복 등) ○ 코트(학생복) ○ 유치원복(학생복) ○ 지정된 교복용 셔츠,교복용 조끼 ○ 학교지정 운동복,교련복 × 지정되지 않은 일반 넥타이,와이셔츠 등을 별도로 구입한 경우 ⇒ 각각 해당항목에 분류 × 교복에 이름을 새기는 경우 ⇒ 기타의복서비스	
2025	여학생 교복	SD	◆ 소속학교에서 단체로 착용을 지정한 여학생용 교복에 대한 지출 ㉮일괄구매한 경우 코트,학생복 이외에 타이 등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포함 조사 ○ 교복(하복 및 동복 등) ○ 코트(학생복) ○ 유치원복(학생복) ○ 지정된 교복용 셔츠,교복용 조끼 ○ 학교지정 운동복 × 지정되지 않은 일반 넥타이,와이셔츠 등을 별도로 구입한 경우 ⇒ 각각 해당항목에 분류 × 교복에 이름을 새기는 경우 ⇒ 기타의복서비스	
2030	와이셔츠	SD	◆ 재킷과 내의 중간에 넥타이를 걸들여 입는 중의(中) ○ 와이셔츠(드레스 셔츠) ○ 기타셔츠	
2035	남방셔츠	SD	◆ 상의와 와이셔츠 대신에 입는 셔츠 ㉮반소매 포함 ○ 남방셔츠	
2040	블라우스	SD	◆ 주로 여성이 겹옷과 내의 사이에 입는 늘어진 느낌의 ○ 블라우스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2045	티셔츠	SD	◆ 어깨선이 일직선으로 된 T자 모양의 셔츠 ○ 티(T)셔츠 ○ 목 폴라	
2050	스웨터 및 조끼	SD	◆ 편물로 된 상의(上衣) ○ 가디건 ○ 니트,스웨터 ○ 조끼류 등	
2055	운동복	SD	◆ 스포츠용 의류 및 기타섬유제품 ○ 일상적 운동복 ○ 등산복,낚시복 등 ○ 각종 도복,수영복,에어로빅복,발레복 등 전용의복 ○ 기타운동복 등 × 학교지정 운동복 ⇒ 남학생 교복(2020),여학생 교복(2025)	
2060	아동용외의	SD	◆ 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의 ○ 아동용 정장,코트,잠바 등 외의 ○ 아동용 치마,바지 등 ○ 영유아용 외의(만3세 미만) 포함	
2065	기타외의	S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외의 ○ 예비군복,민방위복 등의 제복(학생복 제외) ○ 작업복(비업무용/가정용) ○ 학군단,보이스카웃 등 학교에서 제복 ○ 홈드레스,비옷(우비) 등 기타외의 × 임신부복 ⇒ 여성용 외의(2015) × 모시옷 ⇒ 남성용 외의(2010), 여성용 외의(2015)	
2110-2130	내의		◆ 속옷 및 잠옷에 대한 지출	
2110	남자내의 및 잠옷	SD	◆ 남성의 내의 및 잠옷 ○ 남자용 잠옷,실내복 등 ○ 런닝셔츠,팬티 등 남자내의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2120	여자내의 및 잠옷	SD	◆ 여성의 내의 및 잠옷 ○ 여자용 잠옷,실내복,취침용 드레스 등 ○ 런닝셔츠,메리야스,속옷,팬티 등 여자내의 ○ 브래지어,브라슬립,올인원,거들,코르셋,웨이스트니퍼,히프패드 등 여성용 보정의류 × 팬티스타킹 ⇒ 양말 및 스타킹(2205)	
2130	아동용 내의	SD	◆ 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내의 ○ 영아용 배냇저고리, 영아유용 내의 ○ 영유아(만3세 미만)용 내복 포함 여아용내의	
2205-2225	기타의복		◆ 양말,모자,넥타이,장갑 등의 기타 의복류 ㉮남자용,여자용,아동용 구분 없음 × 운동 또는 무용 등에 전용하는 기타의복 ⇒ 운동복(2055)	
2205	양말 및 스타킹	SD	◆ 발을 보호하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해 발에 신는 것 ○ 양말,긴양말 등 ○ 버선,타이즈,덧버선 등 ○ 긴스타킹,짧은 스타킹,아동용 스타킹 포함	
2210	모자	SD	◆ 추위나 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거나 장식적 또는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서 머리에 쓰는 것 ㉮재료 구분없음 ○ 중절모,베레모 ○ 스포츠용 모자,안전모,방한모 등 ○ 싸이클,인라인,오토바이,경주용 자동차,ATV용 등 헬 ⇒ 오락문화와 교통 등 구분 곤란하여 모자에 분류 × 태권도 헤드기어 등 운동 전용품 ⇒ 운동용품(5240) × 삼푸모자 ⇒ 기타이미용용품(8090)	
2215	넥타이	SD	◆ 목 또는 깃 둘레에 감고 여분을 앞부분에 늘어 뜨리는 띠나 끈 모양의 장식품 ○ 넥타이 ○ 나비 넥타이 × 넥타이 핀 ⇒ 장신구(813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2220	실류	SD	◆ 재봉실, 털실 등 실류 ○ 뜨개실, 재봉실, 털실 ○ 명주실, 나일론실 등 × 자수용실, 수예용실, 십자수실 등 ⇒ 게임 및 취미용품 (5220)	
2225	기타의복관련품	S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의복관련품 ○ 면장갑, 가죽장갑, 털장갑 등 ○ 목도리, 머플러, 스카프, 쇼울, 가운 등 ○ 허리띠, 벨트, 손수건, 스카프 등 ○ 토시, 복대, 앞치마 등 ○ 의복지퍼, 단추, 동정, 똑딱단추 등 기타의복관련품 × 바늘, 뜨개바늘, 골무 ⇒ 기타가사소모품 (3890) × 넥타이 핀 ⇒ 장신구 (8130) × 고무장갑 ⇒ 세탁 · 청소용구 (3820) × 주방용 석면장갑 ⇒ 기타주방용품 (3690)	
2230-2240	의복관련서비스		◆ 의복수선, 세탁, 리모델링, 맞춤 등 의복관련 서비스	
2230	의복수선료	S	◆ 의복의 재봉 또는 수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의복의 재봉 및 수선료 ○ 의복 리모델링 비용	
2235	의복세탁료	S	◆ 의복의 세탁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세탁, 건조, 다림질, 염색, 얼룩제거, 방수처리, 풀먹임 등 ○ 드라이크리닝, 빨래방세탁료 등 ○ 의복염색료, 다림질비용 등 × 카페트 등의 세탁 ⇒ 실내장식관련서비스 (3130)	
2240	기타의복관련 서비스	S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의복관련서비스 ○ 의복제작 수공(양장 및 뜨개질 포함) ○ 의복에 해당되는 복장에 대한 대여서비스 ○ 한복, 드레스, 연미복, 정장, 장례관련 의복, 졸업식의복, 운동복 등 각종 의복대여 ○ 기타 의복관련서비스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2245-2260	신발		◆ 발의 보호를 위하여 발의 가장 바깥 부분에 착용하는	
2245	아동화	SD	◆ 영유아부터 아동(12세 미만,초등학생)이 착용하기 위해 구입한 신발 ㉫ 영아(1세미만)용신발도 포함 ○ 아동용 구두,샌들,슈즈,장화,운동화 등 ○ 영아(1세미만)용신발 등	
2250	구두	SD	◆ 주로 가죽 등을 이용하여 바닥 및 발등 덮도록 만든 서양식 신발 ㉫ 신발갈창,신발끈,신발부분품 등 ○ 신사화,숙녀화,부츠 등	
2255	운동화	SD	◆ 실내 및 야외운동을 목적으로 구입한 특수목적의 신발이 아닌 일상적인 성인운동화 ㉫ 신발갈창,신발끈,신발부분품 등 ○ 일상 레저화,운동화,테니스화,농구화 등 ○ 스니커즈,마라톤화 등 ○ 힐리스(바퀴달린운동화) 등 × 스키화,(인라인,롤러 등)스케이트,골프화,등산화 등 징이나 바퀴 등이 부착되어 용도가 제한된 특수신발 ⇒ 운동용품(5240)	
2260	기타신발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신발 및 신발부분품으로 운동용 신발이라하더라도 사용목적이 특정된 신발 ○ 무용화,검도화 등 실내운동 전용 신발(운동전용 덧 ○ 샌들,슬리퍼 ○ 예비군화,안전화 등 ○ 고무신,장화,털신,짚신,갓신 등 기타신발 × 정형외과용 신발(다리 석고환자용) ⇒ 보건의료 소모품(4060) × 스키화,(인라인,롤러 등)스케이트 일반적 용도로 착용불가한 오락용 특수신발 ⇒ 운동용품(5240)	
2265-2265	신발서비스		◆ 의복수선,세탁,리모델링,맞춤 등 의복관련 서비스	
2265	신발관련서비스	S	◆ 신발의 수선,재봉 또는 세탁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신발수선료 ○ 구두닦는 샴,신발세탁료 ○ 신발리모델링,신발임차료 등 × 스키화,(인라인)스케이트 등의 임차 ⇒ 캠핑 및 운동용품서비스(525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2510-2990	04. 주거 및 수도광열			
2510-2530	실제주거비		◆ 주거시설을 이용하여 주거서비스를 생산하고, 주거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 공급, 폐수·쓰레기 처리 등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 주거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 ㉮주된 주거 및 보조 주거분 포함(별장) ㉮사업경비가 있는 임대주택에 관계된 비용은 제외 × 주택 및 토지의 구입 또는 주택의 거주면적을 증가시키는 신축 및 증개축 ⇒ 부동산 구입(9550) × 주택관련대출상환 ⇒ 부동산대출상환(9610)	
2510	월세	S	◆ 토지사용, 주거 점유, 정착물 및 열, 배관, 전등 등을 위한 설비에 대한 임차료와 가구를 갖춘 주택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 가구에서 임대인에게 실제 지급하는 ㉮민영주택,공영주택,사택 구분없음 ○ 보증부월세 또는 사글세를 월세 ○ 평상시 비어있는 별장을 위한 월세 × 임차사례금(중개수수료) ⇒ 기타부동산 수수료 × 주택 및 토지의 구입 또는 주택의 거주면적을 증가시키는 신축 및 증개축 ⇒ 부동산 구입(9550) × 점유형태에서 전세 또는 보증금 ⇒ 보증금 제공	
2520	전세금평가액	S	◆ 전세금에 대한 월별 평가액 = 전세금* 금리	
2530	보증금평가액	S	◆ 보증금에 대한 평가액 = 보증금* 금리	
2600-2600	의제주거비		◆ 자가,무상주택 등에 대하여 주변 주택임차료로 평가한 금액으로 월세로 지불되는 금액은 실제주거비에	
2600	자가보유비	S	◆ 자가를 임차한 경우 시설 및 노후정도가 유사한 주거를 빌린다고 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서 주거서비스 생산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2720-2760	주택유지 및 수선		= 자가월세평가액-(벽지 및 바닥재,기타주택유지 및 수선재,설비·수리서비스) - 경상재산세 - 주택 ※ 대상가구 소득처리 ○ 자가 ⇒ 사업소득 처리 ○ 사택(직장제공분) ⇒ 근로소득으로도 포함시킴 ◆ 주거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주택 등을 직접 수선한다는 의미 : 이를 가구원이 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자를 고용하여 서비스만 받는 경우까지 포함	
2720	벽지	SD	◆ 주거를 직접 수선할 목적으로 구입한 벽지에 대한 지 ○ 초배지,벽지,섬유벽지 ○ 창호지 × 문풍지 ⇒ 기타주택유지 및 수선재(2740) × 벽지를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설비·수리서비스(2750)	
2730	바닥재	SD	◆ 주거를 직접 수선할 목적으로 구입한 바닥재에 대한 ○ 원목장판,비닐장판 등 ○ 타일,대리석재 등 기타바닥재 × 바닥과 분리되는 카페트,양탄자,돛자리 등 ⇒ 카페트(3110) × 바닥을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설비·수리서비스(2750)	
2740	기타주택유지 및 수선재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자체수선 또는 위탁수선을 위해 별도로 구입한 재료 ○ 변기,세면기,욕조,수건 및 화장지 걸이,수건걸이 등 ○ 칼라시트,유리창스티커,벽지용 풀 등 ○ 목재,합판,유리,실리콘 등 ○ 시멘트,벽돌,모래,자갈,타일 등 ○ 페인트,니스,락카,붓(페인트용),방수제 등 ○ 창문,창문틀,알미늄샷시,방충망,방범창 등 ○ 수도꼭지,파이프,연결관,배관테이프 등 배관품 ○ 전선관,수도관,플러그,콘센트,전선,스위치 등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2750	설비 · 수리 서비스	S	○ 못,사포,양면테이프,절연테이프,철사 등 기타수선재 ○ 가스배관,가정용금속(정원(庭園)표식 체인 등) 제품 구입 ○ 담의 창살,말뚝 등 제품 구입 × 망치,톱 등 주로 집공사에 사용하는 기구 ⇒ 기타소형공구 및 가사용품(3790) × 빗자루,청소용 솔,먼지떨이 등 ⇒ 세탁 · 청소용구(3820) ◆ 주거용 주택,정원,담장,상하수도,난방 등의 유지 및 수선을 위한 교체,신규,수리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 ₩ 수선재료를 주택설비 · 수선서비스와 일괄구매한 경우에도 포함하여 조사 ○ 전기공사,가스공사,방수공사,도배공사,목공공사 등 공사비 ○ 보일러,에어컨,불박이장,현관보조키 등 제품 구입 이외에 설치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설치비 ○ 각종 가정용 설비시설에 대한 수리비용 ○ 벽이나 보 등을 변경하지않는 리모델링 비용 ○ 정원,담장,보도석,벽난로 등 유지수선 비용 ○ 가스배관,가정용금속 설치비용 ○ 담의 창살,말뚝,휴지걸이,수건걸이 설치서비스 ※ 주거면적을 확장하거나,벽,보,기둥 등을 변경하는 등 주거형태를 현저하게 바꾸는 공사를 하는 경우(대수선) ⇒ 부동산 구입(9550)	
2760	세놓는 주택 수선	S	◆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임대인이 주택 및 건물을 수선하는데 지출하는 비용 ₩ 수선재료 및 수선서비스를 포함하여 조사 ○ 전기공사,가스공사,방수공사,도배공사,목공공사 등 공사비 ○ 각종 가정용 설비시설에 대한 수리비용 ○ 벽이나 보 등을 변경하지 않는 리모델링 비용 ○ 기타 세놓는 주택을 수선하기 위해 구입한 제품 × 주거면적을 확장하거나,벽,보,기둥 등을 변경하는 등 주거형태를 현저하게 바꾸는 공사를 하는 경우(대수선) ⇒ 부동산 구입(955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2810-2830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 상·하수도, 폐기물 및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출	
2810	상수도료	S	◆ 물공급에 대한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한 비용 ㉠ 공동주택관리비에 포함된 경우에는 상하수도요금 은 분리 ㉡ 물이용부담금 포함 ○ 상수도요금, 공동수도료 ○ 중앙 및 지역난방의 급탕비 등	
2820	하수도료	S	◆ 더러운 물을 배출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 하수도료	
2830	쓰레기처리	S	◆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 ○ 쓰레기봉투, 폐기물봉투 및 스티커 구입 ○ 폐품수거료, 음식물처리비 ○ 정화조청소비, 유료화장실이용료 등 기타청소료 × 해충퇴치 ⇒ 기타주거서비스(2890)	
2860-2890	기타주거관련 서비스		◆ 공동주택관리 및 주거를 위한 공동비용 등 주거관련 서비스	
2860	공동주택관리비	S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드는 일반관리 ㉠ 전기료 등 이용에 따라 부과하는 항목을 제외한 공 동주택관리비에 청구된 모든 금액을 조사 ○ 아파트일반관리비, 아파트정원관리비 등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징수·적립하는 것 아파트수선충당금 ○ 안전검사비, 회계감사비 등 기타관리비 × 아파트관리비중에서 화재보험료 ⇒ 화재보험(8320) 상수도료, 하수도료 ⇒ 상수도료 전기료 ⇒ 전기료(2910) 중앙난방비 ⇒ 공동주택난방비(2970)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소비지출이 아닌 저축이지만 이를 지출하는 시점에서 가구에서 별도 의 지출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매월 소비지출되는 것	
2890	기타주거서비스	S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주거관련 서비스 ○ 정원관리, 사설 보안경비 업체비용 등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2910-2990	연료비		○ 마을 등 공동정원관리,공동공간청소료,공용물탱크 청소료 ○ 소독비,가스누출점검비 ○ 가스안전점검비,해충퇴치비 등 기타주거서비스 ○ 광촉매,산소촉매 등 새집증후군 대비 × 공동주택관리비에 포함된 청구내용 ⇒ 공동주택관리비(2860) × 대출시 담보설정비 채권할인료 ⇒ 금융수수료(8400) - 기타세금(등록세 등) ⇒ 부동산취득 관련세 - 수입인지 및 증지 ⇒ 기타비경상세금(9100) ◆ 조명,냉난방 및 취사 등 일상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관련 비용 ℥ 차량용 연료는 제외	
2910	전기료	ND	◆ 가구에서 조명,냉난방,동력 등을 위하여 소비한 전기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 전기료 ○ 개인에게 할당되는 공동전기료 등	
2920	도시가스	ND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간이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LNG) 구입금액 ○ 도시가스(LNG) × 도시가스설치비,가스연결비 ⇒ 설비·수리서비스(2750)	
2930	L P G연료	ND	◆ 가정용 LPG연료 구입금액 ○ LPG(취사 및 냉난방용) × LPG통,LPG배관 등 ⇒ 기타소형공구 및 가사용품(3790) × 차량용LPG ⇒ LPG(4725)	
2940	등유	ND	◆ 광열수도용 등유 구입금액 ○ 등유,방카C유 등 × 차량용 가솔린 ⇒ 휘발유(4715)	
2950	경유연료	ND	◆ 광열수도용 경유 구입금액 ○ 경유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2960	연탄	ND	× 차량용 경유 ⇒ 경유(4720) ◆ 고체화석연료로 석탄을 가공한 연료 ○ 연탄, 번개탄 등	
2970	공동주택난방비	ND	◆ LNG, LPG, 등유 등 개별난방을 사용하는 경우이외에 중앙난방 및 지역난방으로부터 난방을 위해 공급받는 온수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중앙난방비 ○ 지역난방으로부터 난방을 위해 구입한 열 및 증기 등 × 급탕비 ⇒ 상수도료(2810)	
2990	기타연료비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광열비 ○ 학교에서 학생이 부담하는 냉·난방비 ○ 목탄, 장작, 일반적 용도의 숯(연료용) 등 ○ 버너용알콜, 고체알콜연료 등 ○ 부탄가스 등 × 식재료 숯 ⇒ 기타미분류식품(1695) × 관상숯 ⇒ 원예용품(5260)	
3005-3990 0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005-3099	가구 및 조명		◆ 일반가구 및 가사(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재봉 등)에 필요한 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 ◆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출 ㉮ 중고품은 종류를 불문하고 구분하여 "중고가구"로 분류	
3005	장롱	D	◆ 주로 이불 및 의류의 수납에 사용되며 서랍이나 선반을 갖추고 있는 가구 ㉮ 조립식 장롱도 포함 ○ 장롱, 이불장, 옷장, 서랍장 등 ○ 맞춤식 장롱 포함 × 비키니옷장 ⇒ 기타가구(3090)	
3010	화장대	D	◆ 거울과 서랍을 갖추어서 화장도구 등을 넣을 수 있게 만든 가구 및 가구세트 ○ 화장대 ○ 화장대 의자, 거울 등 포함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3015	침대	D	◆ 수면을 위해 침상 위에 매트리스 등을 이용하는 가구 ○ 침대(2층침대 포함),공기주입침대 등 ○ 매트리스 등 부수적 제품 ○ 조립식 침대 포함	
3020	장식장	D	◆ 책,식기,접시,쟁반,기타잡품 등을 진열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는 가구로 선반이나 서랍을 갖춘 가구 ○ 장식장,책장 ○ 문갑,캐비넷 ○ 거실장(TV받침),오디오장 등 × 부착식 거울 ⇒ 기타실내장식품(3120)	
3025	소파	D	◆ 주로 거실(응접실)에서 사용하는 일반가구 ○ 소파,스툴,소파용 쿠션 ○ 베드벤치 ○ 거실용 탁자 등 × 일반 천쿠션 ⇒ 침구류(3210)	
3030	책상	D	◆ 학생들이 집중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가구 및 가구세 ○ 일반책상,책상 및 책꽂이 일체형 ○ 책꽂이 ○ 제도책상(비업무용) 등 ○ PC책상 등	
3035	의자	D	◆ 소파,식탁의자,화장대 및 낚시용 의자를 제외한 일반 용도로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의자로 타 항목에 특정 되지 않는 의자 ㄹ 단품 및 부품도 포함 ○ 학습 의자, 접이식 의자 등 ○ 야외벤치, 흔들의자, 안락의자 × 식탁용 의자 ⇒ 식탁 및 식탁의자(3040) × 낚시용 의자 ⇒ 등산낚시사냥용품(5230)	
3040	식탁 및 식탁 의자	D	◆ 식사나 간편한 차를 위한 가구 ○ 식탁 및 식탁용 의자 ○ 티테이블 및 의자 세트 ○ 플라스틱 제품 포함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3045	밥상	D	◆ 주로 부엌(식당)에서 사용하는 일반가구중 밥상 - ℓ 단품 및 부품도 포함 ○ 교자상,자개상 ○ 찻상,소반 등 × 학생용 공부책상 ⇒ 책상(3030)	
3050	조명기구	D	◆ 조명용 기구 ○ 형광등(전구제외),천정조명,벽부등,고정형 전등 등 ○ 스탠드 및 장식용 등 제품 ○ 조명과 공기순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성조명기 × 후레쉬 ⇒ 기타가정용기기 및 가전(3420) × 형광등,전구 ⇒ 전구(3830)	
3090	기타가구	D	◆ 위에서 분류되지 않는 기성가구,주문제작 및 조립식 ○ 유아침대,요람,아기의자,아기책상,유아용 울 등 유아 ○ 선반(앵글포함),설치옷걸이(행거),빨래건조대 등 ○ 부착형 사다리(아래층과 윗층연결) ○ 신발장,선반,야외가구,파티션(방구분),플라스틱정리함 등 ○ 학생사물함,비전기식 식기건조대,싱크대,쌀통,찬장 ○ 별도 구입한 식탁용 및 기타가구용 유리 등 × 종이옷상자 ⇒ 기타가사소모품(3890) × 사무용으로 구입한 책상,의자 등 집기는 제외(대상) × 의료용소파 ⇒ 기타보건의료기구(4090) × 에어매트리스 ⇒ 운동용품(5240) × 사물함 이용료 ⇒ 화물운송 및 보관(4890)	
3099	중고가구	D	◆ 신제품이 아닌 타인이 이용하던 가구를 구입한 비용 ○ 장롱,화장대,침대,장식장 ○ 소파,책상,의자 ○ 식탁 및 식탁의자 ○ 밥상 등 기타가구	
3110-3120	실내장식		◆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출. 모형이 아닌 실제로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제품	
3110	카펫	D	◆ 바닥 위에 덮개로 사용되는 제품 ○ 왕골,대자리,오크자리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3120	기타실내장식품	D	○ 양탄자,카펫,호피 등 바닥용품 ○ 발담기 깔개,유아소음방지깔개 및 현관매트 ○ 소음방지 저감매트 등 기타바닥재 × 가죽등 소파세트 쿠션 ⇒ 소파(3025) × 기타쿠션 ⇒ 기타가정용 섬유(3280) ◆ 기타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실내장식품 ○ 동양화,서양화,조각,부조,서예,족자,병풍 등(가품) ○ 수족관동물(금붕어,거북 등)이 없는 수족관 ○ 꽃병,조각,공예품(장식용),석고상 등 ○ 액자,거울,복조리 등 ○ 돌,회갑 등을 위한 일회성 실내장식품 구입 ○ 크리스마스 트리 등 기타실내장식품 ○ 기타실내장식을 위한 상품 구입비 ○ 미술실습용 석고상 포함 × 가치저장을 위한 고가의 그림,골동품 등에 대한 구입은 자산으로 해당되지 않음 ⇒ 기타자산형태의 변동 × 수족관동물(금붕어,거북 등)이 있는 수족관 ⇒ 애완동물관련품(5270) × 휴대용손거울 ⇒ 기타 개인용품(8190) × 자동차용 실내장식품 ⇒ 부품 및 관련용품(4705)	
3130-3130	가구 · 조명 및 장식서비스		◆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출. 모형이 아닌 실제로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제품	
3130	실내장식관련 서비스	S	◆ 가구수선,실내장식관련서비스 ○ 가구수선,이동 및 수평 등을 위한 서비스 비용 ○ 소파천갈이,가죽도색 등 관련서비스 ○ 돌 및 기타잔치를 위한 풍선장식 ○ 크리스마스트리 등의 설치비 ○ 베란다정원설치비 등 × 해충퇴치비 ⇒ 기타주거서비스(2890)	
3210-3290	가정용 섬유		◆ 가구에서 이용되는 침구,수건,커튼 등 섬유제품 및 관련서비스	
3210	침구류	SD	◆ 이불,요 등 취침시 이용하는 제품 및 재료 ○ 이불,요,담요(모포),해먹,모기장 등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 이불커버,모포커버,요덮개 등 ○ 베개,베개잇,옥돌베개 등 ○ 면화솜,화학솜 등 ○ 침대커버,침대시트 등 ○ 유아용 침구류 등 ○ 기타침구류 및 바닥깔요 등 × 전기를 이용하는 옥매트,전기담요 ⇒ 기타가정용기 기 및 가전(3420) × 침낭,야외용돛자리 ⇒ 등산납시사냥용품(5230) × 바닥에 접착되어 시공하는 장판 및 바닥재 ⇒ 바닥재 (2730)	
3220	수건	SD	◆ 얼굴이나 몸에 묻은 수분이나 땀을 닦는 데 쓰는 것 ㉡ 손수건은 제외 ○ 미용수건,목욕수건 등 × 때수건 ⇒ 기타이미용용품(8090) × 손수건 ⇒ 기타의복관련품(2225)	
3230	커튼	SD	◆ 집안의 창에 치거나 칸막이로서도 사용되는 것 ○ 커튼,버티컬,발 등 커튼류 ○ 셰이드 등 ○ 스크린,접이식파티션,블라인드	
3280	기타가정용 섬유	SD	◆ 기타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직물 및 직물제품 ○ 식탁보,냅킨,책상보,전화받침대(직물제품),선풍기 보 관보,옷보관보 등 각종커버 ○ 유아용품(천기저귀,천기저귀용 커버·띠,속싸개 등) 포대기,겉싸개,소파와 별개의 섬유쿠션,방석 등 ○ 기타 위에 분류되지않는 직물제품	
3290	가정용섬유관련 서비스	S	◆ 위의 항목에 대한 수선,세탁 등 관련 서비스 ○ 커튼,수건,침구류 세탁 ○ 이불솜타는 서비스 ○ 포대기,겉싸개 등 가정용 섬유의 세탁,수선,대여 등 관련 서비스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3305-3399	가전 및 가정용 기기		◆ 가사(취사, 냉·난방, 세탁, 청소, 재봉 등)에 필요한 내구재 ㉠ 부품 및 부분품도 포함	
3305	전기밥솥	D	◆ 주로 밥을 짓거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 전기 ○ 전기밥솥, 전기보온밥통 등 ○ 보온겸용밥솥 ×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압력솥 ⇒ 솥(3630)	
3310	가스·전자 레인지	D	◆ LNG, LPG 등 취사용 연료를 이용하여 식료품에 열을 가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기구 ㉠ LPG통, LPG배관은 제외 ○ 가스레인지, 가스오븐 ○ 전자레인지, 전자오븐레인지 등 ○ 간이가스레인지 ○ 가스레인지부품: 가스레인지에 붙어있는 가스차단기, 밸브 등 × LPG통, LPG배관 등 ⇒ 기타소형공구 및 가사용품(3790) × 야외용 부탄가스 ⇒ 기타연료(4745) × 가스설치비 ⇒ 설비·수리서비스(2750)	
3315	일반냉장고	D	◆ 식품 등의 저온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기기 ㉠ 냉동고도 포함 ○ 냉장고, 냉동고 ○ 쌀냉장고 ○ 냉장고용 전용선반, 냉매 등 냉장고부품 포함 × 화장품냉장고 ⇒ 이미용기기(8020)	
3320	김치냉장고	D	◆ 주로 김치의 저온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냉장고 ○ 김치냉장고 ○ 김치냉장고부품 × 일반냉장고, 냉동고, 기타냉장고 ⇒ 일반냉장고	
3325	정수기	D	◆ 물을 정수하는 가정용기기 ㉠ 연수기 포함 ㉠ 수도꼭지형 포함 ○ 정수기, 연수기(수도꼭지형) 등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3330	에어컨 및 선풍기	D	○ 정수기맥반석,필터(정수기용) 등 정수기부품 × 정수기렌탈 및 필터교체서비스 ⇒ 가정용기기 및 가 전서비스(3510) ◆ 실내공기를 시원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가정용기 기 ℥냉방,난방 및 공기청정기능을 모두 가진 것도 포함 ○ 에어컨, 에어컨부품 및 냉매가스충전 ○ 선풍기,얼음냉풍기 및 관련부품 × 에어컨 설치비 ⇒ 기타가사서비스(3990) × 에어컨 및 선풍기 커버 ⇒ 기타가정용 섬유(3280)	
3335	난로 및 온풍기	D	◆ 가정용 난방기구 ℥연료 구분없음 ○ 온풍기, 이동식 라디에이터 ○ 히터(가스,팬) ○ 난로(석유,전기) × 냉방 및 난방기능을 모두 가진 것 ⇒ 에어컨 및 선풍 기(3330)	
3340	공기청정기 및 가습기	D	◆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가정 용기기 ℥물레방아,전등 등 각종 장식을 갖춘 가습기 포함 ○ 공기청정기,산소기,이온배출기 등 ○ 가열식 및 초음파 가습기 × 냉방 및 공기정화기능을 모두 가진 것 ⇒ 에어컨 및 선풍기(3330)	
3345	세탁기	D	◆ 기계의 힘을 이용하여 의류 세탁을 하는 가정용기기 ○ 각종 세탁기 ○ 의류용 건조기 ○ 탈수기 ○ 전용연결호스 등 기타 세탁기부품	
3350	식기세척기	D	◆ 식기를 세척 또는 건조하는 가정용 기기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3355	진공청소기	D	○ 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 등 × 식기건조대 ⇒ 기타가구(3090) ◆ 전동,전기 등으로 작동되는 다리미 ○ 진공청소기,로봇청소기,스팀청소기 등 ○ 침대청소기,충전식 소형청소기 등 ○ 청소기먼지통,필터 등 청소기부품 × 펄프청소기,밀대,유리창 청소기기 등 무동력청소기 ⇒ 세탁 · 청소용구(3820)	
3360	전기다리미	D	◆ 전동,전기 등으로 작동되는 청소기일체 ○ 전기다리미,스팀다리미 등	
3365	기타가정용기기 및 가전	D	◆ 기타 위에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 기기 ○ 녹즙기,커피메이커,믹서,전동음식물쓰레기건조기,피 ○ 재봉틀,금고,요구르트 및 청국장제조기 등 ○ 해충퇴치기,훈증기기 등 ○ 전기담요,전기방석,전기장판,옥매트,스토브 등 ○ 충전기,어댑터 등 ○ 유축기,후레쉬,자외선 칫솔소독기 등 ○ 전기쿠커,전기토스터(제빵기),전기후라이팬 등 조리 ○ 믹서,쥬스믹서기,녹즙기 등 ○ 커피메이커,커피분쇄기 ○ 음식커트기,전기약탕기,커피포트 등 ○ 비데(온수세정변기) 등 기타가정용기기 ○ 계량기(전기,가스),전기차단기 등 × 망치,톱 등 일반 가정용공구 ⇒ 기타소형공구 및 가 사용품(3790) × 해충약,훈증기약(모기향) ⇒ 살충약품 및 용품 × 낫,삽,부삽(모종삽),화초용가위 등 ⇒ 기타소형공구 및 가사용품(3790)	
3399	중고가전 및 가정용기기	D	◆ 위에 포함되는 제품중 중고 가정용 기기 및 가전제품 에 대한 지출 ○ 중고 전기밥솥 ~ 청소기 및 다리미 등의 구입에 지출 한 비용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3510-3510	가전관련서비스		◆ 대형 및 소형가전의 수리,임차 및 점검관련 서비스	
3510	가정용기기 및 가전서비스	S	◆ 가정용기기의 수리·설치·관리 및 렌탈서비스 ○ 가정용기기수리비 가사용품수리비 ○ 정수기,비데 등의 렌탈비 등 가사용품임차료 ○ 정수기,비데 등 필터교환 및 점검 서비스 ○ 에어컨설치비 등 가사용품설치비 ○ 기타 가정용기기의 수선·유지·설치·관리 및 렌탈 서비스 × 해충퇴치 ⇒ 기타주거서비스(2890)	
3610-3690	주방용품		◆ 주로 취사에 사용되는 주방용 준내구재 ㉠ 재질에 상관없음 ㉡ 전기 및 전동제품은 제외	
3610	식기류	SD	◆ 주방에서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공기,대접,접시 등 ㉠ 유리,스테인리스,자기,플라스틱 등 모든 재질 ○ 밥그릇, 국그릇, 냉면그릇(공기,대접 등) ○ 반찬통(기능성 제품 포함) ○ 젓병,젓꼭지,분유계량보관통 등 유아용식기 × 코펠 등 등산용품 ⇒ 등산납시사냥용품(5230) × 대형식품보관용 용기 ⇒ 기타주방용품(3690) × 1회용식기 ⇒ 기타가사소모품(3890) × 제기 ⇒ 혼례 및 장례례용품(8160)	
3620	컵 및 다기	SD	◆ 차·주류·음료를 담기 위한 그릇 ○ 머그,스텐,유리컵,잔,글라스,요리계량컵 등 ○ 거름망이 포함된 찻잔,유아용 계량컵,빨대컵 ○ 컵받침	
3630	술	SD	◆ 주로 밥을 짓거나 물을 끓이는 데 사용되는 취사용 ○ 가마솥,압력솥,돌솥,도자기솥 등 × 전기압력밥솥 ⇒ 전기밥솥(3305) × 튀김솥 ⇒ 냄비(365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3640	후라이팬	SD	◆ 기름을 두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음식을 지지거나 부치는 온도가 높지 않은 넓적한 냄비 ○ 후라이팬 × 전기후라이팬 ⇒ 기타가정용기기 및 가전(3420)	
3650	냄비	SD	◆ 각종 냄비 ○ 튀김냄비, 찜그릇(찜통), 뚝배기 등 ○ 냄비뚜껑, 냄비꼭지, 손잡이 등 부분품	
3660	칼 및 수저류	SD	◆ 포크, 튀김젓가락, 티스푼 등 ○ 식칼, 과일칼, 채칼, 양식용 나이프 등 칼류 ○ 숟가락, 젓가락, 포크 ○ 계량스푼, 유아용 수저, 요술젓가락 ○ 티스푼, 튀김 젓가락 등	
3690	기타주방용품	SD	◆ 별도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식기주방용품 ○ 대형김치통, 대형유리밀폐용기(유자차, 과일주용 등), 대형 플라스틱통 등 저장용기 ○ 김치독(개량), 항아리, 항아리뚜껑 등 항아리류 ○ 가위(주방용), 냄비집게, 석면장갑, 석쇠(구이판), 마늘까개, 절구, 강판 등 주방용집기류 - 주전자, 물병, 보온병, 도시락, 바가지, 만능용기류 등 : 주방용기류 ○ 젓병브러쉬, 젓병집게 등 유아용품 ○ 이쑤시개통, 수저통, 양념통, 간장통 등 식탁용품류 ○ 주걱, 국자, 뒤집게 ○ 요리집게, 국물떨치통 ○ 계란절단기, 김말이, 마늘다지기, 병따개, 김술, 광주리 등 기타주방용품 ○ 냄비용 받침대, 조리, 찜틀, 석쇠, 불고기판, 도마, 빙수기, 쟁반 등	
3710-3730	가정용공구 및 기타		◆ 세탁, 청소, 재봉 등 가사에 필요한 준내구재	
3710	가정용 전동 공구	D	◆ 동력을 이용한 가정용 공구 ○ 전기드릴, 전기톱, 연마기 등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3720	설비관련 기구	D	○ 잔디깎기(예초기),정원트랙터,잔디깎기,경운기 ○ 기타 펌프 및 모터를 이용하는 기기 ○ 위의 장비에 대한 수리 ◆ 주택설비를 위한 가정용 준내구재 ○ 보일러,순간온수기 ○ 사다리 및 이동계단,문부분품(경첩,손잡이) ○ 라디에이터,수도절수기,가스배출기,환풍기 ○ 인터폰,초인종,소화기,안강기 등 × 이동식 라디에이터 ⇒ 난로 및 온풍기(3335)	
3730	건전지	ND	◆ 각종 전자제품의 일반 건전지 ㉡ 동근모양,동전모양,각진모양 등 모양과 관련없음 ○ 건전지 ○ 충전지 × 휴대폰배터리 ⇒ 이동전화기기 등(4930) × 자동차배터리 ⇒ 부품 및 관련용품(4705) × MP3,카메라 등 충전식 영구내장 배터리 ⇒ 해당물품(MP3,카메라)으로 분류	
3790	기타소형공구 및 가사용품	SD	◆ 가정용 공구 및 위에 분류되지 않는 가정용 비전동 준내구재 용품 ○ 톱,드라이버,망치,스패너,톱,다기능칼 등 가정용공구 ○ 모종삽,화초용가위,곡괭이,낫,삽,칼같이 등 원예기구 ○ 모든 용도의 열쇠 및 자물쇠(컴퓨터,자전거,자동차,오토바이용 및 전자자물쇠 포함) 등 ○ 분무기,가정용 저울,일반온도계 및 습도계 등 ○ LPG통,커튼레일 등 가스관련품 ○ 연탄집게,멀티탭 ○ 기타 토치,손전등 등 비전동공구 및 가정용품 × 전기드릴,전기톱 등 ⇒ 가정용 전동공구(3710) × 전구,형광등 전구 ⇒ 전구(3830)	
3810-3890	가사소모품		◆ 가사(취사,냉난방,세탁,청소,재봉 등)에 필요한 소모	
3810	세탁용 세제	ND	◆ 섬유제품의 때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한 것 ㉡ 분말,고체,칠,액체 구분없음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3820	세탁 · 청소용구	SD	○ 세탁비누,가루비누 ○ 액체비누,세제 등 ○ 표백제,연화제,정전기방지제 등 × 부엌용 및 청소용세제 ⇒ 주방 및 청소용세제(3840) × 방향제 및 냄새제거제 ⇒ 기타가사소모품(3890) × 화장비누,세수 ⇒ 세면비누(8035) × 샴푸,린스 또는 혼합된 상품 ⇒ 샴푸 및 린스(8040) ◆ 주로 세탁,청소 등 가사에 필요한 준내구재 ○ 대야,비누곽,세탁건조대(이동용),빨래집게,빨래판,빨래줄,세탁볼,세탁망,빨래바구니,장바구니 등 ○ 빗자루,쓰레받기,양동이,쓰레기통,걸레,옷솔,구두솔,청소용솔,브러쉬,흙집제거기 등 ○ 펄프 청소기,밀대,유리창 청소기 등 ○ 고무장갑,수세미,행주,빨래삶는 솔 등	
3830	전구	ND	◆ 전구 ○ 형광등 전구 ○ 백열전구,삼파장 전구 등 × 불박이조명기구(상들리에 등),형광등기구(스텐드 등) ⇒ 조명기구(3050) × 차량용 전구 ⇒ 부품 및 관련용품(4705)	
3840	주방 및 청소용 세제	ND	◆ 식기,식품 및 주거용품 등의 오물을 씻어내기 위한 것 ㉠분말,고체,액체,젤 등 형태 구분없음 ㉠청소용세제도 포함 ○ 식기세제 ○ 락스,욕조용 변기용 세제 등 청소세제 × 세탁전용 세제 ⇒ 세탁용 세제(3810) × 방향제,탈취제 ⇒ 기타가사소모품(3890)	
3850	살충약품 및 용품	ND	◆ 섬유,음식 및 주거 등을 쾌적한 생활을 위한 해충,해로운 동물 및 잡초 등을 제거 ·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 및 용품 ○ 살충제,살균제,제초제,해충퇴치,소독용품비 등 ○ 모기약,좀약,쌀벌레약,바퀴벌레약,나프탈렌,머릿니약 ○ 쥐약,뱀 등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3890	기타가사소모품	ND	× 해충퇴치비 ⇒ 기타주거서비스(2890) × 해충퇴치기,훈증기기 등 ⇒ 기타가정용기기 및 가전(3420) ◆ 기타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가사소모품 ○ 쿠키호일,랩,은박접시 등 ○ 방향제,냄새제거제,화장실세균제거제,방습제 등 ○ 광택제,왁스,구두약,옷감염색약 등 ○ 이쑤시개,종이컵,컵홀더,클리너 등 ○ 종이백,비닐봉지,접착제(본드),양초,액정보호필름,일반테이프,먼지제거용테이프 등 ○ 반질고리,바늘,가위,옷핀 등 재봉관련용품 ○ 옷걸이,옷상자,티슈통,쇼핑주머니,신문꽂이,재떨이 ○ 화장실 발판,목욕의자,샤워커튼 등 ○ 아기변기,유아용코흡입기 등 ○ 카트,다리미판,먼지봉투 등 ○ 성냥,초,램프심지,메틸알콜,안전핀,나사,너트 및 볼트,각종 윤활제 등 ○ 컵 및 봉투 구입비용(보증금 포함) ○ 아이스박스,드라이아이스,비식용 얼음 ※ 일반테이프는 박스포장 등을 위한 테이프임 × 각종 열쇠,자물쇠 ⇒ 기타소형공구 및 가사용품 × 발,롤 스크린 ⇒ 커튼(3230) × 체온계,혈압계 ⇒ 기타보건의료기구(4090) × 투명테이프 ⇒ 기타문구류(5455) × 자동차전용 방향제 ⇒ 부품 및 관련용품(4705) × 일회용 라이터 ⇒ 기타 개인용품(8190)	
3910-3990	가사서비스		◆ 가사(취사,냉난방,세탁,청소,재봉 등)서비스에 관련된 지출	
3910	식품관련서비스	S	◆ 사업자나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식품관련 서비스 ○ 고추가루 빵은 삶,기름잔 삶,떡방아 삶 등 식료품가공 ○ 포도즙,배즙,개소주 등 가공비용 ※ 제사상,폐백음식 등 대리(재료를 가구에서 제공) 포 × 출장부페(재료포함) ⇒ 배달음식(7520)	
3920	가사사용인 급료	S	◆ 가사(취사,세탁,청소,재봉 등)에 관련된 일을 타가구의 가구원을 고용해서 직접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직접 구하거나 소개받은 경우를 제외한 사업체와 거래한 경우는 제외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3990	기타가사서비스	S	○ 가정부,파출부,운전사,정원사,개인비서 등 ○ 간병인 급료,개인요리사 ○ 베이비시터,산후조리사,친척돌봄,개인보디가드 ○ 혼례,장례 및 제례 등 예(禮)진행 목사,신부,스님 등 에 대한 사례금 ○ 카풀 서비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현물 및 현금 ○ 장례 및 결혼도우미 × 대리운전료 ⇒ 기타개인교통(4790) ◆ 위의 항목과는 달리 사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 병원에서 식사 등을 데워먹는데 드는 이용료 ○ 출장요리사(음식재료 제공) ○ 심부름센터,장보기대행(사업체) × 경비업체의 경비서비스,해충퇴치비 ⇒ 기타주거서비스(2890)	
4010-4200 06. 보건				
4010-4050	의약품		◆ 사람의 질병 예방,치료 및 신체의 교정 등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 처방의 유무를 불문하고 주로 약사,조제사 및 의료장 비공급자로부터 개인이나 가구가 구입한 약물, 인공 기관, 의료 기구, 장비 및 기타 개인건강관련 제품을 비입원 환자에게 의사, 치과의사, 약사에 의하거나 또 는 입원환자에게 대한 병원 등의 외래 또는 병원에 의해 공급되는약품 ※ 의약외품:약리작용이 간접적이거나 경미한 물품	
4010	조제양약	ND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포함된 ㉮연고를 구입할 때도 처방전에 포함되어 있으면 조 ○ 의사 및 치과의사 등의 처방전을 통한 조제약 × 한방조제약 ⇒ 한약 및 한약재(4030)	
4020	판매양약	ND	◆ 약국 및 병원 등에서 치료,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구 입한 제품 ㉮처방전 조제약 및 병원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품 ㉮약품과 함께 구입하여 분리 불가능한 기능성 음료 포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 감기약, 위장약, 소독약, 신경안정, 수면, 구강치료 등을 위한 약품 ○ 외상, 안구치료 등을 위한 약품 ○ 생약성분 약품 ○ 구충제, 멀미약, 피임약, 파스, 관장약, 여성청결제, 링거액 등 기타양약 ○ 링거액, 포도당액 등 ○ 모발 재생(샴푸 포함), 두피피부약 등 × 다이어트 등을 위한 영양보조제 ⇒ 영양보조제 × 다이어트를 위한 식품 ⇒ 기타미분류식품(1695) × 동물용의약품 ⇒ 애완동물관련품(5270) × 구강세정제 ⇒ 기타이미용용품(8090) × 머리염색약, 파마약은 제외 ⇒ 기타이미용용품 × 피로회복, 숙취방지 및 해소 등을 위한 제품 ⇒ 기능성 음료(1730)	
4030	한약 및 한약재	ND	◆ 신체질병의 치료 및 신체의 유지를 위해 구입하는 모든 한약 및 한약재 ㉠ 일반약국 및 시장에서 구입한 한약재도 포함 ○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 ○ 한약토룡환, 우황청심원, 쌍화탕(한의원에서 제조) 등 ○ 인체의 생리기능의 부조현상에서 오는 신체의 허약 상태를 도와주는 약물 한방보약 ○ 상황, 영지, 운지버섯 등 약용버섯 ○ 한약에 들어가는 재료 × 개소주, 흑염소즙 등 한약사가 취급하지 않는 보약화된 음식 ⇒ 기타육류가공품(1145)	
4040	인삼	ND	◆ 인삼, 산삼 등의 삼 종류 및 이를 원료로 가공한 홍삼 ㉠ 인삼 및 홍삼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은 제 ○ 인삼, 산삼, 장뇌삼 등과 홍삼 등 증포된 삼 등 모든 삼(蔘)종류 ○ 백삼, 태극삼, 미삼, 동삼 등 ○ 인삼 및 산삼가공품 포함 ○ 인삼 및 홍삼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 인삼차 ⇒ 차(1715) × 인삼 및 홍삼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 영양보조제(4050)	
4050	영양보조제	ND	◆ 영양성분보급 등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보조제품으로 특정성분을 추출하거나 여러가지 내용물을 배합·발효하여 상품한 제품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4060-4060	기타 의약품		○ 각종 영양제, 피로회복제 ○ 뱀장어유, 로알제리, 꽃가루가공, 스쿠알렌 ○ 철분, 칼슘, 비타민 등 특정성분 보충제품 ○ 클로렐라 등 해조류가공 ○ 배아가공, 알로에가공, 키토산가공품 등 × 성분을 추출하지 않는 단순 건조 및 가루화 ⇒ 각 가 × 건강원에서 여러 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한 건강보조 식품 흑염소, 개소주, 자라가공식품 등 ⇒ 기타육류가공품(1145) × 배즙, 포도즙 등 ⇒ 과일 및 야채주스(1720) × 영지, 운지, 상황버섯 등 ⇒ 한약 및 한약재(4030)	
4060	보건의료 소모품	ND	◆ 위의 의약품 이외에 안대, 식염수 등 보건의료 소모품 ◆ 비내구재 및 소모품 ○ 반창고, 아기무릎 보호대, 근육보호스타킹, 밴드, 붕대, 안대, 탈지면, 가제, 마스크 등 외상소모품 ○ 거머리, 벌, 목초액(무좀치료) 등 치료동물 ○ 금연담배, 금연초 등 ○ 콘택트렌즈 세척액, 식염수 등 ○ 아기용 분, 코흡입기 등 유아보건용소모품 ○ 주사기, 콘돔, 임신테스트시약, 주사바늘, 종이기저귀, 생리대, 혈당체크용지, 정형외과용신발(석고 후 착용) 등 기타소모품 × 천기저귀, 기저귀커버 ⇒ 기타가정용 섬유(3280) × 베이비오일, 베이비로션 ⇒ 화장품(8050)	
4070-4090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 질병의 예방(건강의 유지), 질병의 치료(건강의 회복) 및 신체의 교정에 필요한 용품 및 기구	
4070	안경 및 콘택트	SD	◆ 시력교정 및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것 ○ 콘택트렌즈(하드렌즈, 소프트렌즈, 1회용 렌즈 등) ○ 근시안경, 원시안경(돋보기) 등 교정안경 ○ 시력보호 안경 ○ 안경렌즈, 안경테 등 안경부품 × 운동용 특수안경, 고글, 수영안경 ⇒ 운동용품(5240) × 시력교정보다는 귀금속으로 장식되어 안경테의 가치가 높은 안경 ⇒ 귀금속 구입(956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4090	기타보건의료 기구	S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 의수,의족 등 의지(義肢) ○ 휠체어,보청기,목발 등 보조장비 ○ 콘택트렌즈 소독기 등 소독기구 ○ 체온계,혈압계 등 계측기구 ○ 유아용투약기,젖병소독기,온도계 등 ○ 산소호흡관련용품 ○ 발마사지기,안마의자,쑥찜기,안마기 등 × 헬스기구 ⇒ 오락 및 운동내구재(5110) × 기능성 옥돌베개,매직폼 ⇒ 침구류(3210)	
4110-4120	외래의료서비스		◆ 질병의 예방(건강의 유지),질병의 치료(건강의 회복) 및 신체의 교정에 필요한 서비스에 관련된 지출	
4110	일반병의원 외래비	S	◆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가 의사에게 받는 의료서비스 ○ 건강검진,예방접종,시력교정,안마 및 지압료 등 ○ 외래진료비 ○ 각종약물투입비 ○ 물리치료비 등 보건의료서비스 × 병원입원치료 ⇒ 병원입원치료비(4200) × 건강검진의 공단부담금 ⇒ 고려하지 않음	
4120	한방병원외래비	S	◆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가 한의사의 진료에 기초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 ₩ 한의원에서 받은 모든 진료행위 포함 ○ 진찰료,침술비 등 ○ 한방외래진료비 ○ 한방물리치료비 × 한방병원입원치료 ⇒ 병원입원치료비(4200)	
4130-4130	치과서비스		◆ 입원하지 않는 환자가 지불하는 치과치료에 대한 비	
4130	치과외래비	S	◆ 입원하지 않는 환자가 지불하는 치과관련 치료비용 ₩ 치과병의원 및 비인가시설에서 받은 모든 진료행위 포함 ○ 치과병의원진료비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4140-4140	기타의료서비스		○ 치과병의원 물리치료비 ○ 치열교정, 임플란트, 틀니 등 × 치과병원입원치료비 ⇒ 병원입원치료비(4200) ◆ 위의 항목 이외에 입원하지 않는 환자의 의료관련서비스	
4140	기타보건의료서비스	S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보건의료서비스 ○ 재활원, 접골원 등의 기타준의료원의 치료 ○ 보건의료기구, 안경 등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수리비 ○ 응급차량 등 기타보건의료서비스 이용(비입원 환자) ○ 의료기구임차료 등 보건의료용품임차료 ○ 수지침 등 기타 민간요법 치료 ○ 추나, 프리랜서 간호사, 산파, 물리치료사 등의 서비스 ○ 제대혈, 정자, 혈액 등 보관비용 ○ 안마의자·지압기 등 기기 이용료 등 × 한방의원 물리치료비 ⇒ 한방병원외래비(4120) × 병원 물리치료비 ⇒ 일반병의원외래비(4110) × 간병인 ⇒ 가사사용인 급료(3920)	
4200-4200	입원서비스		◆ 입원한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치료받는 기간에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호스피스 등의 서비스를 포함	
4200	병원입원치료비	S	◆ 일반병원 및 한방병원을 막론하고 입원 환자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의 대가로 청구된 금액 ㉠ 치료비, 입원비, 약제료, 식사대, 문서료 등도 포함 ㉡ 출산을 위한 입원비용도 포함 ○ 기본서비스: 관리, 숙박, 음식 및 식사, 간호보조사 등 비 전문의료진에 의한 감독 및 보살핌; 응급조치 및 구명; 응급차량의 수송; 약품 및 기타 의약품의 지급; 치료기기 및 장비의 지급 ○ 일반이나 전문내과 의사, 외과 의사, 치과 의사의 서비스; 의료분석 및 X-선; 간호사, 조산사, 척추교정사, 검안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의 준의료서비스 ○ 호스피스 서비스 ○ 출산입원료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 산후조리원(8220) × 노인의 휴양소, 장애인시설, 장기 환자를 위한 회복센터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4510-4890	07. 교통			
4510-4599	자동차구입		◆ 승객 및 화물 등의 이동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에 대한 지출 ◆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 사람의 이동 및 화물운송 등의 이동에 필요한 상품의 구입에 대한 지출	
4510	신차구입	D	◆ 매장 및 딜러로부터 구입한 신차와 기업 및 정부가 이용하던 차를 가정용으로 구입한 경우 ℥ 관련비용은 각각 항목에 분류 ○ 신차구입비 × 순수 영업용 차량 ⇒ 파악대상이 아님 × 오락용 전동차, 캠프카 등 운송이 주목적이 아닌 차량 ⇒ 오락 및 운동내구재(5110) × 세금,등록관련비용은 해당항목으로 분류	
4599	중고차 구입	D	◆ 가구에서 이용하던 자동차를 직거래로 구입한 차량 ○ 중고차 구입비 × 세금,등록관련비용은 해당항목으로 분류	
4610-4620	기타운송기구 구입		◆ 승용차 이외에 사람의 이동 및 화물운송 등의 이동에 필요한 상품구입에 대한 지출	
4610	오토바이	D	◆ 위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을 위한 기구 ○ 오토바이, 스쿠터, 전기스쿠터 ○ 3륜 및 4륜 오토바이 포함 × 오락용 스쿠터 ⇒ 오락 및 운동내구재(5110)	
4620	자전거 등	D	◆ 자전거 및 부분품의 구입금액 ○ 일반 MTB형 일반자전거 ○ 마차 등 기타수송기구 ○ 비행기 등의 기타운송수단의 구입 × 전문산악자전거 ⇒ 오락 및 운동내구재(5110) × 유아용 세발 자전거 ⇒ 장난감(5210) × 보트,수상스키 등 운반트레일러 ⇒ 오락 및 운동내구재(511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4705-4710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 승용차,오토바이 등 가정용 운송기구운영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	
4705	부품 및 관련 용품	SD	◆ 운송기구(자동차,오토바이등)의 부품 및 관련용품 구입. 운송기구의 운영 등에 전용으로 이용되는 관련 ○ 네비게이션,통행단말 구입,보조기 제작 등 ○ 타이어,배터리,백미러,와이퍼,점화플러그,자동차용전구 등의 부품 구입 ○ 카스테레오,자동차용방향제,스노체인,자동차시트,시트커버,세차용구,왁스,워셔액,원격시동장치,자동차용청소기,카시트,화물용고무벨트,펌프(자전거용) 등의 ○ 자동차 전용장식품 등 ○ 별도구매한 자전거 흙받이,안장,짐칸,라이트 등 구성 × 서비스가 포함된 것(오일(엔진,브레이크)교환,에어컨가스주입) ⇒ 유지 및 수리비(4710)	
4710	유지 및 수리비	S	◆ 운송기구(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정상운영을 위해 운반구 자체의 정비 및 수리서비스 위해 지불되는 비용(부품비용 포함) ○ 자동차 등 운송기구 수리(A/S) 비용 ○ 에어컨가스주입,엔진오일교환 등 자동차정비 ○ A/S계약료(할인을 위한 회원가입비) ○ 외형복원,키박스 교환 등 ○ 세차비,광택비,선팅비 등 × 자동차 정기검사비 ⇒ 기타개인교통(4790)	
4715-4745	운송기구 연료비		◆ 승용차,오토바이 등 가정용 운송기구운영을 위해 지불하는 연료 비용	
4715	휘발유	ND	◆ 운송기구(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연료 ㉮ 광열수도용 연료와 구분 ○ 가솔린 ○ 일반 승용차용 연료	
4720	경유	ND	◆ 운송기구(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연료 ㉮ 광열수도용 연료와 구분 ○ 디젤차량용 연료 × 난방 및 기타 경유 ⇒ 경유 연료(295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4725	LPG	ND	◆ 운송기구(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연료 ℥ 광열수도용 연료와 구분 ○ 액화석유가스 × 취사용 LPG ⇒ LPG연료(2930)	
4745	기타연료	ND	◆ 위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탈것에 대한 연료 및 윤활 제품 구입비용 ℥ 광열수도용 연료와 구분 ○ 천연가스,전기,수소차량용 연료 등 ○ 유사 휘발유 포함 ○ 엔진오일,밋션오일,브레이크오일 등 운송기구용 윤활 유 등 유류제품 구입 포함 × 윤활유 교체서비스 ⇒ 유지 및 수리비(4710)	
4755-4790	기타개인교통 서비스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개인교통 및 운송관련 비용	
4755	운전교습비	S	◆ 운전학원의 교습비(도로주행비) ℥ 학생의 운전교습도 포함 ○ 자동차(자동,수동,대형,소형 불문) 교습비 ○ 2륜원동기 및 자전거 등 교통수단 관련 교습비 ○ 도로연수 등 × 운전학원에서 가입하는 보험 ⇒ 운송관련보험 등	
4760	주차료	S	◆ 운송기구(자동차,오토바이 등) 주차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 ℥ 시간,장소 구분없음 ○ 주차료(장소구분):공영주차장주차료,백화점주차료 ○ 주차료(시간구분):월간,연간,시간제주차료 등 ○ 주차장임차료,차고지요금 등 ○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이용료	
4765	통행료	S	◆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통행에 지출한 비용 ○ 고속도로통행료 ○ 유료도로요금(통행료) ○ 고속도로카드 및 단말기 충전액 × 통행료 단말기 구입비 ⇒ 부품 및 관련용품(4705)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4790	기타개인교통	S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교통 및 운수관련 비용 ○ 자동차 임차료(장의차 포함) ○ 대리운전료 ○ 교통안전교육, LPG운전자교육비 등 ○ 자동차폐차비용, 적성검사비, 자동차 정기검사비 등 ○ 번호판발급료, 말소등록료 등 × 교통관련 법규 미준수에 따른 범칙금 ⇒ 과징금	
4810-4820	철도운송		◆ 기차 및 지하철 등의 운송수단이동에 따른 서비스비	
4810	기차	S	◆ 기차 이용요금 ₩ 식비 등 일부 기타비용이 포함된 경우도 포함 ○ 철도이용 정기권, 철도이용 정액권 등 ○ 테마기차여행 ○ 철도할인권 구입 등	
4820	지하철	S	◆ 지하철 및 전철 이용요금 ○ 지하철 정액권 구입 ○ 광역수도권전철 이용요금 ○ 철도관광여행 포함	
4830-4850	육상운송		◆ 버스, 택시 등 철도 이외의 육상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른 서비스 요금	
4830	시내버스	S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요금 ○ 통근버스, 통학버스 등 ○ 버스전용 회수권 및 정액권 등 ○ 타군의 군내버스를 시내에서만 이용한 경우 ○ 시내(군내)버스를 이용하여 시도경계를 넘어가는 경 ○ 버스전용카드충전	
4840	시외버스	S	◆ 버스를 이용한 격지간 이동서비스에 대한 비용 ○ 고속, 셔틀, 광역버스 등을 이용한 격지간 이동 ○ 기타 공항버스 등 원거리 이동 × 시내소재 공항이동용 공항버스 ⇒ 시내버스(483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4850	택시	S	◆ 택시 이용요금 ○ 일반택시,모범택시,전세택시,콜택시 등 ○ 승합택시,콜밴 등	
4860-4880	기타운송		◆ 위에 분류되지 않는 항공, 여객선 및 혼합교통 이용에 따른 서비스 비용	
4860	항공요금	S	◆ 비행기 및 기타항공기 이용요금 ○ 국제선 항공기 이용요금 ○ 국내선 항공기 이용요금 ○ 헬리콥터,경비행기 등 기타항공 × 스카이다이빙 등을 위한 비행기 등 이용 ⇒ 기타오락시설이용(5320) × 패키지로 묶여 항목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국내단체여행(5480) ⇒ 국외단체여행(5490)	
4870	교통카드 이용	S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선지불하거나, 이용 후 일시에 청구되어서 각 교통편으로 분리되지 않은 금액 ○ 교통카드 충전료 ○ 교통카드 이용료 ○ 교통카드 구입 ※ 교통 이외의 사용은 개별항목으로 분류	
4880	기타여객서비스	S	◆ 위에 분류되지 않은 선박 및 기타 운송수단 이용요금 ○ 선박이용료 ○ 기타혼합교통이용료 ○ 공항이용료,역입장권 등 시설이용료 × 관광유람선,투어버스,보트,행글라이더,페러글라이더 등의 이용요금 ⇒ 기타오락시설이용(5320)	
4890-4890	기타교통관련 서비스		◆ 여객 이외에 기타 화물 등 관련 서비스	
4890	화물운송 및 보관	S	◆ 이사,일반화물,택배,이륜차를 이용한 빠른운송서비스 등의 운송 및 보관서비스 ㉞ 인건비 부대비용도 포함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 이사짐운반,사다리차 등 이사화물 ○ 오토바이를 이용한 빠른 운송서비스 ○ 택배(우체국택배도 포함),소포 ○ 마차삿,지게꾼삿,이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및 견인 ○ 일반화물 보관료 및 물품보관서비스 ○ 사물함 이용료 등 기타운송 및 저장비용 × 법규위반건인 및 보관료 ⇒ 과징금(9090)	
4910-4990	08. 통신			
4910-4910	우편서비스		◆ 의사·지식·정보 등을 격지에서 주고 받는 데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 서신을 격지에서 주고 받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 ㉡ 국내,국외 구분없음	
4910	우편 서비스	S	◆ 관제엽서,우표,항공우편요금 등 ○ 편지,항공메일,채신엽서 등 서비스를 위해 지불한 요 ○ 우편 부대서비스 ○ 축전과 더불어 보내는 우편환에 대한 수수료 ○ 우표를 붙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엽서 등 × 우편봉투, 일반엽서 및 편지지 ⇒ 종이문구류(5445) - 단, 우표를 붙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엽서는 포함 × 소포, 쿼서비스, 택배 등 ⇒ 화물운송 및 보관(4890) × 전보요금 ⇒ 일반전화요금(4950)	
4920-4930	통신장비		◆ 전화 및 팩스 등 통신장비의 구입	
4920	일반전화기기	D	◆ 일반전화기기 및 인터넷전화기 등의 구입비용 ㉡ 부품 및 부분품도 포함 ○ 유선전화기,가정용무선전화기,자동응답기 등 ○ 팩시밀리,키폰 등 ○ 안테나,전화선 등 일반전화기기부품 ○ 연결탭,연결선,자동응답기 녹음테이프,전용건전지 등	
4930	이동전화기기 등	D	◆ 이동전화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할부 및 일시금 포함 ㉡ 부품 및 부분품도 포함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4950-4990	통신서비스		○ 이동전화기기(휴대폰)의 구입 및 임차비용 ○ 핸드프리, 휴대폰배터리, 휴대폰충전기 등 이동전화부 ○ 카폰, 무선호출기, 무전기 등 기타통신기기 ○ 햄(HAM)관련 장비, 차량용무선통신장비 등 × 휴대폰줄, 휴대폰집 등 휴대폰장신구 ⇒ 장신구 × 이동전화기기 임차료 ⇒ 이동전화 요금(4960) ×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 ⇒ 부품 및 관련용품(4705) ◆ 전화, 팩스,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4950	일반전화요금	S	◆ 일반전화기기에 청구된 전화요금 및 관련서비스 ㉫설치비, 이전비 등의 서비스도 포함 ㉫일반전화요금에 청구된 각종서비스도 포함 ○ 전화요금, 인터넷전화, 공중전화카드 구입 등 ○ 전화설치비, 전화이전비, 전화기기 임차료 등 ○ 팩시밀리, 키폰, 전보요금(전화요금에 청구된 것) 등 ○ 국제전화요금, 국제전화카드 구입 등 ○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 전화요금에 포함되는 기부금 등 ⇒ 회비 및 기타기부금(9420) × 일반전화기기의 구입비용 ⇒ 일반전화기기(4920) × 인터넷 망서비스 이용료 ⇒ 인터넷이용료(4970) × 환불받은 일반전화보증금 ⇒ 보증금 제공(9570) × 전화번호안내 ⇒ 기타서비스(8720)	
4960	이동전화 요금	S	◆ 이동전화기기에 청구된 전화요금 및 관련서비스 ㉫임차료, 개통비, 로밍서비스 등의 서비스 포함 ○ 이동전화 요금, 카폰요금, 무선호출기요금 ○ 가입비, 이동전화임차료, 이동전화 인터넷 이용요금 ○ 발신번호표시 ○ 이동전화 해지위약금 등 × 이동전화 요금중 이동전화기기 구입비용 ⇒ 이동전화기기 등(4930) × 나중에 환불받는 이동전화보증금 ⇒ 보증금 제공 × 벨소리다운 등 부가서비스 ⇒ 콘텐츠(5355) × 전화번호안내 ⇒ 기타서비스(872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4970	인터넷 이용료	S	◆ 인터넷(케이블,전용선,광,무선 등)서비스 등 망 사용 ℥이동전화기기를 이용한 인터넷서비스 포함 ℥일반전화요금,이동전화 요금에서 인터넷이용료 분 ○ 인터넷사용료 등 ○ 인터넷가입비,인터넷설치비,관련장비 임차료 등 ○ 인터넷 해지위약금 등 × PC방에서 사용한 컴퓨터이용요금 ⇒ PC방 이용료 (5315) × 이동전화 인터넷서비스 이용 ⇒ 이동전화 요금 ×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각각의 서비스에 분류	
4990	기타통신관련 비용	S	◆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통신관련 비용 ○ 일반전화기수리비,이동전화기수리비 ○ 이동전화기충전비 등 × 휴대폰줄,휴대폰커버 등 장식품 ⇒ 장신구(8130) × 햄(HAM) 관련비용 ⇒ 이동전화기기 등(4930) × 핸드프리,휴대폰배터리,휴대폰충전기 ⇒ 이동전화기기 등(4930)	
5010-5490 09. 오락 · 문화				
5010-5020	영상음향기기		◆ 오락,취미,문화활동 등의 목적으로 소비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 TV,오디오 등 영상 및 음향기기	
5010	텔레비전	D	◆ TV방송을 수신하는 장비 및 관련부품 ○ 평면TV,프로젝션TV, LCD TV, 비디오비전 (VIDEO+TV) 등 ○ TV안테나,TV리모컨 등 TV관련 부품 × 빔프로젝터,홈시어터 ⇒ 기타영상음향기기 × TV장 ⇒ 장식장	
5020	기타영상음향 기기	D	◆ 소리 및 영상을 재생하거나 녹음할 수 있는 장비 및 관련부품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 (휴대용)오디오,스테레오,컴포넌트,CDP,MP3·MP4플레이어,PMP,녹취기,어학기 ○ 스피커,헤드폰,이어폰 등의 오디오부품 ○ 홈시어터, 빔프로젝터(영사화면 포함) 등 ○ VCR, DVD, LDP, DviX플레이어 등 ○ 소리 등을 이용하여 정신집중향상 등을 위한 영상음향기기 × 비디오테이프,DVD,LP,CD음반,음악테이프 ⇒ 콘텐츠(5355) × 자동차용 카스테레오, 카팩 등 ⇒ 부품 및 관련용품(4705)구입 × 오디오장 ⇒ 장식장(3020)	
5030-5030	사진광학장비		◆ 사진기,캠코더 등 기록 및 광학장비	
5030	사진 및 광학장비	D	◆ 사진 및 영상촬영 등을 위한 광학기 ○ 각종 카메라,슬라이드 영사기,복사기 등 ○ 캠코더 등 ○ 카메라렌즈,삼각대,플래시 등 카메라부품 ○ 쌍안경,현미경,망원경 등 × 일회용카메라 ⇒ 기록용매체(5050) × 캠코더용 디스크 및 테이프, 카메라용 메모리 ⇒ 기록용매체(5050)	
5040-5040	정보처리장치		◆ 데스크탑 컴퓨터,노트북 컴퓨터 및 주변기기	
5040	정보처리기기	D	◆ 컴퓨터(노트북 포함) 및 주변기기 ㉮ 부품 및 소모품 포함 ○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노트북PC,PDA,프린터(복합기),스캐너,공유기,컴퓨터연결 팩스 등 ○ 키보드,마우스,HDD,CD-ROM드라이브,각종카드,보안기,PC캠,컴퓨터스피커 등 컴퓨터부품 ○ 전자수첩,전자계산기,전자사전 ○ 토너,잉크,카트리지 ○ 기타 가정용 사무기기 및 정보처리기기 × 게임CD ⇒ 콘텐츠(5355) × 학습교재에 포함된 CD-ROM,DVD 등 ⇒ 해당 서적에 분류 × 공CD,공CD-RW,디스켓 등 ⇒ 기록용매체(505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5050-5050	기록매체		× PC책상 ⇒ 책상(3030) × 팩스기기 ⇒ 일반전화기기(4920) ◆ 외장하드, 공CD-ROM, 메모리, 필름, 테이프 등의 제 기록매체	
5050	기록용 매체	SD	◆ 부록이 아닌 별도로 기록을 위해 구입한 매체 ○ 외장하드, USB메모리 등 기록매체 ○ CD-ROM(컴퓨터용) : 빈CD, 빈DVD, 빈 테이프 등 ○ 카메라 필름, 일회용 카메라 ○ 빈테이프, 테이프 헤드크리너 등 × 필름현상료 ⇒ 기타문화서비스(5365) ×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언어 등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및 게임 CD-ROM ⇒ 콘텐츠(5355)	
5060-5060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 외장하드, 공CD-ROM, 메모리, 필름, 테이프 등의 제 기록매체 관련 서비스	
5060	영상 및 정보 처리서비스	S	◆ 영상음향기기, 사진 및 광학장비 및 정보처리기기의 수리 및 대여 ○ 영상음향기기 및 정보처리기기의 수리 ○ 영상음향기기 및 정보처리기기의 대여 × 수리 및 기능개선을 위한 부품구입 ⇒ 각 해당항목에 분류	
5110-5110	오락문화 내구재		◆ 보트, 캠프카, 행글라이더, 열기구 등 야외용 내구재 오락기구 및 탁구대, 당구대 등 실내스포츠용 오락기구	
5110	오락 및 운동 내구재	D	◆ 야외 스포츠 및 오락을 위한 내구재 및 관련부품 ○ 캠프카, 레크리에이션용 전기및모터스쿠터, 전용모터 사이클, 싸이클자전거, 전문산악자전거, 킥보드 등 야외 활동용품 ○ 요트, 보트, 카누, 수상스키, 잠수관련장비 등 수상스포츠 관련용품 ○ 경비행기, 열기구,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항공관련용품 ○ 여행트럭, 골프카트 등 ○ 당구대, 탁구대, 핀볼게임기계 등 실내오락 내구재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5120-5120	악기기구		× 등산복, 농구 · 축구 등의 유니폼 ⇒ 운동복(2055) × 바퀴달린 운동화 ⇒ 운동화(2255) × 골프, 축구, 농구, 배구, 야구 공 ⇒ 운동용품(5240)	
5120	악기	D	◆ 피아노, 오르간, 플룻 등 악기기구 ◆ 국악기, 건반악기,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학습교재 용 악기 및 부품 포함 ○ 가야금, 거문고, 대금, 장구, 썰가리, 북, 징 등 국악기 ○ 건반악기,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서양악기 ○ 악기케이스, 기타줄, 기타스텐드(악기거치대), 악기가 방 등 목적이 특정된 액세서리, 박자기 등 악기부품 × 유아용 놀이악기 ⇒ 장난감(5210)	
5130-5130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 오락문화 내구재 및 악기의 유지 및 수리 서비스를 위한 비용	
5130	오락문화내구재 서비스	S	◆ 위의 오락 및 문화용품의 유지 · 보수 및 대여 등을 위한 지출 ○ 오락문화용 기구의 수리, 유지 등을 위한 부품 및 부분품 구입 · 교환서비스 등 ○ 요트, 수상스키 등의 임차 ○ 운동용품 수선 · 유지 · 대여 및 기능개선 ○ 악기 수선 · 유지 · 대여 및 기능개선 ○ 피아노조율, 기타악기 등의 수리 ○ 보트, 캠프카, 여행 트레일러 등의 보관, 수리, 대여	
5210-5220	장난감 및 취미용품		◆ 오락문화, 스포츠, 장난감, 취미용품 및 콘텐츠 등에 대한 지출	
5210	장난감	SD	◆ 장난감(완구) 및 유아승용물 포함 Ⅱ 관련서비스 포함 ○ 보행기, 전동자동차, 베이비카, 모형말 등 ○ 비디오게임기, 부품 및 부속품 등 ○ 아기그네, 세발자전거(미는 세발자전거 포함) ○ 인형, 블럭, 프라모델, 모형비행기, 모형헬리콥터 등 ○ 딸랑이, 공갈젓꼭지, 모빌, 유아 물놀이 기구 ○ 유아용 악기장난감 등 ○ 장난감, 게임기 등의 수리 및 A/S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5220	게임 및 취미 용품	SD	× 점토인형 등 장식용 인형 ⇒ 기타실내장식품(3120) × 유아용 교육교재 등 ⇒ 유아용학습교재(5405) × 수영튜브, 오리발, 수경, 롤러브레이드, 인라인스케이트 ⇒ 운동용품(5240) × 보조바퀴자전거 ⇒ 자전거 등(4620) × 게임팩, 게임CD ⇒ 콘텐츠(5355) × 카시트 ⇒ 부품 및 관련용품(4705) ◆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취미수집용품의 구입에 대한 지출 ₩ 관련서비스 포함 ○ 희귀우표, 동전수집, 기념주화, 메달, 희귀카드 등 수집 ○ 자수, 레이스, 십자수세트, 공예재료, 도예용품, 박공예, 지공예, 수예용 실, 바늘 등 ○ 탈, 가면(마스크) 등 ○ 바둑판, 장기판, 체스판 등 ○ 바둑알, 장기, 체스알, 화투, 포카, 퍼즐, 카드 등 ○ 폭죽 등 불꽃놀이 기구 ○ 게임 및 취미용품의 수리 및 A/S	
5230-5250	캠핑 및 운동 관련용품		◆ 등산납시, 사냥용품, 운동용품, 오락문화용품 서비스에 대한 지출	
5230	등산납시사냥 용품	SD	◆ 등산, 납시 및 사냥에 필요한 도구 ○ 텐트, 침낭, 등산배낭, 그늘막 등 등산용품 ○ 납시대, 릴, 뜰채, 바늘 등 납시용품 ○ 코펠, 반합 등 야외조리용구 ○ 사냥용총, 총탄, 사냥용 서치라이트, 나침반 ○ 리저화, 등산화 ○ 납시가방, 등산가방, 등산용 지팡이(스틱) 등 × 야외용 부탄가스, 숯(연료용) ⇒ 기타연료(4745) × 휴대용 가스버너 ⇒ 가스·전자레인지(3310) × 숯(탈취용, 방취제) ⇒ 기타가사소모품(3890) × 등산 및 납시용 의복 ⇒ 운동복(2055)	
5240	운동용품	SD	◆ 실내 및 실외 운동관련 준내구용품 ○ 줄넘기, 훌라후프, 태권도, 택견, 검도, 유도 등 관련용품 ○ 골프,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각종구기 관련 용품 ○ 비치파라솔, 야외용돛자리 등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 스포츠용 헤드기어, 기타 구명조끼, 복싱글러브, 패딩, 헤드기어, 보호장비, 고글, 특수벨트, 지지대 등의 보호 ○ 에어매트리스 및 전용공기주입기 ○ 골프,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의 공, 글러브 등 ○ 각종 라켓, 야구배트, 골프채 등 ○ 스파이크, 징을 부착한 축구화, 골프화, 락 클라이밍, 볼링화, 배드민턴화, 레슬링화 등 경기용 특수신발 ○ 무용화, 검도화 등 실내운동 전용 신발(운동전용 덧 ○ 수영튜브, 오리발, 수영안경 등 ○ 인라인스케이트, 스키, 스노보드, 스케이트 등 ○ 윗몸일으키기 기기, 만보기 등 ○ 검도호구, 권투편치볼, 킥연습도구, 하키스틱, 펍, 보호장구 등 ○ 농구골대, 축구골대, 진검, 양궁, 석궁, 국궁 등 ○ 벨트맞사지기, 헬스사이클, 런닝머신류 등의 관련용품 ○ 손목밴드, 이마밴드 등 스포츠밴드 × 탈춤복, 풍물복 등 ⇒ 남성용 외의(2010) ⇒ 여성용 외의(2015) × 일반실 ⇒ 실류(2220) × 스키복임차 ⇒ 기타의복관련서비스(2240)	
5250	캠핑 및 운동 용품서비스	S	◆ 오락 및 문화용품의 유지·보수 및 대여 등을 위한 지출 ○ 스키, 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운동용품의 보관, 수리, 대여 등 ○ 스케이트날 갈기, 롤러바퀴교환 등 ○ 오락문화용품의 수선, 보수비용 등 ○ 골프채의 샤프트 및 그립교환, 라켓의 줄 및 그립교환 등 ○ 기타운동용기구의 대여 및 수리 등을 위한 지출 × 직접 수리하기 위해 구입한 부품구입비 ⇒ 해당품목에 분류	
5260-5260	화훼관련용품		◆ 꽃, 화초, 정원 관련 식물 및 소모품	
5260	원예용품	ND	◆ 화훼, 원예 및 텃밭 관련용품 구입 ○ 꽃송이 및 꽃다발 ○ 꽃씨, 모종, 화초, 분재, 정원수, 작물씨앗 등 ○ 흙, 비료, 영양제 등 ○ 화분, 물받이, 정원석, 스프링쿨러, 조리 등 기타원예용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5270-5270	애완동물관련 물품		× 조화 ⇒ 기타실내장식품(3120) × 제초제,살충제 등 ⇒ 살충약품 및 용품(3850) × 잔디깎기(예초기) ⇒ 가정용 전동공구(3710) × 주말농장임차료 ⇒ 애완동식물 관련서비스(5280) × 낫,삽,부삽(모종삽),화초용가위 등 ⇒ 기타소형공구 및 가사용품(3790)	
5270	애완동물관련품	ND	◆ 애완동물의 구입,애완동물 먹이, 사육장(어항) 등 관련용품 구입 ◆ 애완동물,애완곤충의 구입 및 관련용품 구입 ○ 개,고양이,금붕어,새,거북,햄스터 등 애완동물구입 ○ 개사료,금붕어먹이,개껌 등 애완동물먹이 ○ 개집,새장,수족관,어항(산소발생장치 및 꾸밈) 등 애완동물집 ○ 장수풍뎡이,이구아나 등 ○ 애완동물의류,개줄,개목걸이 등 애완동물장신구 ○ 애완동물약품,애완동물이미용품 등 기타애완동물용	
5280-5280	화훼 및 애완 동물서비스		◆ 화초,애완동물의 관리,치료,미용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	
5280	애완동식물 관련서비스	S	◆ 애완동물의 동물병원,관리 및 식물관련 서비스 ○ 치료비,예방접종비,미용실요금 등 ○ 훈련,문신,편자갈기,관리,먹이주기,마구간 청소료 등 ○ 주말농장임차료 및 관련비용 ○ 분갈이,소생비 등	
5305-5330	운동 및 오락 서비스		◆ 각종 놀이공원,서커스장,운동경기장 등의 이용	
5305	운동시설이용	S	◆ 운동시설의 이용료 ㉠ 회원권이 아닌 일정기간 사용 후에는 무효화되는 ㉠ 강사비를 별도로 지출하는 경우 분리 ○ 축구장,야구장,농구장 등의 이용료 ○ 체육관(헬스클럽),볼링장,골프(연습)장,탁구장,스케이트장,수영장,사격장,국궁 등의 이용료 ○ 스키장,리프트 등 관련시설이용 ○ 헬스클럽회원권,다목적 레저시설 이용권 등 ○ 오락시설종사자에게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예:캐디팁)포함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 강습료를 별도로 지불한 경우 ⇒ 운동 및 교양교육 (6630) × 자산형태의 회원가입비(골프회원권) ⇒ 기타자산형태의 변동(9590) × 입욕권 등의 다량구매 ⇒ 목욕료(8005)	
5310	노래방 이용	S	◆ 노래방 시설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 ₩ 노래방내에서 구입한 음식료품 등은 제외 ○ 노래방 이용료 × 노래방에서 흥겨움을 더하기 위하여 초대 한 이성에 게 지불한 대가 ⇒ 유흥비(8730)	
5315	P C 방 이용	S	◆ PC방의 이용료 ○ PC방의 이용료 × 별도 지불한 콘텐츠 ⇒ 콘텐츠(5355)	
5320	기타오락시설 이용	S	◆ 오락 및 놀이시설 및 장비 이용료 ○ 유원지,놀이공원,해수욕장 등의 입장료 및 자유이용 ○ 동물원,사파리 등의 관람시설 이용료 ○ 오락을 위한 경향공기,유원지(유람선),보트 등의 이 ○ 번지점프, 열기구,페리글라이더,보트 등 놀이시설 이 ○ 유람선,관광잠수함,시티투어버스 등 이용료 ○ 기원,오락실,당구장,비디오방,낚시터 등 ○ 수상스키 레포츠 시설이용료 ○ 코끼리트레킹,승마트레킹,마차,툽툽 등 이용료 ○ 수상스키 등레포츠 장비 및 시설이용 ○ ATV장비이용,케이블카 이용료 ○ 무도장 등 기타오락시설 이용료 ○ 유료로 동전을 넣어 시청하는 TV이용 ○ 공공장소에서 유료로 이용하는 인터넷이용료 ○ 인형뽑기 등 거리 게임기 이용료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용 등 위에 분류되지않는 오락시설 이용료	
5325	운동경기관람	S	◆ 운동경기의 관람료 ○ 축구,야구,농구,배구 등의 운동경기관람료 ○ 기타 자동차레이스,경마,골프 등의 관람료 × 운동경기에서 내기용 표(票)구매(마권 등)비용 ⇒ 복권구입(537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5330	오락용품대여	S	◆ 오락문화용품 및 기구의 임차료 ㉠연체료 포함 ○ 비디오테이프, 만화책, 잡지, 도서 등의 대여료 ○ 스키용품, 볼링화, 골프용품, 텐트, 인라인 등의 임차료 ○ TV, DVD플레이어, 게임기, 세발자전거 및 유아용 승용물, 장남감 등의 대여료 × 유료인터넷TV요금 및 콘텐츠 이용료 ⇒ 콘텐츠	
5335-5365	문화서비스		◆ 전시시설, 공연시설, 방송수신료, 문화용품의 대여료 등	
5335	공연 및 극장	S	◆ 영화, 연극, 콘서트, 서커스, 기타공연 등의 입장료 ○ 영화관람료(야외극장 및 자동차극장 포함) ○ 연극입장료, 방청권구입 ○ 콘서트, 음악회 및 오페라 입장료 ○ 돌고래쇼, 코끼리쇼 등 동물쇼 입장료 ○ 서커스 및 기타공연 입장료	
5340	공원 및 관람 시설이용	S	◆ 국립공원, 전시관 · 유적지 등 입장료 ○ 박람회, 전시회 등 ○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동물원, 수족관 등 ○ 고궁, 사찰, 공원, 사원, 국립공원 및 유적지 등의 입장료	
5345	독서실 이용	S	◆ 독서실, 도서관 등의 이용료 ○ 독서실, 도서관 등	
5350	문화강습	S	◆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요리, 바둑, 스키 등 여가시간을 위한 학원 및 학교이외의 개인 또는 그룹레슨은 '문화강습'에 분류 ㉠강습료 없이 실비만 받는 경우는 재료비는 각각 항목에 분류하고 강습비는 별도구분하지 않음 ○ 요리, 양재, 편물, 꽃꽂이, 다도, 노래교실 등 강습료 ○ 주부교실, 강연회, 청강료 등 공개강좌 ○ 바둑, 마술, 장기, 체스 등 ○ 에어로빅, 댄싱 등 개인 또는 그룹레슨 ○ 단전호흡, 요가, 스포츠댄스, 눈체조 등의 기타강습료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5355	컨텐츠	SD	× 기원이용료 ⇒ 기타오락시설이용(5320) × 교육시설인 평생교육원의 강습료 ⇒ 평생교육원 × 전문직업인이 되기위한 집중교육 ⇒ 성인직업학원(6610) × 교과과정정보충 및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교육 ⇒ 운동학원(6250) ◆ 부록이 아닌 별도로 기록된 내용을 이용하기 위해 구입한 기록매체 ㉠ 정액제 등 인터넷 유료음원서비스 이용료 포함 ㉠ 사이버학원 및 온 오프겸용학원은 각 해당항목으로 분류 ○ CD(레코드판),LP(레코드판) ,중고포함 등 ○ 어학테이프,어학CD,음악테이프,음악CD 등 ○ 운영체제,프로그램 소프트웨어 ○ 게임소프트웨어,게임정기이용비,학습팩,게임팩 등 ○ MP3 등 매체없이 구입한 파일 및 월정액회비 등 ○ 한글, 엑셀, 비주얼베이직 등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 영화DVD,VCD 등 ○ 유료사이버 백과사전,외국어사전 등 ○ 오디오북,컨텐츠 등의 정기이용료 ○ 네비게이션의 지도파일 다운 ○ 유료인터넷TV이용요금,드라마다시보기 등 컨텐츠 이용료 ○ 벨소리 다운 등 핸드폰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료 × 별도로 구입하지 않은 부록은 분리하여 기록하지 않 × 사이버학원수강 등은 해당항목으로 기록 × 인터넷 이용요금 ⇒ 인터넷이용료(4970)	
5360	방송수신료	S	◆ TV수신료,위성방송수신료,케이블TV(CATV) 등의 방송수신료 ㉠ 돌려받지 않는 가입비,방송수신신청비도 포함 ㉠ 해지시 돌려받는 가입비는 제외 ○ TV수신료 ○ 위성방송,DMB 수신료 ○ 케이블방송수신료 ○ 케이블방송 등 해지위약금 × 유료인터넷TV요금 및 컨텐츠 이용료 ⇒ 컨텐츠	
5365	기타문화서비스	S	◆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문화관련서비스 ○ 사진 및 비디오 촬영,현상,인화,확대,편집 등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 졸업앨범 등 현상된 사진앨범비용 ○ 초상화,영정 등 제작비용 ○ 스티커사진, 테이프녹음비 등 ○ 표구제작비,각종 대회참가비 등 ○ 게임,돌,회갑 등 행사에 사회자 등에 대한 지불 ○ 어린이 주일학교비 등 종교단체활동비 ○ 안수기도비,영세비,등(燈)값,기와구입 및 방생을 위 한 동물구입 등 종교행사참가비 ○ 자치센터,백화점,할인점 등이 운영하는 문화센터 참 ○ 개인전시를 위한 장소임차료 등 ○ 기타오락문화서비스 × 일반앨범 ⇒ 기타문구류(5455)	
5370-5370	복권		◆ 당첨금이 따르는 복권의 구입	
5370	복권구입	S	◆ 당첨금이 따르는표(票)구매:마권,복권,경품권 매입금 ○ 번호맞추기식,스크래치식,추첨식 등 복권구입 ○ 경마,경정,경륜 등 당첨권 구입 ○ 카지노 등에서 배팅비용 ○ 상품권 및 돈을 주고 받는 성인게임 포함 × 경마장,경륜장 등 입장권 ⇒ 운동경기관람(5325)	
5405-5425	서적		◆ 교과서,참고서,교양서적,전집류 등 모든 서적류 ㉠ 서적에 테이프,VCR,CD-ROM 등 끼워파는 것도 ㉠ 방문지도비가 포함된 것은 보충교육비	
5405	유아용학습교재	SD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지능발달 및 교육을 위해 구 입한 학습교재 ○ 유치원교재 ○ 유아용 서적(유아발달,미술,한글,영어 등) ○ 장난감 및 CD-ROM이 포함된 학습교재 ○ 한글,한자,영어깨치기 등 글자판 × 순수한 장난감 ⇒ 장난감(5210)	
5410	초등학생 학습 교재	SD	◆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학습교재 ㉠ 무상으로 제공받은 교과서는 제외 ○ 아동용 교육교재 등 ○ 전과,자습서 등 초등학교 교육교재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5415	중고생 교재	SD	○ 초등학교용 학습 테이프, 비디오, CD 등 ○ 방문학습교재비(분리가 가능한 경우) × 백과사전, 전집류 등 직접학습과 관련없는 서적 ⇒ 기타서적(5425) × 실습을 위한 학습준비물 ⇒ 기타문구류(5455) × 무상교과서 ⇒ 고려대상에서 제외 ◆ 중학교 ·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는 서적류 ℥ 개별 구입한 것도 포함 ○ 중고등학교 교과서 ○ 방학책 등 기타교과서 × 사전류 ⇒ 기타서적(5425)	
5420	중고생 참고서	SD	◆ 중 · 고등학교에서 교과서 외에 모든 참고용 학습참고교재 ℥ 서적류에 카세트테이프, VCR테이프, CD-ROM 등이 포함된 것도 해당 ○ 참고서, 문제집, 수련장(중학교 · 고등학교) ○ 주간 및 월간학습지 등(지도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학원 및 방송통신교재 × 방학책 ⇒ 중고생 교재(5415) × 사전류 ⇒ 기타서적(5425)	
5425	기타서적	S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서적 ℥ 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학습교재는 별도분류 ○ 전문대학 교재 ○ 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교재 ○ 평생교육원교재 등 기타 교육기관의 교재 ○ 소설책, 시집 등 ○ 학습단계가 명확하지 않는 어학교재, 운전면허시험문제집 등 ○ 백과사전, 사전, 옥편 등 사전류 ○ 만화책, 전집, 총서, 지도책 등 ○ 성경책, 불경책 등 종교서적 ○ 기타위에 분류되지 않은 서적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5430-5440	기타인쇄물		◆ 서적이외에 신문,잡지 등 기타 인쇄물	
5430	신문	ND	◆ 시사뉴스를 비롯한 정보·지식·오락·광고 등을 전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신문(언어 불문) ○ 일간신문,주간신문 ○ 스포츠신문, 영자신문, 어린이신문 등	
5435	잡지	ND	◆ 시사뉴스를 비롯한 정보·지식·오락·광고 등을 전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잡지(언어 불문) ○ 주간지,순간지,월간지,계간지 등 정기간행물 ○ 시각표,정보지,TV관련잡지 등 기타잡지	
5440	기타 인쇄물	ND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인쇄물 ○ 관광안내도,지도,지구본 등 ○ 달력,악보 등 ○ 명함,팜플렛,청첩장 등 ○ 카드,엽서 등 × 복사,코팅,제본 등 ⇒ 기타서비스(8720)	
5445-5455	문구		◆ 가구에서 이용하는 문구류 일체	
5450	필기 및 미술용품	SD	◆ 종이제품이외의 필기구,회화용구(서예포함) 제품 ○ 연필,펜,볼펜,싸인펜,형광펜,색연필,만연필,잉크 등 문구 및 부품 ○ 물감,파스텔,도화연필,수채화도구,유화도구,포스터컬러,크레파스 등의 회화용구 ○ 미술용 붓,서예용 붓 및 미술도구 일체 ○ 캔버스,파레트,물통 ○ 판화,판화용 조각도,석회,찰흙 등 × 학습자료 인쇄 및 복사비 ⇒ 기타서비스(8720)	
5445	종이문구류	ND	◆ 회화용구를 포함한 종이문구류 ※ 종이문구류:종이에 기재할 부분이 많은 경우 기타 인쇄물:종이에 인쇄된 내용이 많은 경우 ○ 공책 등 노트류 ○ 원고지,편지지,모눈종이,갱지,일반엽서 등 용지류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5455	기타문구류	ND	○ 포장지,편지봉투,우편봉투,기타봉투 등 봉투류 ○ 스케치북,도화지,화선지 등 회화용지류 ○ 일기장,수첩 등 기록장 ○ 색종이,견출지,색메모지 등 × 학습자료 인쇄 및 복사비 ⇒ 기타서비스(8720) × 명함,청첩장 등 인쇄물 ⇒ 기타 인쇄물(5440) × 앨범 ⇒ 기타문구류(5455)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문구류 ₩ 구분이 곤란한 단체구입 학습준비물이라도 구분가능한 품목은 개별품목으로 분류 ○ 지우개,풀,자,칼,잉크 등 ○ 파일,화이트보드,알림판,도장,인주,집게,책갈피,클립 ○ 투명테이프,문구용 스티커,압정 등 ○ 필통,졸업장통,붓통 등 ○ 사진첩(빈 앨범),명함첩,문서정리박스,포장지 등 ○ 흑판,백묵,철판지우개 등 ○ 수정테이프(화이트),바인더 등 ○ 기타단체구입 학습준비물 비용 등 × 트라이앵글,캐스터네츠,탬버린 등 ⇒ 악기(5120) × 관제엽서와 우표 ⇒ 우편 서비스(4910) × 명함,청첩장 등 인쇄물 ⇒ 기타 인쇄물(5440)	
5480-5490	단체여행비		◆ 여행관련 품목이 패키지로 구성되어 항목별 분류가 불가능한 단체 여행비	
5480	국내단체여행비	S	◆ 여행상품 등 분리가 불가능한 단체 여행비 ₩ 교통비,숙박비 등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 단체국내여행비 ○ 단체성지순례비 ○ MT비,학원 등의 여행비 × 숙박비 및 교통비 등 분리가 가능한 경우 각 해당항목으로 분류	
5490	국외여행비	S	◆ 국외여행패키지 등 분리가 불가한 해외여행경비 ○ 숙박비, 항공요금 등 외국에서 소비한 모든 비용 ○ 해외여행비, 성지순례비 등 ○ 해외여행만을 위해 적립하는 적립금 ○ 여행가이드 비용 및 팁 × 여행사에 대한 수수료 등(분리가 불가한 경우 포함)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6010-6740	10. 교육			
	정규교육		◆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비용 ◆ 교재, 문구, 스쿨버스, 학교급식 및 기숙시설이용비용, 가정교사 및 개인에게 수강하는 그룹과의 등은 제외. 인터넷 및 방송통신교육은 포함 ◆ 교육부문에서 '학생'은 유치원, 초·중·고의 재학생 및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재수생임 ◆ 대학생 및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성인교육에 포함됨 ◆ 정규교육기관에서 받은 수업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 ㉠ 학교운영지원비 포함 ※ 납입금 =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정규교육기관 : 국·공·사립, 외국인학교, 특수학교 및 인가·비인가 대안학교 등으로 부터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포함 × 학교의 냉·난방비 ⇒ 기타연료(4745)비 × 개인교사(그룹과의 등) ⇒ 개인과의비(6500) × 학교급식비 ⇒ 단체제공식(7540)	
6010-6020	초등교육		◆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교육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6010	유치원	S	◆ 초등학교 입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 및 돌봄에 대한 비용 ○ 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 어린이집, 놀이방 등 이용료 ⇒ 보육료(8230) × 단체급식 ⇒ 단체제공식(7540) × 우유급식비 ⇒ 우유(1210)	
6020	초등학교	S	◆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 초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 후 특별활동 등의 지도 ⇒ 학교보충교육비	
6030-6040	중등교육		◆ 정규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교육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6030	중학교	S	◆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 중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 자율학습비 ⇒ 학교보충교육비(6710)	
6040	고등학교	S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 자율학습비 ⇒ 학교보충교육비(6710)	
6050-6080	고등교육		◆ 2년제 대학이상 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서비스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6050	전문대학	S	◆ 고등교육법에 의해 지정된 고등교육기관중 4년제 미만의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국·공립 및 사립 구분없음 ○ 전문대학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6060	국공립대학	S	◆ 고등교육법에 의해 지정된 국공립 고등교육기관중 4년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4년의 과정을 조기에 졸업한 경우도 포함 ○ 국공립대학 입학금, 기성회비 및 수업료 ○ 방송통신대학 포함	
6070	사립대학	S	◆ 고등교육법에 의해 지정된 사립 고등교육기관중 4년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사이버대학 및 4년의 과정을 조기에 졸업한 경우도 포함 ○ 사립대학 입학금, 기성회비 및 수업료 ○ 원격(사이버)대학, 사내(社內)대학 등	
6080	대학원	S	◆ 고등교육법에 의해 지정된 고등교육기관중 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국·공립 및 사립 구분없음 ℥대학원대학도 포함 ○ 대학원 입학금, 기성회비 및 수업료 ○ 계절학기 수강비용 포함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6100-6500	학원 및 보습 교육		◆ 학생이 정규교육과정에 동일한 교육내용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 등을 위한 학습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 ㉮ 2개 이상의 병행과정은 시간배정이 많은 교육으로 분류 ㉮ 교재비 ⇒ 오락문화 서적에서 각 해당항목에 분류 ㉮ 방과 후 학교에서 실행되는 교육 ⇒ 학교보충교육비(6710)	
6100	입시 및 보습	S	◆ 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진학을 목적으로 정규교과과정 중에서 음악, 미술 및 체육과정을 제외한 학원에서 수강하는 과정 ㉮ 교재비는 분리하여 학습교재에 포함 ㉮ 재수생, 취학전아동도 포함 ㉮ 인터넷 학원 및 인터넷 강좌도 포함 ○ 입시논술학원 및 입시면접학원 등 ○ 입시영어, 입시중국어, 입시일어 등 ○ 토플, 토익, 텡스 등 시험전문학원 수강 ○ 검정고시 등 학력검정을 위한 학원 포함 ○ 유학준비학원 수강 ○ 회화 및 리스닝전용 학원비 ○ 공부방, 영어유치원 등 × 학원이 아닌 곳에서의 개인이 수행하는 과외 및 그룹 과외 ⇒ 개인과외비(6500) × 음악, 미술, 체육은 각각 아래에 분류	
6150	음악학원	S	◆ 피아노학원, 바이올린, 첼로 등 음악관련 학원에서 받은 보충교육(입시교육 포함) ㉮ 학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 해당 항목에 분류 ○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성악 등 서양악기 ○ 북, 장구, 가야금, 창 등 국악 × 피아노 등 악기를 학원이외의 장소에서 개인으로부터 받는 교습 ⇒ 개인과외비(6500) × 학생 및 입시자가 아닌자의 음악관련 교습 ⇒ 문화강습(5350)	
6200	미술학원	S	◆ 미술학원 및 서예학원 등으로부터 받은 보충교육(입시교육 포함) ㉮ 학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 해당 항목에 분류 ○ 입시를 위한 미술학원, 수채, 유화, 조각, 종이접기 등 ○ 서예학원 포함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6250	운동학원	S	× 미술을 학원이외의 장소에서 개인으로부터 받는 교습 ⇒ 개인과외비(6500) × 학생 및 입시자가 아닌자의 미술학원교습 ⇒ 문화강습(5350) ◆ 태권도, 유도, 축구 등 학원 또는 방과후 과정에서 받은 스포츠 교육비(입시교육 포함) ℥수영장 이용료 및 강습료와 같이 분리가능한 비용은 분리하여 각각 해당품목으로 분류 ○ 태권도, 합기도 ○ 검도, 권투, 유도 등 운동관련의 교육비용 ○ 축구교실, 야구교실, 승마교실, 골프교실, 수영교실, 탁구교실, 테니스교실 등 단체강습료 × 도복, 유니폼 ⇒ 운동복(2055) × 족도, 호구, 축구공, 야구공 등 ⇒ 운동용품(5240) × 강습없이 경기장을 이용하는 비용 ⇒ 운동시설이용(5305) × 승급 및 승단심사비 ⇒ 응시료(8620)	
6300	직업준비학원	S	◆ 학생이 컴퓨터,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하여 학원에서 받은 교육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무자동화 등 ○ 설계프로그램운영 등	
6350	방문학습지	S	◆ 방문교사의 지도서비스가 병행되는 학습지를 구입한 경우 ○ 학습지 및 서비스의 대가 × 학습지만 구입한 경우 ⇒ 서적의 해당항목에 분류	
6400	체험교육	S	◆ 정규교육기관이 아닌 개인 및 사설학원 등에서 교육을 목적으로하는 여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및 적립 ○ 현장학습, 영어마을, 과학마을 등 체험학습 ○ 방학기간 동안 특수훈련원, 예절학교 등 입소 × 해외연수비 ⇒ 국외연수비(6740) × 동반 교사가 없는 단순 견학 ⇒ 국내단체여행비 × 교사가 동반하더라도 정규교육목적이 아닌 단순 수련회 ⇒ 국내단체여행비(548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6450	기타학원교육비	S	◆ 위에 분류되지 않는 학생대상학원 및 시설에서 받은 ○ 블럭 등 아동발달 관련 학원 ○ 로봇 등 두뇌개발관련학원 ○ 마술 등 기타 취미오락 관련학원 ○ 리더십,웅변,입시면접학원 등 ○ 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 유아대상 학원교육 ○ 어린이집에서 보육이외에 교육을 위한 추가비용 지	
6500	개인과외비	S	◆ 학원 등의 기업에 속하지 않은 개인으로 부터 받는 ㉠ 학교 등에 소속된 자가 소속기관과는 별도의 개인 자격으로 가르치는 경우에도 포함 ㉡ 장소는 학생의 집이건, 가르치는 자의 집이건 불문 하며, 그룹으로 수행되더라도 교사가 개인자격인 경 우에는 포함 ○ 가정교사, 그룹과외 ○ 입시 및 보습교육 개인교습 ○ 예체능계교육 개인교습 등 × 개인이 아닌 학원강사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경우,개 인이 아닌 학습지 소속교사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경 우 ⇒ 입시 및 보습(6100)	
6610-6630	성인학원교육		◆ 대학생 이상의 일반인이 직업,어학능력향상 등을 위 해 수강하는 교육 × 요가,스포츠댄스 등 독립강사에 의한 레크레이션 ⇒ 문화강습(5350) × 운전면허 등의 면허취득을 위한 비용 ⇒ 운전교습비 (4755)	
6610	성인직업학원	S	◆ 일반인(학생이외의 자)이 직업유지,개인발전 및 새 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개인부담 또는 국가부담으 로 컴퓨터, 미용, 조리학원 등에서 받은 교육에 대한 ○ 대학원 및 타대학 편입을 위한 학원수강 ○ 간호,컴퓨터,부기,요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수 ○ 캐드,컴퓨터 등 직업유지를 위한 학원교육 ○ 레크레이션, 댄스 등 각분야에 강사가 되기 위한 전 문교육 ○ 중장비, 지게차 등 기계운영면허를 위한 수강 × 직장자체 교육은 포함되지 않음 × 학생의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 ⇒ 직업준비학원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6620	외국어학원	S	◆ 일반인(학생이외의 자)가 영어,일어 및 중국어 등의 외국어회화 및 취업 및 유학 등을 위한 시험성적제출 등을 위한 강습료 ㉪ 통신(전화,인터넷등)교육 포함 ○ 영어회화,일어회화 등 ○ 전화 및 인터넷 강의 포함 ○ 토플,토익,텡스 등 시험 전문학원 × 학생의 영어교육 ⇒ 입시 및 보습(6100) × 콘텐츠 전문 사이트에서 교육콘텐츠만 받은 경우 ⇒ 콘텐츠(5355)	
6630	운동 및 교양 교육	S	◆ 학생아닌 성인 대상의 예술 및 운동을 위한 강습에 따른 비용 ㉪ 교양의 문화강습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학원중심의 교육 ○ 피아노,바이올린,첼로,클라리넷,성악 등 서양악 ○ 북,장구,가야금,창 등 국악 ○ 수채,유화,조각,서예,종이접기 등 미술학원교육 ○ 양재,편물,꽃꽂이 등 전문학원교육 ○ 태권도,합기도,검도,권투,스케이팅,스키,수영 등 운동 관련의 교습료 × 학생에 대한 강좌 ⇒ 운동학원(6250) ⇒ 미술학원(6200) × 각종 교양강좌 ⇒ 문화강습(5350)	
6710-6740	기타교육		◆ 위의 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훈련 및 연수서비스	
6710	학교보충교육비	S	◆ 방과 후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해 납입하는 비 ○ 유치원,초중고에서 실시하는 보충교육 및 자율학습 에 대한 비용	
6720	평생교육원	S	◆ 평생교육시설 및 등급이 분리되지않는 기타정규학교 에서 받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 평생교육시설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 고된 시설과 대학부설 등의 시설 ○ 평생교육원 등 ○ 학교부설,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 등 부설형태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6730	국내교육연수	S	× 학점이 인정되는 사설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 각 학원에 분류 ◆ 정규교육기관의 교육을 목적으로하는 여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및 적립금 ○ 소풍, 수학여행, 졸업여행 ○ 현장학습 등 정규교육기관의 체험학습 × 해외연수비 ⇒ 국외연수비(6740) × 동반 교사가 없는 단순 견학 ⇒ 국내단체여행비 × 교사가 동반하더라도 정규교육목적이 아닌 수련회 ⇒ 국내단체여행비(5480)	
6740	국외연수비	S	◆ 3개월미만 해외연수의 경우 ㉠ 해외연수시 소요되는 기타제경비포함 ㉠ 학교, 개인구분없음 ○ 국외어학연수비(해외연수시 소요되는 기타제경비포함) ○ 국외연수를 위한 적립금 ○ 추가송금액도 포함 × 3개월 이상 유학생에 대한 송금 ⇒ 국외학생 및 환자에 대한 송금(9200)	
7510-7720 11. 음식 · 숙박				
7510-7560	식사비		◆ 여타의 가공을 거치지않고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서비스 받는 데에 대해 지불하는 식사비용과 숙박시설제공 등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 여타의 가공을 거치지않고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물 및 식사를 위한 부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지불하는 비용 × 식품제조업자에 의해 제공된 식품을 제외	
7510	일반식당	S	◆ 일반식당(한식, 중식, 양식, 일식, 분식 등) 및 레스토랑에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지불하 ㉠ 한식, 양식, 분식, 뷔페 등의 식사형태 구분없음 ㉠ 전문주점이 아닌 음주에 대한 지출 ◆ 노점이 아닌 시설에서 간편하게 제공받는 음식관련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비용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7520	배달음식	S	○ 일반식당(한식,중식,양식,일식,분식 등) ○ 고속도로 휴게소, 마트내 식당 등의 구입 ○ 김밥,어묵,족발,순대,떡볶이,일반만두,튀김류 등 ○ 결혼,장례,돌잔치,칠순 등 식당음식비 등 ○ 각종 레스토랑 및 패밀리레스토랑 식사서비스 × 전문주점 ⇒ 주점·커피숍(7560) ◆ 일반식당 등에서 조리된 음식을 가정에서 주문하는 ○ 치킨,피자,중식, 한식(야식포함) ○ 족발, 막국수 등 주문음식 ○ 배달되는 국,반찬,김밥,도시락 등에 지출하는 비용 ○ 출장 뷔페,폐백,젓상,돌상 등 외부조리음식 ○ 뷔페 등의 업체에서 제공하는 출장음식 서비스 ○ 기타 배달되어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구입 × 할인점,휴게소,유원지 등의 구내 음식점 등 ⇒ 일반식당(7510) × 업체가 아닌 개인을 고용한 경우 ⇒ 가사사용인 급료(3920)	
7530	이동식 음식점	S	◆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건물내부가 아닌 노변시설에서 구입한 음식 ○ 포장마차,호떡,호두과자,어묵,국화빵,붕어빵 등 ○ 떡볶이,이동식 차,구운 오징어,구운 쥐치 등 ○ 순대,족발 등 ○ 찢개, 닭꼬치,떡볶기 등 로변에서 구입한 음식 ○ 기차,선박 등에서 구입한 음식비 ○ 군밤,군옥수수,찜옥수수 등 ○ 토스트,샌드위치 등 × 일반음식점에서 구입한 순대,닭꼬치 등 ⇒ 일반식당(7510)	
7540	단체제공식	S	◆ 일반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학교 및 직장 등의 구내식당 등에서 구입하는 식사에 ㉮정액지급 및 후불식 포함 ○ 직장의 구내식당 ○ 학교단체급식 ○ 일정금액을 각출부담하는 경우의 부담액 × 환자에게 제공되는 병원식 ⇒ 병원입원치료비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7550	패스트푸드	S	◆ 간편한 조리로 신속한 서비스를 하는 음식점 ○ 햄버거, 음료, 감자튀김 등 구입 ○ 점심세트, 어린이세트 등 구입 ○ 닭튀김(치킨) 및 도넛의 구입	
7560	주점 · 커피숍	S	◆ 일반주점, 호프, 나이트클럽, 커피숍, 다방, 생과일주스 전문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술, 음료와 더불어 식사를 제공받는데에 지불한 비용 ₩ 술안주, 유흥비, 팁 포함 ○ 테이크-아웃 커피숍 포함 ○ 커피숍, 다방 등에서의 음료 및 음주비용 ○ 호프집, 나이트클럽 등에서의 음료 및 음주비용 × 일반식당, 포장마차 등에서의 음료 및 음주 ⇒ 일반식당(7510) ⇒ 이동식 음식점(7530)	
7710-7720	숙박비		◆ 호텔, 모텔, 여관, 장 등의 숙박전문시설과 민박, 홈스테이 등 타가구에 숙박시설제공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	
7710	호텔, 여관, 콘도	S	◆ 호텔, 모텔, 여관(장급 포함), 여인숙, 콘도 등 숙박시설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비용 ○ 호텔, 모텔 ○ 여관, 여인숙 ○ 콘도, 유스호스텔, 리조트	
7720	기타숙박시설	S	◆ 호텔, 모텔, 여관(장급 포함), 여인숙, 콘도 이외의 숙박시설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비용 ○ 산장, 방갈로, 오두막, 민박, 펜션 ○ 고시원, 청소년수련원, 임해수련원, 기숙사, 하숙비 등 × 찜질방, 사우나(취침) ⇒ 목욕료(8005) × 주간에 학습을 위해 이용하는 고시원 ⇒ 독서실 ※ 기숙사비, 하숙비 등의 숙박시설요금도 포함	
8005-8730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8005-8015	이미용서비스		◆ 위의 타 분류에 분류되지 않는 이미용서비스, 장신구, 보험, 사회보호 등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 이미용 개인정비 관련 서비스	
8005	목욕료	S	◆ 공중목욕시설을 이용하고 지출한 금액 ₩ 때밀이 등의 서비스요금도 포함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8010	이미용료	S	○ 목욕료,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 간이목욕시설 이용료 등 ○ 때밀이,찜질방 옷대여료 등 포함 ◆ 이발소 또는 미용실을 이용하고 지출한 비용 ₩ 안마료,맛사지료 등의 서비스요금도 포함 ○ 이발료,면도료,드라이비용 등 이용실 이용료 ○ 컷트,파마,세팅,염색 등 미용실 이용료	
8015	기타이미용 서비스	S	◆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이미용서비스 ○ 가발대여,동전드라이어 등 이미용품대여료 ○ 전기면도기,전동치솔 등 이미용품수리비 ○ 팩,안마,지압,마사지 등 이미용서비스 ○ 네일아트,문신,영구화장,비만관리실 등 기타 이미용 서비스 ○ 닥터피쉬 등 이미용서비스 × 병원에서의 안마,지압,마사지 ⇒ 기타보건의료서비스 (4140)	
8020-8020	이미용 기기		◆ 이미용 개인정비 관련 전기상품	
8020	이미용기기	SD	◆ 전기를 이용한 이미용기구 ○ 전기면도기,전동치솔 등 ○ 헤어드라이어,전기고대기,파마기,스타일빔 등 ○ 미용사우나기,족욕기 등 ○ 화장품냉장고 등 기타이미용기기 × 안마기 등 ⇒ 기타보건의료기구(4090)	
8025-8090	위생 및 이미용 용품		◆ 위생,이미용에 관련된 상품의 구입비용 ₩ 어른용,아동용 구분없음 ₩ 치료가능이 주인 제품은 약품으로 분류	
8025	치솔	ND	◆ 치약과 더불어 사용되는 비전동 구강위생 용구 ○ 치솔(일회용도 포함) ○ 영유아용 치솔 포함 × 전동치솔 ⇒ 이미용기기(8020) × 치실,세면용구세트 ⇒ 기타이미용용품(809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8030	치약	ND	◆ 칫솔과 더불어 사용되는 구강위생(口腔衛生)의 용구 ○ 치약(휴대용,일회용 등) × 약국에서 구입하는 치료용 치약 ⇒ 판매양약(4020) × 세면용구세트,구강세정제 ⇒ 기타이미용용품(8090)	
8035	세면비누	ND	◆ 목욕용,세안용인 고체비누 ㉠ 비누곽은 제외 ○ 화장비누(휴대용,일회용 등) × 세면용구세트 ⇒ 기타이미용용품(8090) × 약국에서 구입하는 치료용 화장비누 ⇒ 판매양약 × 비누곽 ⇒ 세탁·청소용구(3820)	
8040	샴푸 및 린스	ND	◆ 일반적으로 액체,크림 상태의 세발용,목욕용 샴푸 및 린스 ○ 샴푸(휴대용,일회용 등) 등 ○ 헤어린스,헤어컨디셔너,헤어영양제 등 ○ 바디클렌저,바디샴푸 등 × 약국에서 구입하는 비듬제거용 샴푸 ⇒ 판매양약 × 두발용 화장품(스프레이,무스,파마약 등) ⇒ 화장품(8050)	
8045	화장지	ND	◆ 일회용 화장지,티슈 등 종이용품 ○ 두루마리 화장지 ○ 일회용 냅킨,물티슈,종이수건 ○ 키친타올,일회용 행주 등	
8050	화장품	ND	◆ 크림,로션 등 화장하는 데 쓰이는 모든 것 ㉠ 기능성 화장품 및 화장품세트 포함 ○ 기초화장품 - 화장수:스킨로션,바디로션,밀크로션 등 - 크림류:썬크림,핸드크림,영양크림,쿨드크림,크린싱크림,폼크린징 ○ 메이크업화장품 - 가루분:파운데이션,컴팩트,트윈케익 등 - 입술연지:립스틱,볼연지 등 - 눈썹연필:마스카라,아이샤도우 등 - 미조료(美爪料):메니큐어 등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8090	기타이미용용품	ND	○ 두발화장품 - 헤어로션, 헤어크림 (무스), 헤어스프레이, 포마드, 헤어에센스 등 ○ 남성화장품 - 셰이빙 크림, 애프터 셰이빙 로션, 남성 로션 · 크림 ○ 베이비오일, 베이비로션, 향수, 팩 ○ 피부보호크림, 트러블피부 전용크림 등 × 아기용분 ⇒ 보건의료 소모품(4060) × 세발용, 목욕용 샴푸 및 린스 ⇒ 샴푸 및 린스(8040)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이미용용품 ○ 때수건, 비누치약세트, 비누샴푸세트, 반신욕 관련 기구 등 세면용구세트 ○ 가발, 머리깎는 가위, 빗, 브러쉬, 샴푸모자 등 ○ 면도기, 면도날, 1회용 면도기, 손톱 및 발톱손질기구 ○ 귀이개, 족집게, 면봉, 치실, 화장솜, 미용소금, 목초액(세면용), 구강세정제 ○ 아기용 냅킨 ○ 머리염색약, 털제거파스 등 ○ 파마용품, 파마약, 파마종이 등 기타이미용용품 × 여성청결제, 발모제 ⇒ 판매양약(4020)	
8110-8130	시계 및 장신구		◆ 시계, 장신구의 구입에 대한 지출	
8110	손목시계	D	◆ 휴대용 시계 ○ 손목시계 ○ 목걸이시계, 반지시계, 허리에 차는 시계, 회중시계 등 ○ 시계줄, 시계건전지 등 관련부품 × 벽걸이 시계 ⇒ 장식용시계(8120) × 금목걸이시계, 금반지시계 ⇒ 귀금속 구입(9560)	
8120	장식용시계	D	◆ 장식용 시계 ○ 벽시계, 탁상시계 등 × 손목시계 ⇒ 손목시계(8110)	
8130	장신구	D	◆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장신구 및 그 부품 ⌘ 금, 귀금속, 보석류는 제외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8140-8210	기타개인용품		○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모조장신구 ○ 브로치 등 의류장신구 ○ 휴대폰, 컴퓨터, 게임기, MP3 등의 제품 보호 커버 ○ 지갑, 열쇠집 등 소지품류 ○ 넥타이 핀 등 기타신변용품 × 장식용 금, 귀금속 및 보석류 ⇒ 귀금속 구입(9560) × 금연용품(금연담배, 금연초 등) ⇒ 보건의료 소모품(4060)	
8140	가방	D	◆ 가방류, 우산 등 신변용품의 구입 및 서비스에 대한 ◆ 물건을 넣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한 별도로 구입한 제품 ○ 가방, 트렁크, 서류가방: 물건을 넣어 들고 다니게 만든 용구 ○ 핸드백 ○ 어깨에 매는 가방, 여행용가방, 서류가방, 신발주머니, 기저귀가방, 아트백 등 × 골프백, 아트백, 낚시백, 등산백 등 일괄구매된 제품 ⇒ 해당제품에 분류 × 종이백 ⇒ 기타가사소모품(3890) × 악기케이스 ⇒ 악기(5120)	
8150	종교용품	D	◆ 염주, 목주 등의 신앙생활을 위한 주된 용품 Ⅱ 타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십자가, 염주, 목탁 ○ 예수상, 성모상, 불상 ○ 미사포 등 기타종교용품 × 종교관련 책 ⇒ 기타서적(5425) × 종교반지(귀금속 제외) ⇒ 장신구(8130)	
8160	혼례 및 장제례용품	D	◆ 장례 및 제례관련 비용중 장소임차료와 식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 ○ 관, 비석, 상석, 납골단지 등 ○ 상여, 조등(弔燈) 등 ○ 목기(제기), 향로, 칠성판, 받침대 등 ○ 수의, 수시복, 수시포, 상복, 당건 등 예(禮)관련품 × 병풍 ⇒ 기타실내장식품(3120) × 식장 임차료 등 관련 서비스 ⇒ 혼례 및 장제례비 × 식사비 ⇒ 일반식당(7510) × 식 진행사례비 ⇒ 가사사용인 급료(392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8190	기타 개인용품	D	◆ 위에 분류되지 않은 개인용품 ○ 파이프,라이터,재떨이,케이스 등 담배관련용품 ○ 우산,양산,부채 등 ○ 유아이동통제용 끈,유모차,요람,아기바구니 ○ 썬글라스,지팡이 ○ 전기충격기,가스분사기 등 호신용품 ○ 명패(이름표),문패,국기 ○ 학생용 이름표,각종 뱃지 등 ○ 손거울,헤어밴드,머리핀 등 리본류 × 고글,등산용 지팡이,비치파라솔 ⇒ 운동용품(5240)	
8210	개인용품서비스	S	◆ 장신구의 수리비(가공임도 포함),임차료,세탁비 등 서비스 ○ 시계,우산 수리비 등 장신구수리비 ○ 귀금속대여 등 장신구임차료 ○ 귀금속세척 등 장신구세척비 ○ 귀금속 및 장신구의 리모델링 및 수공비	
8220-8290	사회복지		◆ 가구에서 가족 및 가구원의 복지를 위해 탁아,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지출 ☞ 여러가구가 일정경비(실버타운입소비 등) 조달을 위해 돈을 모아보내는 경우 각 가구부담금 만큼 가구별로 소비지출처리	
8220	산후조리원	S	◆ 병원병설 및 개인운영 구분없음 ○ 산후조리원 × 개인 산후조리사 ⇒ 가사사용인 급료(3920)	
8230	보육료	S	◆ 취학 전 아동의 보육을 위해 지불하는 지출 ○ 놀이방,어린이집 등 탁아시설 보육료(가구외보육) × 방과 후 공부방 ⇒ 입시 및 보습(6100) × 베이비시터 등 개인을 고용한 경우 ⇒ 가사사용인 급료(3920) × 어린이집에서 음악,외국어 등의 교육을 위한 추가지출 ⇒ 기타학원교육비(6450)	
8290	기타사회복지	S	◆ 가구원이 해당시설에 입소하여 치료 받는 서비스 이 ○ 노인(대학) 교실,노인,환자 등의 휴양소 이용료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8310-8340	보험		○ 요양 및 회복센터 등의 복지시설 이용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이용료 ◆ 보험료는 명칭에 따라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즉, 주거관련보험, 건강관련보험, 운송관련보험 등)으로 나뉨.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은 분리하지 않고 주위험을 보장하는 것에 분류함	
8310	생명보험	S	◆ 질병, 사망에 따른 보상 등 ○ 생명보험, 상해보험 ○ 질병보험, 사망보험(장례서비스 제공보험 포함) ○ 직장단체보험 ○ 양로보장 등	
8320	화재보험	S	◆ 화재로 말미암은 손해를 보충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아파트관리비의 화재보험료 포함 ○ 주택(아파트 등) 화재보험료 ○ 기타 화재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	
8330	연금보험	S	◆ 향후 일정 계약조건이 만족되면 일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보험 ○ 개인연금보험 ○ 교육보험 등	
8340	운송관련 보험 등	S	◆ 운송기구(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보험을 목적으로 하고 그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자동차 관련된 모든 보험 ○ 개인운수장비 관련보험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여행자보험 ○ 수화물보험 등 기타보험	
8400-8400	기타금융		◆ 보험업 이외에 금융관련수수료 등 지출	
8400	금융수수료	S	◆ 은행 등 금융관련의 송금 등 수수료 ※ 제2 및 사금융권에서의 대출관련도 포함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8510-8730	기타서비스		○ 신용카드연회비 ○ 은행수수료, 환전수수료 ○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에 대한 수수료 ○ 채권할인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관련 등 위약금 × 부동산 관련 대출을 위한 담보설정관련 법무사수수 ⇒ 자가관련 부동산수수료(8510) ⇒ 기타부동산 수수료(8520) ◆ 위의 모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소비지출	
8510	자가관련 부동산수수료	S	◆ 자기소유가구의 거주주거관련 부동산 매매 등 위한 수수료 ○ 부동산관련 법무사, 세무사 수수료 ○ 부동산중개, 경매대행, 공매대행 수수료 ○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감정수수료 ○ 채권할인수수료 등 관련 수수료 × 채권구입 ⇒ 유가증권 구입(9540) × 부동산 이외의 수수료 ⇒ 일반수수료(8610)	
8520	기타부동산 수수료	S	◆ 부동산의 임대 및 임차 등을 위한 수수료 ○ 부동산관련 법무사, 세무사 수수료 ○ 부동산중개, 경매대행, 공매대행, 등록대행 등 ○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감정수수료 ○ 채권할인수수료 등 관련수수료 ○ 전세권등기수수료 ○ 토지측량 및 필지분할 등에 따른 수수료 × 부동산 이외의 수수료 ⇒ 일반수수료(8610) × 채권구입 ⇒ 유가증권 구입(9540)	
8610	일반수수료	S	◆ 법률 등 사무처리와 관련된 대리행위에 대해 지출하 는 비용 및 기타업무처리 등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비용 ○ 변호사, 법무사, 대서소 ○ 행정사, 세무사, 노무사 등 법무 및 행정수수료 ○ 주민등록증, 등초본, 여권(비자) 등의 발급비용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 각종 면허증 발급,차량 등 등록대행 수수료 ○ 카드사용내역 통지 수수료 ○ 진단서,입원,성적,재학 등 증명서발급 수수료 ○ 기타 증명서발급 및 대리행위에 대한 보수 × 은행수수료 ⇒ 금융수수료(8400) × 부동산관련 법무사 등에 대한 수수료 ⇒ 자가관련 부동산수수료(8510) ⇒ 기타부동산 수수료(8520)	
8620	응시료	S	◆ 각종 시험응시 및 그에 따른 신체검사 및 원서비용 ○ 시험응시료,논문심사비,진학원서비,운전면허 응시료 ○ 각종 자격시험응시료,신체검사비용 ○ 대입응시료,취직원서대,IQ검사료 등 ○ 태권도 등 승단(급)심사비 ○ 시험접수를 위한 수입인지 및 증지	
8710	혼례 및 장제례비	S	◆ 혼례,장례,제례시 장소를 임차하거나,묘지,납골당 등의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장소임차비 ○ 굴토,봉분 만들기,화장장 비용(팁 포함) 등 ○ 묘지관리·이장·별초비용,납골당의 봉안 및 관리비 × 드레스 및 상복 등 임차 ⇒ 기타의복관련서비스 × 묘지관리비용,이장비용,별초비용,족보제작,납골당비용 등을 위해 종중 등에 공동부담금 납부 ⇒ 비영리 단체로 이전 × 묘지구입(부동산) ⇒ 부동산 구입(9550) × 돌,회갑 등을 위한 각종 실내장식비용 ⇒ 기타실내장식품(3120) × 결혼(피로연),장례,폐백,젓상,돌상 등 관련 준비시킨 음식비 ⇒ 배달음식(7520) × 상호 예단비 ⇒ 자산 이전(9990) × 관,비석,납골단지 등 구입 ⇒ 혼례 및 장제례용품 × 각종 예식(禮式)진행사례비 ⇒ 기타가사서비스 × 함값 ⇒ 교제비(9170)	
8720	기타 서비스	S	◆ 기타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 ○ 기타직업 알선,중매,입양비용 ○ 사설탐정,보디가드,결혼 카운슬러 등 ○ 컨설팅,직업알선,맞선 등 상담서비스료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8730	유흥비	S	○ 신문,생활지 등에 알림광고 ○ 복사,코팅,제본,포장비 등 ○ 점성가,사주(점),이름짓기,부적 등 ○ 정보이용료,전화번호안내 ○ 기타 위에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 × 증여금,회비 및 기부금 등 ⇒ 회비 및 기타기부금 × 공적사무를 제공받고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 일반수수료(8610) ◆ 유흥관련 종사자로부터의 서비스에 지불하는 팁을 포함한 비용 ○ 유흥종사자의 서비스에 대한 팁 등의 비용 × 주점, 나이트클럽 입장료 ⇒ 주점·커피숍(7560) × 노래방비 ⇒ 노래방 이용(5310)	
9010-9420 비소비지출				
9010-9050	경상조세		◆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등 공적 비소비지출 및 가구 간이전,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등의 사적 비소비지출 ◆ 가게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경상적 이전 ℥ 자산의 이전은 기타지출에 분류함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로 경상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 주된세금에 추가되는 종된 세금(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소득할 주민세 등)은 주된 세금에 따라 경상과 비경상 여부 결정	
9010	경상소득세		◆ 개인의 경상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분할납부의 경우는 분리하여 조사가능 ○ 근로소득세 ○ 주민세 등 소득세 부가세금 ○ 배당소득세	
9020	사업소득세		◆ 개인사업자 중 소득세 원천징수자의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 분할납부의 경우는 분리하여 조사가능 ○ 사업소득세 - 원천징수분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9030	경상재산세		◆ 토지 및 주택소유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부과되는 조 ○ 재산세 - 부가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 등 - 주택(1/2), 건축물 등(7월16일~7월 말일) - 주택(1/2), 토지(9월16일~9월 말일) ○ 종합부동산세: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 종합부동산세(12월1일~12월17일) ○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 재산세 부가 세금 × 자동차의 취득 및 등록세 ⇒ 기타비경상세금(9100) ×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세 ⇒ 부동산취득 관련세	
9040	자동차세		◆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자동차세 선납(1월중, 3월중, 6월중, 9월중) ○ 자동차세(상반6월16일~6월30일, 하반12월16일~12월31일) ○ 지방교육세 등 자동차세 부가 세금 × 자동차의 취득 및 등록세 ⇒ 기타비경상세금(9100)	
9050	기타경상세금		◆ 기타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경상활동에 따른 조 ○ 주민세: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 - 균등할(8월16일~8월31일) - 소득할:근로자(매월),자영자(5,11월) ⇒ 경상소득세(9010) ○ 총포 등 면허세 × 주된 세금에 부과되는 종된 세금은 주된 세금에 분류 × 등록시 지불하는 부가세 등은 법무사의 부가세이므로 제외됨 × 광업권,어업권 등 사업 면허세 등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의 세금은 포함되지 않음	
9060-9100	비경상조세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로 비경상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 주된세금에 부과되는 종된 세금(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소득할 주민세 등)은 주된 세금에 따라 경상과 비경상 여부 결정	
9060	비경상소득세		◆ 개인의 비경상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 퇴직소득세 ○ 이자소득세 ○ 경품 및 복권 등에 당첨한 후 납부하는 소득세 등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9070	비경상재산세		◆ 비경상적 재산거래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 상속세:사망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 증여세:증여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	
9080	부동산취득 관련세		◆ 주택 및 부동산 구입에 따라 소요되는 취득세,등록세 및 부가세금 ○ 취득세 ○ 등록세 ○ 교육세,농특세 등 부가세금 ○ 수입인지 및 증지 등 인지세 포함 × 부동산구입 및 응시 이외에 구입한 인지 및 증지 ⇒ 기타비경상세금(9100) × 시험을 위한 인지 및 증지 ⇒ 응시료(8620)	
9090	과징금		◆ 가구가 정부에 세금이외에 부담하는 부담금 등 『이용에 대한 대가의 지출이 아닌 강제적 의미의 부 ○ 수익자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 소유가구) 등 ○ 과태료,자동차범칙금,강제부담금,벌금 등 ○ 위반차량 견인 및 보관료 포함 × 물 이용부담금 ⇒ 상수도료(2810) × 인터넷,휴대폰 등 해지위약금 등 ⇒ 각각의 이용료에 포함	
9100	기타비경상세금		◆ 기타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자산구입 등의 활동 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조세 ○ 비경상소득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기타비경상세금 ○ 부동산구입목적 이외의 수입인지 및 증지 등 인지세 × 부동산구입에 따른 인지 및 증지 ⇒ 부동산취득 관련 세(9080)	
9110-9120	연금		◆ 각종 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연금보 사회보장성격을 가진 법률에 기초하여 납입하는 사 회보험료	
911	국민연금 기여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급여하는 연금제도 ○ 국민연금보험료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9120	기타연금 기여금		◆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하는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관리공단에 납입하는 군인연금 ○ 사립학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납입하는 사립학교 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등 × 개인연금저축,기업연금 ⇒ 저축 및 적금(9520)	
9130-9140	사회보장		◆ 각종 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연금보 사회보장성격을 가진 법률에 기초하여 납입하는 사 회보험료	
9130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없음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140	기타사회보험료		◆ 건강보험료 이외의 사회보험료 ○ 고용보험(실업보험)료 납부 ○ 산재보험 등 기타사회보험료	
9150-9160	이자비용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이전적 성격의 비소비지	
9150	주택대출이자		◆ 주택을 구입 또는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주택 또는 토 지를 담보하고 차입한 금전에 대한 지불이자 ○ 주택담보대출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등 금융비용	
9160	기타이자		◆ 주택이외에 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전에 대한 지불이자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월부 및 외상에 대한 이자,카드연체이자 등 ○ 대출금이자,중도상환수수료 등 이자성 비용 ○ 기타부채에 대한 이자,보증채무에 대한 이자 등 × 지급이자가 분리되지 않는 부동산대출상환금 ⇒ 부 동산대출상환(961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9170-9220	가구간 이전 지출		◆ 생활비 및 용돈 수준의 가구간 이전	
9170	교제비		◆ 친지,친구 등과 사교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 및 기타 일회성 지출 ㉫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진 회비는 해당항목으로 분 (예) 여행,부모님 의료비분담 등 ○ 입학,졸업,승진,질병위문 등 축하 및 위문금 ○ 세배돈,타가구원에 대한 용돈 등 ○ 도박에서 잃은 돈, 분실한 돈 ○ 함값 × 재산상속(재산분배)금,전별금,지참금 ⇒ 자산 이전(9990) × 종교단체 기부금 ⇒ 종교기부금(9410)	
9180	경조비		◆ 축의,조의 등 다른 가구의 애경사 행사시 금전으로 지출한 비용 ○ 결혼식,회갑연,칠순잔치 ○ 조의금 ○ 돌,생일축하금 ○ 기타 축조의금 지출 × 축하금 대신 구입한 금반지 등의 귀금속 ⇒ 귀금속 구입(9560) × 해당 가구의 혼례 및 장제례비 등에 지출한 비용 ⇒ 혼례 및 장제례비(8710)	
9190	국내학생가구 송금		◆ 국내에 거주하는 학생가구를 위한에 대한 경상적 지출 ○ 납입금,교재비,보충교육비 등 송금 교육비송금 ○ 하숙자취비,생활비,용돈,교통비,핸드폰요금 등 학생이 지출하는 모든 제반 비용 ○ 자동차구입,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비지출 보조를 위한 송금 × 별도가구(자녀 등)를 위한 주택 구입 ⇒ 부동산 구입(9550) × 별도가구(자녀 등)를 위해 주택 구입해서 주거나 전세금을 대준 경우 ⇒ 자산 이전(9990)	
9200	국외학생 및 환자에 대한 송금		◆ 3개월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학생 및 외국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에 대한 송금지출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9210	기타송금(국내)		○ 납입금,교재비,보충교육비 등 송금 교육비송금 ○ 하숙자취비,생활비,용돈,교통비,핸드폰요금 등 학생이 지출하는 모든 제반 비용 교육비관련송금 ○ 자동차구입,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비지출 보조를 위한 송금 × 국외 거주자를 위해 주택 구입해서 준 경우 ⇒ 자산이전(9990) ◆ 국내에 거주하는 비학생 가구의 소비지출을 보조하기 위한 경상적 지출 ○ 생활비,용돈의 정기적 송금 ○ 자동차구입,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비지출 보조를 위한 송금 ○ 양육비,이혼(별거)수당보조 등 가계보조 성격의 정기적인 이전 ○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실버타운비 등을 위한 친족 모 × 별도가구(자녀 등)를 위한 주택 구입 ⇒ 부동산 구입(9550) × 별도가구(자녀 등)를 위해 주택 구입해서 주거나 전세금을 대준 경우 ⇒ 자산 이전(9990)	
9220	기타송금(국외)		◆ 국외에 거주하는 비학생 가구의 소비지출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성격의 지출 ○ 자동차 구입보조,관혼상제비,의료비 등의 비경상(일회성)적인 보조성격의 송금 등 비경상적 송금보조 ○ 생활비 성격의 경상적인 송금 × 별도가구(자녀 등)를 위한 주택 구입 ⇒ 부동산 구입(9550) × 별도가구(자녀 등)를 위해 주택 구입해서 주거나 전세금을 대준 경우 ⇒ 자산 이전(9990)	
9410-9420	비영리단체로 이전		◆ 종교단체,정당,종중,사회운동단체,자생상조회 등으로 이전	
9410	종교기부금		◆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특정되지 않은 금액 ○ 현금,십일조,시주 등 ○ 성당건축 후원,교회건축헌금 등 × 여행목적의 성지순례비,종교시설 밖의 수련회 ⇒ 국내단체여행(5480) ⇒ 국외단체여행(549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고
9420	회비 및 기타 기부금		◆ 노조,종중,상조회 등 비영리단체에의 회비 ○ 친목회비,상조회비,동창회비,등산회비,사우회비,찬조회비,자모회비,노조비 등 ○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종중에 대한 납 ○ 반상회비,반상회 불참비 ○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비용 거출, 학생회비 등 ○ 적십자회비,불우이웃돕기성금,자선단체기부금(비자발적 기부금 포함) 등 ○ 환경단체 및 정치단체(정당)에 대한 기부금 ○ 기타 사회시민단체에의 기부금	
9510-9990 기타지출				
9510-9590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 가계지출이외의 지출로서 현금으로 자산축적을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차입금 상환 등 부채의 감소를 위한 현금의 지출 ◆ 예금,저금의 예입,보험금불입,재산매입 등 자산형태의 변동으로 지출하는 것	
9510	저금		◆ 금융기관(은행,우체국,신용금고 등)에 보관을 위한 ○ 은행예금 ※ 저금은 '현금과 예금'으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을 항목 은행예금을 지출이라고 생각하는 가구를 위해 만든	
9520	저축 및 적금		◆ 금융기관(은행,우체국,신용금고 등) 및 목돈마련 계에 불입하는 금액 ○ 금융기관(은행,우체국,신용금고 등)의 예금,적금 불 ○ 기업연금,협약연금 등 ○ 계부은 금액 × 단순히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계) ⇒ 회비 및 기타기부금(9420) × MMF,CMA 등 유동성이 강한 저금 ⇒ 펀드(9540)	
9540	펀드		◆ 투자신탁금융 상품에 투입되는 자산 ○ MMF,CMA,ELF 등에 대한 지출 ○ 적립식 펀드, 테마형 펀드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9550	유가증권구입		◆ 유가증권(주식,채권,신탁 등)의 매입대금 ○ 유가증권(주식,채권,신탁 등)의 매입대금 ○ 주택 및 자동차 구입시 채권구입 × 부동산 구입관련 채권할인비용 ⇒ 자가관련 부동산수수료(8510) ⇒ 기타부동산 수수료(8520)	
9560	부동산 구입		◆ 주택 및 토지 등의 부동산 구입은 물론 증·개축비를 포함 주거면적을 확장하거나,벽,보,기둥 등을 변경하는 등 주거형태를 현저하게 바꾸는 공사를 하는 경우(대수 ○ 부동산(토지,주택 등) 매입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 주거용 콘테이너 설치, 옥탑방 증축 등 ○ 베란다확장, 비내력벽 제거 등의 주택의 증개축 작업 ○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를 위한 주택 구입 ○ 묘지 등 특수목적에 위한 구입 × 거주면적의 증가없는 수리 및 보수 ⇒ 설비·수리서 비스(2750) × 부동산(토지,주택 등) 취득세 ⇒ 부동산취득 관련세 (9080) × 부동산관련 법무사 등에 대한 수수료 ⇒ 자가관련 부동산수수료(8510) ⇒ 기타부동산 수수료(8520)	
9570	귀금속 구입		◆ 장식(반지,목걸이,귀걸이,팔찌 등)용 금,귀금속 및 보 석류 ㉮장기간 두어도 가치하락이 크지않는 귀금속 및 보 ○ 금,은 ○ 다이아몬드,루비,에메랄드 ○ 진주,사파이어 등 보석류 ○ 위의 보석류를 이용해서 만든 장신구 × 귀금속이 아닌 기념주화,메달 ⇒ 게임 및 취미용품 (5220) × 모조장신구 ⇒ 장신구(8130) × 도자기,동양화 등 미술품 구입 ⇒ 기타자산형태의 변 동(9590)	
9580	보증금 제공		◆ 임차보증금(전세,월세 등) 등 지급 ○ 전세 및 보증금,주택임차인의 보증금(타지 거주자녀 를 위한 것 포함)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9590	기타자산형태의 변동		○ 관리비에치금 ○ 휴대폰보증금 ○ 전화설치보증금, 교통카드예치금 등 각종예치금 ○ 마트봉투회수 담보금, 컵보증금 등 × 임대인(주인)의 임대(전세, 월세 등)보증금 내어줌 ⇒ 기타대출상환 및 전세금반환(9690) ◆ 위의 항목에 분류되지 않은 자산형태 변동으로 인한 지출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의 자산구입 ○ 남에게 빌려준 돈 ○ 착오지급된 급여나 출장비의 환불 등 정산금 등 ○ 수석, 도자기, 족자 등 ○ 동양화, 서양화, 조각, 부조, 서예, 족자, 병풍 등 (진품) ※ 미술적 가치나 귀금속 그 자체의 가치가 큰 상품	
9610-9690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 차입금 상환, 할부및외상으로 변제, 월세(전세)보증금 반환 등 부채의 감소를 발생시킨 것	
9610	부동산대출상환		◆ 부동산(토지, 주택 등)을 담보하여 조달한 융자금의 ○ 부동산대출상환금 × 주택관련 대출의 지급이자 ⇒ 주택대출이자(9150)	
9690	기타대출상환 및 전세금반환		◆ 할부, 외상, 가계대출 상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액 ○ 할부상환액, 외상상환액 ○ 카드결제대금 ○ 마이너스(-)통장 갚은 금액 ○ 가계대출, 카드대출 등의 대출금 상환 ○ 부동산(토지, 주택 등)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금액 ○ 기타부채 상환 × 임차인(세입자)의 임대보증금(전세, 월세 등) 맡김 ⇒ 보증금 제공(9570)	

입력코드	항 목 명	내 구	항 목 분 류 내 용	비 고
9990-9990	자산이전			
9990	자산 이전		◆ 자산을 타가구에게 나누거나,비영리단체 또는 정부에 기부한 경우 ◆ 자산을 국내거주하는 타가구에게 분배하거나,비영리단체 또는 정부 등에 기부한 경우 ○ 재산상속 및 증여(주택,토지 등),채무의 변제 의무 면 ○ 폐인돈,사기당한 돈,보증후 차압된 금액 ○ 합의금,지참금,전별금,위약금,위자료,예단비 등 ○ 타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및 부동산구입비 증여 × 본인명의부동산 구입 ⇒ 부동산 구입(9550)	

부 록

1. 산업분류표
2. 직업분류표
3. 요약항목분류표

1 산업분류표

산 업	부 호	내 용 설 명
농업, 임업 및 어업	A	작물 재배업,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시설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 영림업, 벌목업, 임산물 채취업, 임업관련 서비스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등
광 업	B	석탄·원유·천연가스 광업, 금속광업, 기타 비금속광물(연료용 제외) 채굴, 광업지원서비스업 등
제 조 업	C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제조업 등
전 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전기업, 발전업, 송·배전사업,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사업 등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건 설 업	F	건물, 토목 건설업,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토공사업, 철골공사업, 포장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통신공사업, 도장공사업, 전기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 등

산 업	부 호	내 용 설 명
도 매 및 소매업	G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등
운 수 업	H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I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기숙사 운영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인 음식점업, 출장 및 이동음식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등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업, 우편업, 유선, 무선 통신업, 위성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등
금 융 및 보험업	K	중앙은행, 일반국내은행, 외국은행, 어음할인소 및 저축기관, 생명보험, 연금 및 공제업, 상해보험, 손해보험, 보증보험, 건강보험 등 각종보험, 증권거래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보험감정업
부동산 및 임대업	L	부동산임대업·중개업 및 감정평가업, 운송장비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서적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가구 및 가정용기기임대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등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연구개발업, 변호사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광고대행업,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측량, 지질조사, 지도제작업, 시각, 인테리어 디자인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콜센터,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등

산 업	부 호	내 용 설 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입법 및 일반정부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사회보장행정 등
교 육 서비스업	P	초급, 중급 및 상급수준의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및 기타교육 기관,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기관, 개인교습소, 노인학교 등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	Q	의료업, 수의업과 사회복지사업, 병원, 의원, 조산소, 수의업, 아동· 성인·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재난구호시설, 재활원, 보육시설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과관련 서비스업	R	공연시설 운영업, 연극단체, 도서관, 박물관, 사적지 관리 운영업,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 등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S	산업 및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종교단체,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T	가구내 고용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활동, 개인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자의 활동 등 개인가정에 고용된 요리사, 가정부, 유모, 보모, 운전사, 가정교사, 정원관리원 등
국 제 및 외국기관	U	국제 및 외국기관에서 공무수행,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 외국대사관, 기타 외국 지역단체

2 직업분류표

대 분 류	내 용 설 명
1. 관 리 자	
	의회의원처럼 공동체를 대리하여 법률이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정부조직의 장으로서 정부를 대표·대리하며 정부 및 공공이나 이익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지휘·조정한다.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데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한다.
공공 및 기업 고위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 및 법령안을 작성·수정하며 외국에서 국가를 대표·대리하는 정부 고위공무원, 특수이익단체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지휘하며 조직을 대표·대리하는 공공단체 임원과 각종 비영리 단체의 이사, 회장 및 그 밖의 임원, 그리고 사업체 경영을 위한 경영활동을 계획·감독·통제하는 기업고위직이 여기에 속한다.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정부부처의 부서나 지방관서의 행정업무를 기획, 지휘 및 조정한다. 기업이나 단체에서 내부 부서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원들의 활동을 지휘 및 조정한다. 정부행정 관리자, 경영지원 관리자, 기타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가 포함된다.
전문서비스 관리직	연구, 교육, 법률, 보건, 사회복지, 문화, 예술, 정보통신 등 전문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고 지휘, 조정 및 관리한다.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보험 및 금융 관리자,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가 포함된다.

대 분 류	내 용 설 명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건설, 전기가스 및 수도의 생산 공급, 제품생산관련 활동을 하는 사업체나 해당분야의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한다.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로 전기가스 및 수도 관련 관리자와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가 있다.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는 식품, 섬유 및 의복, 화학, 금속, 기계, 전기·전자 제품 등의 생산관리 및 제품수리, 기술과 관련한 사업체 및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한다. 이에선 식품생산 관리자, 섬유 및 의복 제품생산 관리자, 화학제품생산 관리자, 금속제품생산 관리자, 기계제품생산 관리자, 전기·전자 제품생산 관리자, 그 외 제품생산관련 관리자가 있다.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제조 및 도매업, 소매업체의 운송, 판매, 영업에 대한 서비스 계획하고 지휘하고 조정한다. 이 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4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판매 및 운송 관리자, 고객서비스 관리자,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기타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자가 있다.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활동을 수행하고, 각급 학교의 학생을 지도하고, 법률의 집행이나, 기업의 경영 및 예술적인 창작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들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과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수학, 물리학, 천문학, 화학 등의 자연과학, 언어학, 철학 등의 인문과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에서 개념과 운영기법의 연구 및 응용에 관련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전문가, 인문 및 사회 과학 전문가,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시험원이 있다.

대 분 류	내 용 설 명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정보통신 및 장치 제작과 이들의 기능, 유지 및 보수에 관하여 연구, 조언하거나 이를 보조한다. 또한 특정재료,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 조언하거나 이를 보조한다.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정보 시스템 운영자,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가 있다.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건축, 화학, 금속, 환경, 전기, 전자, 기계 등 공학 분야의 개념, 이론 및 운영방법에 대한 실제적 기술업무를 지시하거나 수행하며 기계장비의 통제 및 운용, 항공기 조종, 선박 운행과 제품의 안전성 검사 등을 지시하거나 수행한다.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안전 관리 및 검사원,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있다.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환자의 진료 혹은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신체적 장애, 정신질환이나 불안정 등의 장애를 치료한다. 영양기법과 응용에 관하여 연구, 개선 또는 개발하여 이를 보조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사회복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사회복지학과 인접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종교 관련 종사자는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한다.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 및 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및 의료기사,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가 있다.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다양한 교육수준에서 학문에 대한 이론 및 실재를 가르치고 해당 학문분야를 연구하여 그에 대한 개념 및 운영기법을 개선, 개발하고 강의안, 교재 등을 작성한다. 직무훈련 강사, 대학 교육조교, 보조교사 등을 포함한다. 대학 교수 및 강사, 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기타 교육 전문가가 있다.
법률 및 행정 전문직	법률 전문직은 법률문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법정에서 사건을 변론하거나 기소하며 판결 선고를 한다. 행정전문직은 기업 및 정부행정기관 등에서 정책기획 및 집행, 기업 경영행정 등과 관련된 일을 한다.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법무사 및 집행관, 변리사, 정부 정책기획 전문가, 정부 집행행정 전문가, 공공행정 기획전문가 등이 있다.

대 분 류	내 용 설 명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인사 및 경영, 금융 및 보험, 상품기획 및 홍보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감정, 상품 및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경영 및 진단 전문가, 투자 및 신용 분석가, 자산 운용가,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 증권 및 외환 딜러, 손해사정인, 기타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 상품기획 전문가, 여행상품 개발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조사 전문가, 행사 기획자 감정평가 전문가, 해외 영업원, 기술 영업원,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기타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등이 있다.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신문, 방송, 문화 분야에서 작품이나 기사를 쓰고, 미술, 음악, 무용, 스포츠 및 기타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영화, 방송 및 연극에서 연기를 하거나 감독한다.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화가·사진가 및 공연 예술가 디자이너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등이 있다.
3. 사 무 종 사 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Data)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금전취급 활동, 법률 및 감사, 상담 및 통계와 관련하여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며 문서처리가 주 직무이다. 중분류는 직무유형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종사자수가 많은 경영과 회계 사무직을 우선하여 두고, 이어서 금융 및 보험, 법률 및 감사,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국가 및 지방의 공공행정, 기업의 경영 및 회계, 비서 등 행정 및 경영, 회계관련 업무에 대해 제반 사항을 기록, 정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무직이 여기에 해당된다. 행정 사무원, 경영관련 사무원, 회계 및 경리 사무원, 비서 및 사무 보조원 등이 해당된다.

대 분 류	내 용 설 명
금융 및 보험 사무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며, 해당 사무적인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된 직업들이다. 이 직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직업은 금융업, 보험업,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직업들이다. 또한 일부 직업은 관련 협회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일부는 직업과 관련된 특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들로 충원된다. 출납창구 사무원,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등이 있다.
법률 및 감사 사무직	법률문제와 관련된 소송이나 재판의 서류작성·고지, 특허권의 출원·등록 등의 전문적인 법률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효율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획 및 지침 수립 등 감사실시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을 말한다. 법률관련 사무원으로 법무 사무원, 특허 사무원 등과 감사 사무원 등이 있다.
상담 · 안내 · 통계 및 기타 사무직	여론 및 설문을 통한 통계조사 사무원, 여행을 하려는 고객을 대신하여 호텔, 비행기표 등을 예약해 주는 여행관련 사무원, 시설 등의 안내에 종사하는 안내 및 접수 사무원과 고객 상담원 등이 여기에 분류된다. 통계관련 사무원,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등이 있다.
4. 서비스 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의료·복지 보조, 이·미용, 혼례·장례, 운송, 여가·스포츠, 조리·음식에 관련하여 대인보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중분류는 서비스 제공에서 공공성이 큰 것을 우선하여, 경찰·소방 및 보안관련 서비스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고객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순으로 분류되어 있다.
경찰 · 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범죄예방, 시민의 안전보호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법률과 규정을 이행토록 하는 경찰관과 화재, 안전사고, 기타 위험에 대처하는 소방관, 수감자를 교도, 감독, 관리하는 교도관 및 경호 보안관련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경찰관, 소방관,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 경호원, 청원 경찰, 무인 경비원, 보안 관제원, 유통 및 매장 감시원, 주차 단속원, 그 외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등이 있다.

대 분 류	내 용 설 명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이·미용, 결혼 및 장례 시에 발생하는 각종 개인관련 서비스 직군이 여기에 포함된다.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혼례 및 장례 종사자, 기타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 종사자 등이 있다.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비행기, 선박, 열차 등 운송관련 서비스 직무나 여행안내, 숙박시설, 오락시설 등 관련 서비스직이 여기에 분류된다. 항공기 객실승무원, 선박 및 열차 객실승무원,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오락시설 서비스원,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 등이 있다.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각종 사업체, 시설, 가정, 선박 또는 여객열차에서 음식을 준비 및 조리하고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한다. 일식, 한식, 양식 등의 주방장 및 조리사, 바텐더, 웨이터 등 음식서비스 종사자가 있다.
5. 판 매 종 사 자	
	영업활동을 하거나 인터넷 및 통신, 또는 상점이나 거리 등에서 상품을 판매 및 임대하며,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매장에서 계산하는 활동도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중분류는 잠재적인 고객이 갖는 구매의사의 정도를 기준으로 영업과 판매를 구분하였고, 판매직은 매장유무에 따라 매장 판매직과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직으로 구분된다.
영업직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을 한다.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거나, 상점이나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상품을 영업하기도 한다. 자동차 영업원, 제품 및 광고 영업원, 보험 설계사 및 간접투자증권 판매인 등이 있다.
매장 판매직	도·소매 업체가 개설한 매장에서 고객에게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한 모델 및 색상을 보여줌으로써 고객이 상품을 선택·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구매한 상품의 가격계산 및 포장하는 등 상품을 판매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상점 판매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매장 계산원 및 요금정산원 등이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자동차, 도서, 비디오 테이프,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대여한다. 자동차 대여원, 도서 및 비디오 테이프 대여원, 사무용품 대여원, 생활용품 대여원, 오락 및 스포츠용품 대여원, 그 외 상품 대여원 등이 있다.

대 분 류	내 용 설 명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	방문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통신판매원, 판매촉진 활동을 하는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방문 판매원, 통신서비스 판매원, 텔레마케터, 인터넷 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등이 있다.
6.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전답작물 또는 과수작물을 재배·수확하고 동물을 번식·사육하며 산림을 경작, 보존 및 개발한다. 또한 물고기의 번식 및 채취 또는 기타 형태의 수생 동식물을 양식·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	방문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통신판매원, 판매촉진 활동을 하는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방문 판매원, 통신서비스 판매원, 텔레마케터, 인터넷 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등이 있다.
농·축산 숙련직	꽃이나 나무 등 원예 및 조경에 종사하는 자와 농업, 사육관련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작물, 가축을 인공 재배하거나 사육하는 것과 수렵관련 직종도 여기에 분류된다. 작물재배 종사자, 원예 및 조경 종사자,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등이 있다.
임업 숙련직	영림, 산림을 보존하고, 조성, 육성하며, 자연 상태의 산림에서 출하되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수행한다. 조림·영림 및 벌목원, 임산물 채취 및 기타 임업관련 종사원, 고사리 채취원, 수액채취원 수피채취원, 산림수묘목 증식원 등이 있다.
어업 숙련직	고기 또는 기타 형태의 수생 동식물을 번식 및 양식하며, 포획하고 채취한다. 물고기 양식원, 양어장 종사원, 다시마 양식원, 원양어부, 트롤선 선원, 원양 어업자 및 해녀 등이 있다.

대 분 류	내 용 설 명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한다. 또한 섬유, 수공업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을 가공한다. 작업은 손과 수공구를 주로 사용하며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기계의 성능보다 사람의 기능이 갖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화된 기계의 발전에 따라 직무영역이 축소되는 추세이지만, 생산과정의 모든 공정과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 제품에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는 빵 및 떡을 제조하고, 동물을 도살하고 어류를 가공 처리하여 소비용의 관련 식품을 제조한다. 또한 김치 및 밑반찬 제조, 과일, 채소 및 관련 식품을 가공하거나 보존처리 한다. 식품의 맛과 안전성을 검사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제빵원 및 제과원, 떡제조원, 정육원 및 도축원, 식품 및 담배 등급원, 김치 및 밑반찬 제조 종사원, 기타 식품가공관련 종사원 등이 있다.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천연섬유, 연사, 방적사를 가공하며 직조, 편직 및 기타 방법으로 직물을 제조하고 의복을 재단, 재봉하며 구두를 만들고, 가구 장식물을 제조한다.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제화원, 기타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원 등이 있다.
목재·가구·악 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가구조립 및 가구제조, 악기를 만들거나 조율하며 간판을 제작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목제품 제조관련 종사원, 가구 제조 및 조립원, 악기 제조 및 조율사, 간판 제작 및 설치원 등이 있다.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금속주형, 주조, 단조 및 제관·판금, 용접관련 기능직은 금속주형용 금형과 모형을 제조하며, 금속부분을 용접 및 절단하거나 금속판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리한다. 금형·주조 및 단조원, 제관원 및 판금원, 용접원 등이 있다.

대 분 류	내 용 설 명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운송 기능직은 자동차, 철도, 선박, 비행기를 정비하며 공업기계, 엘리베이터 냉난방 공조기 등 기계 설치, 유지 및 정비에 종사한다. 자동차 정비원, 운송장비 정비원,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등이 있다. 운송기계 정비 종사자는 기관, 차량, 농업용 또는 산업용 기계 및 기구들을 조정, 설비, 유지 및 수리한다. 항공기 정비원, 선박 정비원, 철도 기관차 및 전동차 정비원,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있다. 기계장비설치 및 정비원은 농업용 또는 공업용 기계(운송 기계 제외) 및 기계식 장비를 설치, 검사, 정비 및 수리한다.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승강기 설치 및 정비원, 물품 이동 장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수리원, 건설 및 광업 기계설치 및 정비원,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등이 있다.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컴퓨터 가전제품, 기타 전기·전자 장비를 설치 및 수리하며 산업전공, 내선전공, 외선전공 등 기계 설치, 유지 및 정비에 종사한다.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은 컴퓨터, 영상, 음향기기 및 전기통신조직과 같은 전기, 전자기기와 전선 및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수리한다. PC 및 사무기기 설치 및 수리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기타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등이 있다. 전기공은 전기설비 시설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산업전공, 내선전공, 외선전공 등 전기공이 있다.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건설관련 기능직은 지하 또는 지표면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고형광물을 채굴, 채취하고 건축 및 기타 목적용 석재를 성형, 완성하며 건물 및 기타 구조물 등을 건설, 유지 또는 수리한다.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경량 철골공, 콘크리트공, 건축 석공, 건축 목공,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기타 건설관련 기능 종사원 미장공, 방수공, 단열공, 바닥재 시공원,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건축 도장공, 새시 조립 및 설치원, 기타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원 등이 있다. 채굴관련 기능직은 지하 또는 지표면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고형광물을 채굴, 채취하고 철로설치 및 보수를 하며 건축 및 기타 목적용 석재를 성형, 완성하며 기타 구조물 등을 건설, 유지 또는 수리한다. 광원·채석원 및 석재 절단원, 철로 설치 및 보수원, 기타 채굴 및 토목 관련 종사자 등이 있다.

대 분 류	내 용 설 명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컴퓨터 가전제품, 기타 전기·전자 장비를 설치 및 수리하며 산업전공, 내선전공, 외선전공 등 기계 설치, 유지 및 정비에 종사한다.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은 컴퓨터, 영상, 음향기기 및 전기통신조직과 같은 전기, 전자기기와 전선 및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수리한다. PC 및 사무기기 설치 및 수리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기타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등이 있다. 전기공은 전기설비 시설을 설치하고 수리하는 산업전공, 내선전공, 외선전공 등 전기공이 있다.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건설관련 기능직은 지하 또는 지표면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고품광물을 채굴, 채취하고 건축 및 기타 목적용 석재를 성형, 완성하며 건물 및 기타 구조물 등을 건설, 유지 또는 수리한다.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경량 철골공, 콘크리트공, 건축 석공, 건축 목공,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기타 건설관련 기능 종사원 미장공, 방수공, 단열공, 바닥재 시공원,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건축 도장공, 새시 조립 및 설치원, 기타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원 등이 있다. 채굴관련 기능직은 지하 또는 지표면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고품광물을 채굴, 채취하고 철로설치 및 보수를 하며 건축 및 기타 목적용 석재를 성형, 완성하며 기타 구조물 등을 건설, 유지 또는 수리한다. 광원·채석원 및 석재 절단원, 철로 설치 및 보수원, 기타 채굴 및 토목 관련 종사자 등이 있다.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방송장비, 통신설비, 통신케이블 등 방송이나 통신에 사용되는 장비를 설치 보수, 수리한다. 영상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은 라디오 및 TV, 케이블TV의 송수신 등에 필요한 방송장비를 설치하고 수리한다. 방송의 화질을 조절하거나 방송 송출장비 및 학교, 기업 등의 구내방송장비의 송출 및 화면조정 장비의 설치 수리원을 포함한다. 통신 및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은 유·무선 통신장비 등을 설치하고 수리한다. 무선중계기 수리원, 무선기지국 설치 및 수리원, 기지국중계기 설치 및 수리원, 전신·전화기 설치 및 수리원, 휴대폰 수리원, 레이더 설치 및 수리원, 통신·방송 및 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통신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방송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등이 있다.

대 분 류	내 용 설 명
기타 기능 관련직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은 도자기, 조화, 목재, 돌, 양초 및 관련재료를 생산하고 수공예 종사자는 장식 및 실용목적의 각종 공예제품을 생산하며, 보석 및 귀금속을 다듬고 장식한다. 배관공은 물, 가스, 공기, 증기 또는 기타 물질을 배급하는 배관, 연관시설을 설치,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 배관공, 공업 배관공, 기타 배관공이 있다.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에는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기타 기능관련 종사원 등이 있다.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로 구성된다. 작업은 기계조작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등 기술적 혁신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요구된다.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식료품을 가공하고 사람·동물소비용 식품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조작한다. 제분 및 도정 관련 기계조작원, 곡물가공제품 기계조작원, 육류·어패류 및 낙농품 가공 기계조작원, 과일 및 채소 관련 기계조작원 등이 있다.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섬유, 방사 또는 원피, 펠트 가공용 섬유와 모피, 가죽제품을 제조 또는 세탁하는 기계를 조작하는 직군이 여기에 분류된다. 섬유제조 및 가공 기계조작원, 직물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세탁관련 기계조작원 등이 있다.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필요한 화학적 성질을 가진 제품을 얻기 위하여 파쇄, 가열, 혼합, 증류 또는 여과 화학물을 가공하는 기계장비 또는 석유기저제품·고무 및 플라스틱을 원료로 각종 구성부품 및 제품을 처리하는 장치를 조작한다. 생산기 조작원석유 및 천연가스제조 관련 제어장치 조작원,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기타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화학제품 생산기 조작원, 타이어 및 고무제품 생산기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등이 있다.

대 분 류	내 용 설 명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크게 금속관련 직업과 비금속관련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로부터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전 과정에 걸친 직업이 포함되어 있다. 주조 및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등이 있다.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속공작 기계조작, 냉난방 관련 설비조작,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조작,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을 하는 직군이 여기에 포함된다.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등이 있다.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전기를 생산하고 배전을 통제하는 기계장비를 조작하는 발전장치 조작원, 전기·전자설비 조작 및 조립원 직군이 여기에 분류된다. 발전 및 배전 장치 조작원,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등이 있다.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운송장비의 운전을 수행하는 작업은 대체로 손과 해당 운전 장치를 이용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면허취득이 요청된다. 운송 관련직은 운송 장비를 직접 운전하지는 않지만 운송·운전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되며, 대표적으로 신호원 및 수송원 등이 포함된다. 이 직업들은 수동도구나 기계 설비를 이용하여 안전한 운송·운전을 유도하고 지원한다.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화물열차 차장 및 관련 종사원, 자동차 운전원,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건설 및 채굴 기계운전원,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등이 있다.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상·하수를 처리하고 재활용 및 소각로와 관련된 기계를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물펌프장 조작원, 용수 여과장치 조작원, 냉각용수기 조작원, 용수 정화장치 조작원 등이 있다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목재를 가공하고 제지장치관련 기계를 조작하거나 펄프와 종이를 제조하는 직군이 여기에 분류된다.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조작원, 가구조립원, 펄프 및 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종이제품 생산기 조작원, 기타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조작원, 인쇄기 조작원, 사진인화 및 현상기 조작원, 주입·포장 및 봉합기 조작원, 상표부착기 조작원, 케이블 및 배관 부설기 조작원, 공기압축기 조작원, 그 외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등이 있다.

대 분 류	내 용 설 명
9.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부분 직업이 단 시간의 직업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단순노무직 내부에서의 직업이동은 일부 직업에서의 강도높은 노동으로 인한 체력이 문제되는 점을 제외하고, 직무 자체로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건축, 토목, 채굴 현장에서 작업반장이나 숙련공의 지시에 따라 수동공구 및 도구를 사용하여 독자적인 판단이나 기술이 필요치 않은 업무를 수행한다. 보선 단순노무원, 운하공사 인부, 관정 단순노무원, 건설품설 단순노무원, 채석장 굴삭 단순노무원, 채광 단순노무원, 건설품설 적재공, 건물정비 잡역부,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건설품축 운반인부 등이 있다.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손으로 화물을 하역, 운반하거나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이삿짐 운반원, 우편물 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등이 포함된다.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건설을 제외하고 기계, 재료, 화학, 섬유, 전기, 전자, 식품제품 생산 업무에 육체적 단순 반복 작업을 담당하거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제품을 분류하고 구성품을 간단히 수동으로 조립하기도 한다. 상표부착원, 구슬짜기원, 부품제품단순분류원, 수작업라벨 부착원, 수동 포장원 등이 포함된다.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쓰레기를 수거하고, 거리를 청소하거나 기타경비 업무를 하는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경비원 및 검표원 등이 포함된다.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세탁, 요리, 청소, 판매 관련 단순노무자를 말한다.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패스트푸드원, 주방 보조원,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그 외 판매관련 단순종사원 등이 있다.

대 분 류	내 용 설 명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에 속하는 자가 여기에 분류된다.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과실 수확원, 목동, 과수원 단순노무자, 농작물농장 단순노무자, 산불 감시원, 계기검침·수금 및 주차 관련 종사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등이 있다.
A. 군 인	
	현재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직업군인을 말한다. 직업정보 취득의 제약 등 특수 분야이므로 직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국방과 관련된 정부기업에 고용된 민간인, 국가의 요청에 따라 단기간 군사훈련 또는 재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집된 자 및 예비군은 제외된다.

코드	항 목 명	코드	항 목 명	코드	항 목 명	코드	항 목 명
소	경 상 소	1130	육 류 가 공	1476	토 마 토	2120	여 자 내 의 및 잠
0110	가 구 주 급 여 소	1135	및 시 배 이	1480	과	2130	아 동 용 내 의
0120	가 구 주 상 여 소	1145	기 타 육 류 가 공	1484	양	2205	양 말 및 스 타
0130	배 우 자 급 여 소	1152	신 선 수 산 동	1488	마	2210	모 넥
0140	배 우 자 상 여 소	1154	명	1492	기 타 채	2215	실
0150	기 타 가 구 원 상 여 소	1158	조 등	1495	해 조 및 해 조 가 공	2220	실
0160	기 타 가 구 원 상 여 소	1160	명	1520	김	2225	기
0210	사 구 주 사 업 소	1162	오	1530	미	2230	의
0220	배 우 자 사 업 소	1164	가	1540	기 타 해 조	2235	의
0230	기 타 가 구 원 사 업 소	1166	계	155	당 류 및 과 자	2240	기
0240	주 택 등 임 대 소	1168	개	1560	캠 , 풀 , 조	2245	아
0250	제 제 자 가 주 거 소	1170	조	1565	초	2250	구
0310	제 산 자 소	1172	기	1570	탕	2255	운
0320	배 자 당 소	1174	염	1575	한	2260	기
0330	의 제 이 자 소	1176	굴	1580	아	2265	신
0390	기 타 제 산 소	1178	마	1585	이	2270	신
0410	공 조 적 령 연	1180	마	1590	기	2275	신
0420	기 타 조 노	1182	간	1605	말	2280	신
0430	사 초 노 수 해	1184	기	1610	참	2285	신
0440	세 금 환 급	1186	어	1615	생	2290	신
0450	가 구 간 이	1188	맛	1620	소	2295	신
0460	할 인 해	1190	수	1625	간	2300	신
0470	기 타 이 전 소	1192	것	1630	된	2305	신
0510	경 조 소	1195	기	1635	고	2310	신
0520	퇴 직 금 및 연 금 일 시	1210	우	1640	카	2315	신
0530	기 타 비 경 상 소	1215	분	1645	식	2320	신
0600	사 회 적 현 물 이 전	1220	치	1650	식	2325	신
0720	저 축 및 보 험 탄 금 액	1225	요	1655	드	2330	신
0730	계 탄 금 액	1230	두	1660	혼	2335	신
0740	개 인 연 금 및 퇴 직 연 금	1235	기	1665	기	2340	신
0750	유 가 증 권 매 각	1245	기	1670	죽	2345	신
0760	보 증 금 회 수 각	1250	알	1675	이	2350	신
0770	부 동 산 매 각	1255	유	1680	김	2355	신
0790	기 타 자산 변동으로 인한 수입	1260	들	1685	반	2360	신
0810	부 채 중 가 로 인 한 수입	1265	기	1690	죽	2365	신
0820	월 부 및 외 상	1270	버	1695	기	2370	신
0890	기 타 빌 린	1290	기	1710	커	2375	신
0990	자 산 이 전 수 입	1305	과	1715	주	2380	신
1010	곡	1310	배	1720	과	2385	신
1020	곡	1315	송	1725	생	2390	신
1030	곡	1320	포	1730	기	2395	신
1040	곡	1325	밤	1735	기	2400	신
1050	곡	1330	감	1800	주	2405	신
1060	곡	1335	참	1810	과	2410	신
1070	곡	1340	수	1820	과	2415	신
1080	곡	1345	말	1830	과	2420	신
1090	곡	1350	바	1840	과	2425	신
1100	곡	1355	기	1850	과	2430	신
1110	곡	1360	과	1900	과	2435	신
1120	곡	1365	과	1990	과	2440	신
1130	곡	1404	배	2005	과	2445	신
1140	곡	1408	상	2010	과	2450	신
1150	곡	1412	시	2015	과	2455	신
1160	곡	1416	양	2020	과	2460	신
1170	곡	1420	미	2025	과	2465	신
1180	곡	1424	켓	2030	과	2470	신
1190	곡	1428	부	2035	과	2475	신
1200	곡	1432	무	2040	과	2480	신
1210	곡	1436	당	2045	과	2485	신
1220	곡	1440	감	2050	과	2490	신
1230	곡	1444	고	2055	과	2495	신
1240	곡	1448	도	2060	과	2500	신
1250	곡	1452	콩	2065	과	2505	신
1260	곡	1456	버	2110	과	2510	신
1270	곡	1460	오				
1280	곡	1464	꽃				
1290	곡	1468	호				
1300	곡	1472	가				

코드	항	목	명	코드	항	목	명	코드	항	목	명	코드	항	목	명
3310	가	스	전	자	레	인	지	기	타	개	인	교	통	서	비
3315	일	반	냉	장	고	고	고	4755	운	전	교	습	비	스	복
3320	김	치	냉	장	고	고	고	4760	주	교	차	습	비	스	복
3325	정	수	수	기	기	기	기	4765	통	행	교	습	비	스	복
3330	에	로	치	수	기	기	기	479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335	난	기	치	수	기	기	기	481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340	공	기	치	수	기	기	기	482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345	세	기	치	수	기	기	기	483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350	식	기	치	수	기	기	기	484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355	진	공	기	치	수	기	기	485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360	전	기	치	수	기	기	기	486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365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87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399	중	고	가	전	및	가	전	488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510	가	전	관	련	서	비	스	489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610	주	송	기	기	기	기	기	491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620	식	기	기	기	기	기	기	492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630	후	라	이	팬	비	스	스	493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640	냉	기	기	기	기	기	기	495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660	칼	및	수	용	류	스	스	496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690	가	정	용	공	구	구	구	497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710	가	정	용	공	구	구	구	499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720	전	비	관	련	기	구	구	501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730	선	기	기	기	기	기	기	502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79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503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810	가	사	소	모	제	스	스	504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820	세	탁	청	소	용	구	구	505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830	전	방	및	청	소	용	구	506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840	주	송	기	기	기	기	기	511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850	살	충	약	품	및	용	품	512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890	가	타	가	사	소	비	스	513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910	식	품	관	련	서	비	스	521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920	가	사	가	사	용	인	급	522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3990	가	사	가	사	용	인	급	523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06	보	의	약	의	약	의	약	524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010	의	제	약	의	약	의	약	525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020	관	매	약	의	약	의	약	526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030	한	약	및	한	약	의	약	527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040	인	약	및	한	약	의	약	528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050	영	양	보	의	약	의	약	5305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060	보	건	의	료	소	모	품	531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070	보	건	의	료	소	모	품	5315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090	기	타	보	건	의	료	기	532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110	외	래	의	료	서	비	스	5325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120	일	반	병	의	원	외	래	533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130	치	과	서	비	스	비	스	5335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140	기	타	보	건	의	료	서	534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200	일	원	입	원	치	료	비	5345	기	타	개	인	교	통	서
07	교	의	의	의	의	의	의	535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510	자	동	차	구	구	구	구	5355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599	중	고	차	구	구	구	구	5360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610	오	토	바	구	구	구	구	5365	기	타	개	인	교	통	서
4620	자	운	차	구	구	구	구								
4705	부	품	관	련	용	품	품								
4710	유	지	및	수	리	비	비								
4715	위	송	기	구	발	유	유								
4720	경	P	연	료	유	유	유								
4725	L	G	연	료	유	유	유								
4745	기	타	연	료	유	유	유								
5370	복	권	구	권	입	적	적	540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541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541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541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542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542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542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543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543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544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544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544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545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545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545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548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549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549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01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01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02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02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03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03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04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04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05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05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06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06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07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07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08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08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10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10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15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15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20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20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25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25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30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30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35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35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40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40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45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45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50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50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61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61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62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62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63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63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71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71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72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72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73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73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74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674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751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751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752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752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753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753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754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754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755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755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756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756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771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771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772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772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0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0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1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1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1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1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2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2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2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2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3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3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3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3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4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4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4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45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5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5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9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090	유	아	용	학	습	교	재								
8110	시	계	및	장	신	구	구	8120	시	계	및	장	신	구	구
8120	시	계	및	장	신	구	구	8130	시	계	및	장	신	구	구
8130	시	계	및	장	신	구	구	8140	시	계	및	장	신	구	구
8140	시	계	및	장	신	구	구	8150	시	계	및	장	신	구	구</